

2020년도 청년청 소관 예산안

검 토 보 고

I. 예산개요

1. 세입예산

- 2020년도 청년청 소관 세입예산은 2019년도 최종 예산대비 54.5% 감액된 3억 2천 9백만원임.

(단위 : 천원)

구 분	2019년도		2020년도	2019년대비 증 감		증감률(%)	
	당초	최종		당초	최종	당초	최종
청년청 합계	603,400	723,400	328,834	△ 274,566	△ 394,566	△ 45.5	△ 54.5
세외수입	103,400	103,400	328,834	225,434	225,434	218.0	218.0
경상적세외수입	103,400	103,400	145,369	41,969	41,969	40.6	40.6
재산임대수입	41,900	41,900	64,614	22,714	22,714	54.2	54.2
사용료수입	61,500	61,500	78,705	17,205	17,205	28.0	28.0
이자수입	-	-	2,050	2,050	2,050	-	-
임시적세외수입	-	-	183,465	183,465	183,465	-	-
기타수입	-	-	182,500	182,500	182,500	-	-
지난년도수입	-	-	965	965	965	-	-
보조금	500,000	620,000	-	△ 500,000	△ 620,000	-	-
국고보조금등	500,000	620,000	-	△ 500,000	△ 620,000	-	-
국고보조금등	500,000	620,000	-	△ 500,000	△ 620,000	-	-

■ 세입예산 세부내역

(단위:천원)

구 분	2019년도		2020년도	2019년대비 증 감		증감률(%)	
	당초	최종		당초	최종	당초	최종
청년청 합계	603,400	723,400	328,834	△ 274,566	△ 394,566	△45.5	△54.5
세외수입	103,400	103,400	328,834	225,434	225,434	218.0	218.0
경상적세외수입	103,400	103,400	145,369	41,969	41,969	40.6	40.6
재산임대수입	41,900	41,900	64,614	22,714	22,714	54.2	54.2
공유재산임대료	41,900	41,900	64,614	22,714	22,714	54.2	54.2
사용료수입	61,500	61,500	78,705	17,205	17,205	28.0	28.0
기타사용료	61,500	61,500	78,705	17,205	17,205	28.0	28.0
이자수입	-	-	2,050	2,050	2,050	-	-
기타이자수입	-	-	2,050	2,050	2,050	-	-
임시적세외수입	-	-	183,465	183,465	183,465	-	-
기타수입	-	-	182,500	182,500	182,500	-	-
그외수입	-	-	182,500	182,500	182,500	-	-
지난년도수입	-	-	965	965	965	-	-
지난년도수입	-	-	965	965	965	-	-
보조금	500,000	620,000	-	△ 500,000	△ 620,000	△ 100	△ 100
국고보조금등	500,000	620,000	-	△ 500,000	△ 620,000	△ 100	△ 100
국고보조금등	500,000	620,000	-	△ 500,000	△ 620,000	△ 100	△ 100
국고보조금	-	120,000	-	-	△ 120,000	△ 100	△ 100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보조금	500,000	500,000	-	△ 500,000	△ 500,000	△ 100	△ 100

2. 세출예산

- 청년청 소관 2020년 세출예산은 1,353억 6천 8백만원으로 2019년도 당초예산 416억 9천 4백만원 대비 224.7% 증액된 수준이며, 2019년도 간주처리 및 추가경정예산 등을 감안한 최종예산 463억 1천만원 대비 192.3%가 증액된 수준임.

(단위 : 천원)

구 분		2019년도(당초)	2020년도	2019년대비 증 감	증감률
총 계		41,694,329	135,367,619	93,673,290	224.7%
행정관리	소 계	41,694,329	135,367,619	93,673,290	224.7%
	행정운영경비	34,081	69,039	34,958	102.6%
	재무활동	-	-	-	-
	사업비	41,660,248	135,298,580	93,638,332	224.8%
교 부 금		-	-	-	-

- 2020년도 정책·단위·세부사업별 2019년도 당초 및 최종예산 대비표

(단위 : 백만원)

정책/단위/ 세부사업별	2019 예산		2020 예산	당초예산대비	
	당초	최종		증감	비율(%)
합 계	41,694	46,309	135,368	93,674	224.7
청년의 삶의 질 획기적 개선	41,661	46,260	135,300	93,639	224.8
민관협력 기반 세대균형 시정 구현	1,877	1,887	11,789	9,912	528.1
청년 정책 추진을 위한 민관협력	932	942	1,043	111	11.9
서울청년 시민회의 및 청년거버넌스 운영 지원	785	785	702	△83	△10.6

정책/단위/ 세부사업별	2019 예산		2020 예산	당초예산대비	
	당초	최종		증감	비율(%)
자치구 청년정책 거버넌스 활성화 지원	-	-	7,605	7,605	
서울시 청년명예음부즈만 시범 운영	-	-	142	142	
청년시의회학교 운영	-	-	213	213	
민주시민 역량강화 위한 사회현안 토론 프로그램	-	-	34	34	
한류문화 콘텐츠 육성을 위한 씨앗심기 창작 지원	-	-	425	425	
서울미래인재 육성 및 활동 지원	160	160	310	150	93.8
청년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운영	-	-	95	95	
청년이 주도하는 서울미래교육 지원	-	-	170	170	
세대균형지표 개선 및 세대균형시정 평가체계 개발	-	-	100	100	
서울 청년실태조사	-	-	950	950	
청년의 권익증진 및 자립기반 구축	29,984	34,573	112,621	82,637	275.6
서울 청년수당	15,030	18,030	90,400	75,370	501.5
청년활력 프로그램 운영	4,112	4,172	4,010	△ 102	△ 2.5
청년 마음 신체건강 지원	-	-	2,000	2,000	
고립청년 사회적 자립 지원	-	-	450	450	
청년금융 및 부채경감 지원	1,732	1,732	2,201	469	27.1
청년 긴급생활안정자금 및 신용회복 지원	340	340	-	△ 340	
건강한 금융생활 지원을 위한 민관협력 활성화	170	170	-	△ 170	△ 100.0
청년 미래투자기금 지원	560	560	-	△ 560	△ 100.0
청년프리랜서 건강보험료 지원	-	-	300	300	
권역별 서울청년센터 운영	-	-	6,402	6,402	
서울시 청년공간 무중력지대 설치·운영	7,879	9,054	6,208	△ 1,671	△ 21.2
청년활동공간 청년청 운영	133	133	220	87	65.4

정책/단위/ 세부사업별		2019 예산		2020 예산	당초예산대비	
		당초	최종		증감	비율(%)
	서울 청년포털 고도화	28	207	430	402	1435.7
	청년센터 운영 지원	-	150	-	-	
	청년 교류 및 협력 강화	9,800	9,800	10,890	1,090	11.1
	청년프로젝트 투자 사업	5,570	5,570	5,540	△30	△0.5
	서울시 청년 허브 운영	2,990	2,990	3,128	138	4.6
	세대공감 릴레이 토론회	-	-	43	43	
	시민이 선정부터 평가까지 직접 설계하는 청년지원	-	-	247	247	
	청년 지역교류 지원 사업	-	-	770	770	
	서울-지역 협력강화 및 청년 교류기반 구축	-	-	500	500	
	서울시 청년교류공간 운영	560	560	662	102	18.2
	청년 인생설계 학교	680	680	-	△680	△100.0
	행정운영경비(청년청)	34	49	69	35	102.9
	기본경비	34	49	69	35	102.9
	기본경비	34	49	69	35	102.9

II. 검토의견

1. 세입예산 검토

- 2020년 소관 세입예산은 3억 2천 8백만원으로, 그 상세내역 및 산출기초는 다음과 같음.

<2020년도 세입예산 상세 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2019년도 (최종예산)	2020년도	2019년 대비증감	증감률 (%)	산출기초
청년청 합계	723,400	328,834	△394,566	△54.5	
세외수입	103,400	328,834	225,434	218.0	
경상적세외수입	103,400	145,369	41,969	40.6	
재산임대수입	41,900	64,614	22,714	54.2	
공유재산임대료	41,900	64,614	22,714	54.2	○ 청년청 임대료(사용료) : 64,614천원 = 89천원(단체당 월평균사용료) × 55개 단체 × 12개월 × 1.1
사용료수입	61,500	78,705	17,205	28.0	
기타사용료	61,500	78,705	17,205	28.0	○ 청년청 관리비 : 78,705천원 = 2,651.02m ² ×2,402원×12개월 × 1.03 ※ 관리비는 총 임대면적(2,651.02m ²)에 대해 부과하며, 물가상승률 3% 반영
이자수입	-	2,050	2,050		
기타이자수입	-	2,050	2,050		○ 민간 보조금 이자수입 반납금 발생예상액 : 2,050천원 - '19년 민간위탁금 이자 수입 반납금 (청년교류공간) : 100천원 - '19년 민간위탁금 이자 수입 반납금 (G밸리 등 10개) : 650천원(65천원*10개소) - '19년 민간위탁금 이자 수입 반납금

구 분	2019년도 (최종예산)	2020년도	2019년 대비증감	증감률 (%)	산출기초
					(청년활동지원센터) : 600천원 - '19년 민간보조사업 이자 수입 반납금 (프로젝트 투자사업) : 700천원
임시적세외수입	-	183,465	183,465		○ 민간 보조금 집행잔액 발생예상액 : 183,465천원 - '19년 민간보조사업 집행잔액 반납금 (학자금대출) : 2,500천원 - '19년 민간보조사업 집행잔액 반납금(청년프로젝트 투자사업) : 50,000천원 - '19년 민간보조사업 집행잔액 반납금(청년 정책 추진을 위한 민관협력) : 30,000천원 - '19년 민간위탁금 집행잔액 반납금 (G밸리 등 10개) : 100,000천원 (10백만원*10개소)
기타수입	-	182,500	182,500		
그외수입	-	182,500	182,500		
지난년도수입	-	965	965		
지난년도수입	-	965	965		○ '19년 부과분 중 미수납 추계액 : 965천원 - '19. 5월까지 미수납액 징수전망 반영
보조금	620,000	-	△ 620,000		
국고보조금등	620,000	-	△ 620,000		
국고보조금등	620,000	-	△ 620,000		
국고보조금	120,000	-	△ 120,000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보조금	500,000	-	△ 500,000		

■ 경상적 세외수입

- 경상적 세외수입 중 ‘재산임대수입’은 청년허브 등 민간위탁기관 등에서 관리하는 서울시 공유재산에 대한 임대료로, 6천 4백만원(전년 예산 4천1백만원 대비 40.6%)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음.
- 또한, 입주단체 등의 관리비인 ‘기타사용료(7천8백만원)’와 민간위탁금 및 보조금의 이자 수입 반납금인 ‘기타이자수입(2백만원)’ 등을 편성하고 있음.

(단위 : 천원)

구 분	2019년도(최종)	2020년도	2019년대비 증 감	증감률(%)
경상적세외수입	103,400	145,369	41,969	40.6
재산임대수입	41,900	64,614	22,714	54.2
공유재산임대료	41,900	64,614	22,714	54.2
사용료수입	61,500	78,705	17,205	28.0
기타사용료	61,500	78,705	17,205	28.0
이자수입	-	2,050	2,050	-
기타이자수입	-	2,050	2,050	-

- 2019년도 경상적 세외수입의 결산전망을 살펴보면, 예산 편성액(1억3백만원) 대비 17.0% 증가한 1억2천1백만원이며, 2020년도에는 결산전망보다 20.1% 증액한 1억4천5백만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음.
- ‘이자수입’의 경우는 매년 세입 발생이 예상되는 경상적 수입으로 매년 수납되고 있으나, 지속적으로 편성 및 수납내역 관리 조차 하지 않다가 2020년에는 2백만원의 세입 예산을 편성하고 있음.

- 2019년 '이자수입'의 징수결정액은 540만원이고, 결산 전망은 4백만원임에도 2020년도에는 2백만원의 '이자수입'을 편성하고 있는바, 세입 추계를 반영한 적정 세입 예산 편성인지에 대해서는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하겠음.

<2019년도 경상적세외수입 등 결산전망>

(단위 : 천원)

구 분	편성액	징수결정액	징수액	결산전망
계	723,400	1,962,181	1,932,353	1,966,271
세외 수입	103,400	1,342,181	1,312,353	1,346,271
경상적세외수입	103,400	116,943	100,794	121,033
재산임대수입	41,900	51,740	45,768	55,000
사용료수입	61,500	59,780	51,665	62,000
이자수입		5,423	3,361	4,033

<최근 5년간 경상적세외수입 결산 및 전망>

(단위 : 천원)

예산과목	편성내역	징수결정액	징수액	결산전망
경상적세외수입				
공유재산임대료				
2020년	64,614			
2019년	41,900	51,740	45,768	55,000
2018년	56,849	-	-	-
2016년	227,000	-	-	-
기타사용료				
2020년	78,705			
2019년	61,500	59,780	51,665	62,000
2018년	52,428	94,877	85,864	-
2017년	-	53,925	53,925	-
2016년	-	50,392	48,750	-
기타이자수입				
2020년	2,050			
2019년	-	5,423	3,361	4,033
2018년	-	2,032	1,981	-
2017년	-	-	-	-
2016년	-	-	-	-
2015년	-	-	-	-

- 또한, 청년청 소관 민간위탁기관에는 다양한 임대공간이 있고, 카페운영, 프로그램 수입 등 자체 수입이 있음.
- “무중력지대 G밸리”의 경우, 연간 3천만원 상당의 자체수입이 발생하고 있으나, 2년간 1천만원이 넘는 금액을 수탁기관 자체 ‘인센티브’로 사용하는 등 자체 수입을 불법적으로 사용하였고,
- “무중력지대 대방”의 경우도 자체 수입으로 사무관리비, 시설보수비, 물품구입비로 사용하였으며,
- 청년허브의 경우에는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바와 같이 자체수입을 매년 이월하면서 지속적으로 사용하고, ‘해외현장탐방비’로도 사용하는 등 자의적으로 수익금을 사용한바 있음.
- 청년허브, 청년교류공간 등을 비롯한 청년청 소관 민간위탁기관은 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업비 및 인건비를 포함한 필요 예산 전액을 민간위탁금으로 편성하여 교부하고 있음에도
- 자체 수익으로 ‘인센티브’¹⁾로 사용하고, ‘해외현장탐방비’ 등 사전에 승인받지 않은 사업을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등 과도하게 자의적이고 위법한 민간위탁금 사용행태를 보이고 있음.
- 수익금을 자체 경비로 사용 후 사용 잔액을 반납하는 것은 「지방회계법」 “수입의 직접 사용 금지”(제25조)²⁾와 「지방재정법」 “예산

1) 「서울시 민간위탁 관리지침」에 민간위탁 중 청소년수련관, 각종 자원회수시설, 병원 등 예산을 지원하는 시설형 위탁 사무인 경우 “서울시가 위탁한 시설의 효율적 관리 등으로 이용료 수입이 증대된 경우 증대된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탁기관 수입으로 하는 협약 체결이 가능(인센티브 지급)” 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동 무중력지대 대방은 서울시에서 모든 민간위탁금이 편성되어 교부되는 기관으로 별도의 인센티브 지급은 바람직하지 않음.
 또한, 인센티브 지급 필요시에도 법률에 따라 예산으로 편성하여 지급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며, 「지방재정법」에 위배되는 「서울시 민간위탁 관리지침」에 대한 개정이 필요한 것은 아닌지 검토 필요

총계주의의 원칙”(제34조)에 위배될 수 있으므로 청년청은 부적정 사용 내역에 대한 환수 및 제재 조치와 모든 수익금이 각 세목별로 세입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필요예산이 있을 경우에는 민간위탁금 세출예산에 반영해야할 것으로 사료되며, 법령 위배기관에 대한 엄중한 조치 등을 통한 재발방지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음.

<청년청 소관 민간위탁 기관의 수입 내역>

1. 무중력지대 G밸리

○ 최근 3년간 무중력지대 G밸리 자체수입 현황

(단위 : 원)

구분	계	2017년	2018년	2019년 (~10.31.)	비고
계	99,166,948	24,161,922	39,634,505	35,370,521	
대관수입	58,363,423	16,213,239	23,312,119	18,838,065	
카페운영비 행사참가비	16,002,602	4,754,420 (카페운영비)	5,182,616 (행사참가비)	6,065,566 (행사참가비)	
부가가치세 환급분 등 기타	24,800,923	3,194,263	11,139,770	10,466,890	

○ 최근 3년간 무중력지대 G밸리 자체수입 처리 현황

(단위 : 원)

구분	계	2017년	2018년	2019년 (~10.31.)	비고
계	99,166,948	24,161,922	39,634,505	35,370,521	
운영비	3,924,680	2,085,100	994,000	-	

2) 「지방회계법」 제25조(수입의 직접 사용 금지) 지방자치단체의 장, 그 보조기관 및 소속 행정기관은 그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모든 수입을 지정된 수납기관에 내야 하며,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직접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지방재정법」 제34조(예산총계주의의 원칙) ① 한 회계연도의 모든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모든 지출을 세출로 한다.

② **세입과 세출은 모두 예산에 편입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가 현물로 출자하는 경우와 「지방자치법」 제142조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설치된 기금을 운용하는 경우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보관할 의무가 있는 현금이나 유가증권이 있는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이를 세입·세출예산 외로 처리할 수 있다.

		(각종보험료)	(자산 및 물품 취득) 845,580 (용역비)	-	
사업비	62,007,817	15,829,779 (알터샵터 프로젝트)	16,178,040 (청년 역량개발 등)	30,000,000 (청년커뮤니티 추진 등)	
수탁기관 수입처리	10,079,428	2,343,138 (수탁기관 인센티브)	7,736,290 (수탁기관 인센티브)	-	
서울시 반납	23,155,021	3,903,905	13,880,595	5,370,521 (예정)	

2. 무중력지대 대방동

○ 최근 3년간 무중력지대 대방동 자체수입 현황

(단위 : 원)

구분	계	2017년	2018년	2019년 (~10.31.)	비고
계	17,939,187	-	9,090,759	8,848,428	
대관수입	4,077,337	-	2,384,199	1,693,138	
기타수입 (커피머신)	765,100	-	359,810	405,290	
프로그램 수입	3,572,750	-	2,122,750	1,450,000	
입주단체 이용료	9,524,000	-	4,224,000	5,300,000	

○ 최근 3년간 무중력지대 대방동 자체수입 처리 현황

(단위 : 원)

구분	계	2017년	2018년	2019년 (~10.31.)	비고
계	17,939,187	-	9,090,759	8,848,428	
운영비	954,585	-	-	954,585 (사무관리비)	
	2,283,000			2,283,000 (시설보수)	
	4,010,000			4,010,000 (살비, 물품구입)	
사업비	1,000,000	-	-	1,000,000 (네트워크 사업)	
서울시 반납	9,691,602	-	9,090,759	600,843 (예정)	

3. 무중력지대 양천

○ 최근 3년간 무중력지대 양천 자체수입 현황

(단위 : 원)

구분	계	2017년	2018년	2019년 (~10.31.)	비고
계	14,762,338	-	8,102,122	6,660,216	
대관수입	10,766,898	-	6,121,852	4,645,046	
프로그램 수입	2,336,000	-	1,286,000	1,050,000	
복합기	1,036,200	-	350,200	686,000	
커피머신	623,240	-	344,070	279,170	

○ 최근 3년간 무중력지대 양천 자체수입 처리 현황

(단위 : 원)

구분	계	2017년	2018년	2019년 (~10.31.)	비고
계	14,762,338	-	8,102,122	6,660,216	
운영비	2,653,000	-	-	1,707,500 (간판설치) 945,500 (파티션 구입)	
사업비	7,590,300	-	4,500,500	-	창춘이바라는축제
			-	1,430,000	커뮤니티 모임
			1,265,500	-	프로그램 보증금 환급
			-	338,000	공간 홍보 리플렛 제작
			56,300	-	보조금 통장 사용건 조치
서울시 반납	4,519,038	-	2,279,822	2,239,216 (예정)	

4. 무중력지대 도봉

○ 최근 3년간 무중력지대 도봉 자체수입 현황

(단위 : 원)

구분	계	2017년	2018년	2019년 (~10.31.)	비고
계	6,954,608	-	3,371,441	3,583,167	
대관수입	1,942,000	-	1,942,000	3,101,591	
입주단체 임대료	1,188,000	-	1,188,000	421,540	
현금수입	85,477	-	25,441	60,036	

○ 최근 3년간 무중력지대 도봉 자체수입 처리 현황

(단위 : 원)

구분	계	2017년	2018년	2019년 (~10.31.)	비고
계	6,954,608	-	3,371,441	3,583,167	
서울시 반납	6,954,608	-	3,371,441	3,583,167	

5. 무중력지대 성북

○ 최근 3년간 무중력지대 성북 자체수입 현황

(단위 : 원)

구분	계	2017년	2018년	2019년 (~10.31.)	비고
계	8,862,683	-	3,411,180	5,451,503	
대관료 공간이용료	5,305,828	-	1,455,410	3,850,418	
프로그램 참가비	3,556,855	-	1,955,770	1,601,085	

○ 최근 3년간 무중력지대 성북 자체수입 처리 현황

(단위 : 원)

구분	계	2017년	2018년	2019년 (~10.31.)	비고
계	8,862,683	-	3,411,180	5,451,503	
운영비	1,870,000	-	1,870,000 (빛물받이 공사)	-	
	1,035,809		1,035,809 (냉난방기 설치 등)	-	
	442,719		442,719 (부가세 납부)	-	
서울시 반납	5,514,161	-	62,658	5,451,503 (예정)	

6. 무중력지대 서대문

○ 최근 3년간 무중력지대 서대문 자체수입 현황

(단위 : 원)

구분	계	2017년	2018년	2019년 (~10.31.)	비고
계	6,615,900	-	3,737,250	2,878,650	
대관료 수입	5,821,500	-	2,967,500	2,854,000	
강연료 수입	716,000	-	716,000	0	
사무기기 사용료 수입	78,400	-	53,750	24,650	

○ 최근 3년간 무중력지대 서대문 자체수입 처리 현황

(단위 : 원)

구분	계	2017년	2018년	2019년 (~10.31.)	비 고
계	6,615,900	-	3,737,250	2,878,650	
서울시 반납	6,615,900	-	3,737,250	2,878,650 (예정)	

7. 무중력지대 강남

○ 최근 3년간 무중력지대 강남 자체수입 현황

(단위 : 원)

구분	계	2017년	2018년	2019년 (~10.31.)	비 고
계	364,274	-	-	364,274	
대관료 수입	364,274	-	-	364,274	

○ 최근 3년간 무중력지대 강남 자체수입 처리 현황

(단위 : 원)

구분	계	2017년	2018년	2019년 (~10.31.)	비 고
계	364,274	-	-	364,274	
서울시 반납	364,274	-	-	364,274 (예정)	

8. 서울특별시 청년교류공간

○ 최근 3년간 민간위탁기관 자체수입 내역

(단위 : 원)

구분	계	2017년	2018년	2019년 (~10.31.)	비 고
계	8,078,113	-	8,078,113	9,020,454	
임대료 수입	7,485,651	-	7,485,651	8,107,451	
이용료 수입	502,700	-	502,700	911,300	
이자수입	89,762	-	89,762	1,703	

○ 최근 3년간 민간위탁기관 자체수입 처리 현황

(단위 : 원)

구분	계	2017년	2018년	2019년 (~10.31.)	비 고
계	8,078,113	-	8,078,113	-	
서울시 반납	8,078,113	-	8,078,113	-	

9. 청년활동지원센터 : 수입내역 없음.

10. 서울시 청년허브

○ 최근 3년간 공유재산 임대수입 내역

(단위 : 원)

구분	계	2017년	2018년	2019년(~10.31)
임대수입	10,923,913	3,595,563	2,686,350	4,642,000
관리비 수입	10,945,604	4,704,024	2,889,610	3,351,970

○ 최근 3년간 민간위탁기관 자체수입 내역

(단위 : 원)

구분	계	2017년	2018년	2019년 (~10.31.)	비 고
계		28,435,587	23,307,357	15,529,870	-
임대료 수입	10,923,913	3,595,563	2,686,350	4,642,000	세외수입 처리 (임대료수입)
관리비 수입	10,945,604	4,704,024	2,889,610	3,351,970	
이용료 수입	44,887,772	20,136,000	17,408,000	7,343,772	자체수입
사업외수입 (이자,집수입)	515,525	-	323,397	192,128	

○ 최근 3년간 민간위탁기관 자체수입 처리 현황

(단위 : 원)

연도	자체 수입	전년도 이월	*기타 수입	사용내역		세외수입 처리	차년도 이월
				카드매출 수수료	다목적홀 시설 건설 및 리뉴얼		
2017	28,435,587	65,303,179		카드매출 수수료	325,164	25,532,580	40,000,000
				다목적홀 시설 건설 및 리뉴얼	13,633,000		
				공간조성 설계 감리	2,200,000		
				학교 진행비	10,470,504		
				해외현장탐방	1,577,510		
계	28,206,178						
2018	23,307,357	40,000,000	7,088,834	카드매출 수수료	269,533	13,366,800	16,940,000
				공용공간 리뉴얼	39,819,850		
				계	40,089,383		
2019	15,529,870	16,940,000					

※ 기타수입 : 2018년 특정감사 결과에 따라 2013~2017년 이자수입 및 신용카드 포인트 등 잡수입 미 반영금을 일괄 수입처리.

■ 임시적세외수입

- 청년청의 ‘임시적세외수입’은 매년 ‘기타수입’ 등 수입이 발생하였음에도 2019년까지 매년 예산을 미편성하였다가 2020년도에는 1억8천3백만원의 세입예산을 편성하고 있음.

(단위 : 천원)

구 분	2018년도	2019년도	2020년도	증감률(%)
임시적세외수입	-	-	183,465	-
기타수입	-	-	182,500	-
그외수입	-	-	182,500	-
지난년도수입	-	-	965	-
지난년도수입	-	-	965	-

- 민간보조금, 민간위탁금 집행잔액 등의 수입인 ‘그외수입’의 경우 2019년도에는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으나, 징수액은 12억 2천1백만원이며, 결산전망은 12억 2천 5백만원임에도 2020년에는 1억 8천 2백만원의 세입예산을 편성하고 있음.

<2019년도 청년청 임시적세외수입 등 결산전망>

(단위 : 천원)

구 분	편성내역	징수결정액	징수액	결산전망
임시적세외수입	-	1,225,238	1,211,559	1,225,238
그외수입	-	1,225,238	1,211,559	1,225,238

- 청년청은 매년 큰 규모의 ‘민간경상보조금’, ‘민간위탁금’ 사업을 수행하고 있어 집행잔액 발생이 예상되는바, 「세입예산 요구지침」에 따라 소액이라도 세원별 포착가능한 세원을 정밀하게 분석하여 누락없이

세입예산을 편성해야 함에도 ‘그외수입’을 전혀 편성하지 않았던 것은 불성실한 세입예산 관리를 반증하는 것이라고 하겠음.

- 또한, 2019년 ‘그외수입’의 결산 전망이 12억 2천 5백만원에 달함에도 2020년에는 1억 8천 2백만원의 세입을 편성하고 있는바, 적정한 세입 예산 편성인지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음.
- ‘시도비반환금수입’은 자치구 등에 대한 시비보조사업 집행잔액으로 청년청은 자치구에 교부하는 ‘자치구경상보조금’ 및 ‘자치구자본보조’ 예산이 상당함에도 매년 ‘시도비반환금수입’을 편성하지 않았으며, 2020년도에도 전혀 편성하지 않고 있음.
- 2018년도에 시비보조사업³⁾을 시행하였음에도 2019년에 ‘시도비반환금수입’을 편성하지 않았고, ‘시도비반환금수입’에 대한 징수결정 및 징수액이 전무한 것은 보조금을 교부만 하고 정산은 미실시한 것은 아닌지 우려될 뿐만 아니라,
- 2019년도에 시비보조사업⁴⁾을 집행하였음에도 보조사업의 집행잔액인 ‘시도비반환금수입’을 2020년도에 전혀 편성하지 않은 것은 정당한 세입 항목에 대한 불성실한 관리는 아닌지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음.
- 청년청은 시비보조사업 종료후 정산 미실시 및 부실 등 시비보조사업 관리가 부실한 것은 아닌지 면밀한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음.

3) 자치단체자본보조(2억2천만원), 청년활동 공간 청춘빨당 리모델링

4) 자치단체경상보조금(2억원), 성북 고립 청년 밀착 지원 시범사업, 자치단체경상보조금(6억원), 자치구무중력지대 운영 지원

<최근 5년간 임시적세외수입 등 결산 및 전망>

(단위 : 천원)

예산과목	편성내역	징수결정액	징수액	결산전망
임시적세외수입				
시도비반환금수입				
2020년	-			
2019년	-	-	-	-
2018년	-	40,834	37,597	-
2017년	-	-	-	-
2016년	-	-	-	-
2015년	-	-	-	-
그외수입				
2020년	182,500			
2019년	-	1,225,238	1,211,559	1,225,238
2018년	30,000	455,695	452,282	-
2017년	-	97,499	95,476	-
2016년	-	101,670	101,670	-
2015년	-	34,726	34,726	-
지난연도수입				
2020년	965			
2019년	-			6,384
2018년	-	2,022	929	-
2017년	-	-	-	-
2016년	-	-	-	-
2015년	-	-	-	-

■ 지난연도 세입

- 최근 3년간 청년청 소관 세입예산 징수 현황을 보면, 2019년에는 편성하지 않았고 10월 말 기준, 징수결정액과 징수액은 없으나, 결산 전망은 638만원으로 자료를 제출하고 있으며, 2020년도의 지난연도 세입 예산은 96만원을 편성하고 있음.

- 청년청 소관 세입예산 중 징수결정 후 미수납되어 있는 체납액에 대하여는 과세 내역별, 체납액별 철저한 심층 분석을 통한 사후 관리와 함께 체납액 징수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며,
 - 지난연도 세입이 방치되거나 부실하게 관리되지 않도록 적정한 규모의 세입예산을 편성하고, 미수납금이 방치되지 않도록 보다 획기적이고 적극적인 징수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음.
- 또한, 청년청에 입주한 단체들의 임대료, 사용료 체납금 및 이미 퇴거했으나, 체납된 사용료를 미납한 단체들의 미납금, 청년수당을 지급받은 후 약정중도해지에 따른 미납금, 민간위탁금의 목적외 사용에 따른 환불금 등은 성실한 납부자와의 형평성 등을 위해 조속히 납입될 수 있도록 체납자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특히, ‘노니논다’ 라는 단체는 청년청 자립실험실 운영단체이자 서울혁신 센터에 입주한 단체로, 미래청과 청년청을 동시에 이용하면서 두 곳의 사용료를 체납하고 있는바, 혁신파크 내에 입주단체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특정단체가 중복적인 혜택을 누리는 일이 없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체납단체 등 현황〉

- 청년청 체납 : 24건(2019.10.31.기준)
 - 3개월 이상 체납단체 : 썬에딧 외 4건(7,068천원)
 - 6개월 이상 체납단체 : 썬에딧 외 4건(7,068천원)
 - 퇴거했으나, 사용료 미납단체 3건(5,751천원)

단체명	퇴거일	미납액(원)
위드쌈(청년공간 청년청)	2019-02-28	2,238,810
썬에딧(청년공간 청년청)	2019-02-28	99,530
네트워크 고리*(무중력시대 대방)	2017-12-14	3,412,690

* 민간위탁금의 목적외 사용에 따른 환불금 등

〈 최근 3년간 청년청 소관 체납 상세내역 〉

(단위 : 원)

과 세년월	결정징수액	미수납액	최초과세일	최종납기일	항 목	주민/법인명
합 계	8,320,630	8,320,630	-	-	-	-
201701	500,000	500,000	2017-01-10	2017-02-28	청년활동지원금 약정중도해지에 따른 접수입처리	한○○
201701	500,000	500,000	2017-01-10	2017-02-28	청년활동지원금 약정중도해지에 따른 접수입처리	허○○
201801	116,500	116,500	2018-01-22	2019-10-13	청년활동공간 청년청 운영(관리비)	이○○/위드쌤
201805	111,260	111,260	2018-05-22	2019-10-13	청년활동공간 청년청 운영(관리비)	이○○/위드쌤
201805	111,260	111,260	2018-05-22	2019-10-13	청년활동공간 청년청 운영(관리비)	이○○/위드쌤
201806	861,540	861,540	2018-06-07	2019-10-13	청년활동공간 청년청 사용료	이○○/위드쌤
201806	101,860	101,860	2018-06-21	2018-08-31	2017년 민간위탁금 집행잔액	김○○
201806	2,297,590	2,297,590	2018-06-21	2018-08-31	민간위탁금 목적외 사용에 따른 환불금	김○○
201806	1,013,240	1,013,240	2018-06-21	2018-08-31	2017년 수입금 집행잔액	김○○
201807	109,490	109,490	2018-07-23	2019-10-13	청년활동공간 청년청 운영(관리비)	이○○/위드쌤
201807	109,490	109,490	2018-07-23	2019-10-13	청년활동공간 청년청 운영(관리비)	이○○/위드쌤
201808	108,490	108,490	2018-08-16	2019-10-13	청년활동공간 청년청 운영(관리비)	이○○/위드쌤
201808	10,200	10,200	2018-08-29	2018-10-31	2017 청년프로젝트투자사업 2018년도 이자 추가발생분	리솜 외 1
201808	20,110	20,110	2018-08-29	2018-10-31	2017 청년프로젝트투자사업 2018년도 이자 추가발생분	웨어하우스 우주(주) 외 1
201809	94,050	94,050	2018-09-17	2019-10-13	청년활동공간 청년청 운영(관리비)	이○○/위드쌤
201810	105,770	105,770	2018-10-18	2019-10-13	청년활동공간 청년청 운영(관리비)	이○○/위드쌤
201811	104,610	104,610	2018-11-16	2019-10-13	청년활동공간 청년청 운영(관리비)	이○○/위드쌤
201812	103,810	103,810	2018-12-14	2019-10-13	청년활동공간 청년청 운영(관리비)	이○○/위드쌤
201901	102,040	102,040	2019-01-16	2019-10-13	청년활동공간 청년청 운영(관리비)	이○○/위드쌤
201901	35,910	35,910	2019-01-25	2019-03-31	2018년 9월 부과된 퇴직정산건강보험료	김○○
201902	100,970	100,970	2019-02-18	2019-10-13	청년활동공간 청년청 운영(관리비)	이○○/위드쌤

과 세년월	결정징수액	미수납액	최초과세일	최종납기일	항 목	주민/법인명
2019-03	99,530	99,530	2019-03-15	2019-10-13	청년활동공간 청년청 운영(관리비)	이○○/위드쌤
2019-03	99,530	99,530	2019-03-15	2019-10-13	청년활동공간 청년청 운영(관리비)	오○○/썸에딧
2019-07	1,316,600	1,316,600	2019-07-04	2019-10-20	청년청 자립실험실 운영단체 사용료(2차)	윤○○/노래단다
2019-08	93,390	93,390	2019-08-15	2019-10-12	청년활동공간 청년청 운영(7월관리비)	김○○○/홉
2019-08	93,390	93,390	2019-08-15	2019-10-12	청년활동공간 청년청 운영(7월관리비)	조○○/미음

- ‘지난연도 세입’을 포함하여 청년청의 세입예산 편성내역을 전반적으로 살펴보면, 주먹구구식 세수추계 및 세수추계의 미반영, 세입 발생이 명백히 예상되는 세입 누락 등 세입 예산 편성에 대한 관리가 미흡한 것은 아닌지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으며,
- 세입예산 대비 결산차이가 발생할 경우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재정 운용이 어려울 수 있으며, 자칫 과도한 세입결손이 발생할 경우 재정 운용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힐 수 있는 만큼 세입 규모에 관계없이 모든 세입예산에 대한 세입발생 사안별로 보다 과학적인 분석을 통한 세밀하고 정확한 세수추계 후 적정한 세입예산이 편성되도록 하는 청년청의 각별한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음.

<예산액이 없으나 징수결정 및 수납 예산 내역>

예산 과목	2020년 예산액	2019년			2018년		2017년		2016년	
		예산액	수납액	결산전망	예산액	수납액	예산액	수납액	예산액	수납액
계	264,220	-	1,214,920	1,229,271	-	40,507	-	149,401	-	150,420
기타 사용료	78,705	-	-	-	-	-	-	53,925	-	48,750
기타 이자 수입	2,050	-	3,361	4,033	-	1,981	-	-	-	-
시도비 반환금 수입	-	-	-	-	-	37,597	-	-	-	-
그외수 입	182,500	-	1,211,559	1,225,238	-	-	-	95,476	-	101,670
지난년 도수입	965	-	-	-	-	929	-	-	-	-

2. 세출예산 검토

가. 청년자율예산 사업

- 서울시의 청년자율예산 사업은 “청년 월세 지원 사업”(109억원), “주거복지센터 운영 사업(청년주거종합지원단)”(4억5천8백만원), “성평등활동지원센터 운영”(1억 9백만원), “농인의 의사소통 지원서비스 확대”(4억7천만원) 등 37개 사업에 289억 9천 8백만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으며,
- 청년자율예산 사업 중 청년청 소관으로 편성하고 있는 사업은 “자치구 청년정책 거버넌스 활성화 지원”(76억원), “서울 청년실태조사”(9억 5천만원), “서울시 청년명예음부즈만 시범운영”(1억4천만원), “한류문화 콘텐츠 육성을 위한 씨앗 심기 창작 지원”(4억2천만원), “청년 마음 신체 건강 지원”(20억원) 등 총 13개 사업에 126억 7천 2백만원의 예산을 신규로 편성하고 있으며, 주요 사업 내용은 다음과 같음.

〈2020년도 청년자율예산사업 편성내역 : 37개 사업, 289억 9천 8백만원〉

(단위 : 천원)

연번	실국명	세부사업명	예산액
총계			28,998,780
1	청년청	자치구 청년정책 거버넌스 활성화 지원	7,604,950
2	청년청	서울시 청년명예음부즈만 시범운영	142,000
3	청년청	청년 정치참여 활성화를 위한 청년시의회학교	212,500
4	청년청	민주시민 역량강화를 위한 사회현안 토론 프로그램	34,000
5	청년청	한류문화 콘텐츠 육성을 위한 씨앗심기 창작 지원	425,000
6	청년청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청년 생활교육	95,000
7	청년청	청년이 주도하는 서울미래교육 지원	170,000
8	청년청	서울 청년실태조사	950,000
9	청년청	청년 마음 신체 건강 지원	2,000,000
10	청년청	고립청년 사회적 자립지원	450,000
11	청년청	청년 프리랜서 고용보험료 지원	300,000
12	청년청	세대공감 릴레이 토론회	42,500
13	청년청	시민이 선정부터평가까지 직접 설계하는 청년지원	246,500

계			12,672,450
14	감사위원회	공익제보 활성화 및 공익제보 지원	140,000
15	기후환경본부	폐현수막 재활용수거용 마대확산사업	102,000
16	노동민생 정책관	프리랜서 종합지원 대책마련	200,000
17		서울시 직장내 괴롭힘 방지확산	215,000
18		문화예술분야 프리랜서 공정거래 문화 정착	100,000
계			515,000
19	관광체육국	서울형 여행바우처 지원사업 (비정형 노동자 사회보장 제고)	650,000
20	도시교통실	나눔카 전기차 활성화 지원사업	769,500
21	문화본부	서울문화재단 출연금 (문화예술 중간지대 활동가 양성사업)	450,000
22	복지정책실	농인의 의사소통 지원서비스 확대	470,900
23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성평등 마을만들기	212,500
24	기획조정실	서울시립대 운영 지원 (서울시립대 사회참여활동 학점연계 개설 추진사업)	86,700
25	시민건강국	채식하기 편한 환경조성	190,000
26	여성가족정책실	데이트폭력 예방	133,000
27		성평등활동지원센터 운영	109,800
28		성평등한 미래도시 만들기를 위한 소모임 지원 사업	68,000
29		문화 다양성 이해교육 운영 (난민, 이주민, 다문화 계층 자립강화)	42,500
30		성평등문화 확산조성	85,000
계			438,300
31	인권담당관	서울시민 인권실태 조사	80,000
32		인권정책 홍보 및 인권문화행사 개최	50,000
계			130,000
33	주택건축본부	청년 월세 지원 사업	10,910,000
34		주거복지센터 운영 사업(청년주거종합지원단)	458,000
35		2030 역세권 청년주택 정책진단 및 발전방향 수립용역	200,000
계			11,568,000
36	평생교육국	평생교육진흥원 운영 (청년 시민교육 활성화 사업)	85,000
37		평생교육진흥원 운영 (2020 서울형 직장인 갭이어)	518,400
계			603,400

〈2020년도 청년자율예산사업 주요 사업 내역〉

(단위 : 천원)

연번	실·국명 부서명	세부사업명	통계목	예산액	사업개요
1	청년청	자치구 청년정책 거버넌스 활성화 지원	사무 관리비	115,0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위치 : 25개 자치구 ● 사업기간 : 2020.1.~2020.12. ● 사업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치구 공동포럼(사무관리비 115,000) - 청년정책 공론장 운영, 자치구별 청년 정책 수요의 직접참여 제안경로 형성, 제안정책에 대한 예산편성 및 사업시행(자치단체경상보조 7,489,950)
			자치 단체 경상 보조금	7,489,950	
2	청년청	서울시 청년명예옴부 즈만 시범운영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45,0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대상 : 청년 ● 사업기간 : 2020.1.~2020.12. ● 사업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시 청년정책네트워크와 연계하여 청년 정책의 감시감독을 수행하는 청년명예옴부즈만 시범 운영(사무관리비 95,000) - 청년참여 옴부즈만 발전방향 연구(연구용역비 47,000)
			사무 관리비	50,000	
			연구 용역비	47,000	
3	청년청	청년 정치참여 활성화를 위한 청년시의회학 교	사무 관리비	212,5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대상 : 서울지역 청년(만 19세~39세) ● 사업기간 : 2020.2.~2020.12. ● 사업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년들의 시의회 의정참여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사무관리비 212,500)
4	청년청	민주시민 역량강화를 위한 사회현안 토론 프로그램	사무 관리비	34,0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대상 : 만 19세~39세 ● 사업기간 : 2020.2.~2020.12. ● 사업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토론 시민교육 프로그램의 시행 및 홍보 - 프로그램 진행 전문 청년강사(퍼실리테이터) 양성
5	청년청	한류문화 콘텐츠 육성을 위한 씨앗심기 창작 지원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 사업비	425,0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대상 : 서울지역 거주 만 19세~39세 청년 ● 사업기간 : 2020.1.~2020.12. ● 사업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글로벌 경쟁력을 지닌 한국문화원형 등을 소재로 한 원천콘텐츠 기획안 발굴 및 창작지원(위탁사업비 240,000) - 원천콘텐츠 사업화를 위한 전문 에이전트 육성 및 판로지원(위탁사업비 185,000)
6	청년청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청년 생활교육	사무 관리비	95,0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대상: 서울시 혁신교육 제안과정에 함께하는 19세~39세 청년 ● 사업기간 : 2020.5.~2020.12. ● 사업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년 생활교육프로그램 교육과정 개발(사무관리비 30,000) - 청년 생활교육프로그램 운영 및 홍보(사무관리비 65,000)
7	청년청	청년이 주도하는 서울미래교육 지원	사무 관리비	10,0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대상: 서울시 혁신교육 제안과정에 함께하는 19세~39세 청년 ● 사업기간 : 2019.1.~2019.8. ● 사업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시 교육청과 협력체계구축(사무관리비 10,000) - 청년이 제안하고 실행하는 교육 프로그램 및 프로젝트 공모를 통한 발굴 및 자치구별 제공(자치단체 경상보조155,000) - 컨설팅단 구성 및 운영(자치단체 경상보조 5,000)
			자치 단체 경상 보조	160,000	
8	청년청	서울 청년실태조사	사무 관리비	950,0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대상 : 서울시 청년 ● 사업기간 : 2020.1.~2020.12. ● 사업내용

					-청년부채, 건강 등 청년종합실태조사(사무관리비 950,000)
9	청년청	청년 마음 신체 건강 지원	사무 관리비	2,000,0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대상 :서울거주 만19~34세 청년 중 마음건강(고위험군), 신체건강, 생활체육 지원이 필요한 청년 3,500명 내외 ● 사업기간 : 2020.1.~2020.12. ● 사업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음건강 브랜딩, 콘텐츠 홍보, 박람회/토론회 개최(사무관리비 40,000) - 청년 심리정서 심층상담 지원 및 생활체육 커뮤니티 운영(사무관리비 1,960,000)
10	청년청	고립청년 사회적 자립지원	사무 관리비	450,0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대상: 만19~34세 고립·은둔 청년 400명 내외 지원 ● 사업기간 : 2020.2.~12. ● 사업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립청년 발굴 및 청년 사회관계망, 청년-가족 자조모임, 교육, 진로코칭, 재능탐색, 자립 및 취·창업 프로그램 지원 등(사무관리비 450,000)
11	청년청	청년 프리랜서 고용보험료 지원	사회 보장적 수혜금	300,0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대상: 서울 거주 만19~34세 청년 프리랜서 중, 지역가입 건강보험료 납부하는 세대주 1,000명 내외 ● 사업기간 : 2020.1.~.12. ● 사업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인 청년 프리랜서(세대주)에게 10개월 이상 건강보험료 지원 통한 사회안정망 확충(사회보장적 수혜금 300,000)
12	청년청	세대공감 릴레이 토론회	사무 관리비	42,5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대상 :청년층 및 노년층 당사자, 전문가 등 30인 내외 ● 사업기간 : 2020.1.~2020.12. ● 사업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토론회 기획·운영 전반 참여, 원활한 토론을 위한 기획단 구성((사무관리비 15,000) - 세대공감 릴레이 토론회 주제 선정을 위한 타운홀 미팅(사무관리비 5,500) - 세대공감 릴레이 토론회 추진(사무관리비 22,000)
13	청년청	시민이 선정부터평가 까지 직접 설계하는 청년지원	사무 관리비	46,5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대상 :청년단체 등 ● 사업기간 : 2020.1.~2020.12. ● 사업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시 청년지원사업 현황 분석, 개선점 및 새로운 선정기준 마련, 사업만족도 조사 등(사무관리비 46,500) - 청년 당사자가 설계하는 청년 참여형 지원 사업 시행을 위한 프로젝트 지원(민간경상사업보조 200,000)
			민간경 상사업 보조	200,000	
14	감사 위원회	조사 담당 관	사무 관리비	40,0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위치 : 서울시 ● 사업기간 : 2020.1.~2020.12. ● 지원대상 : 서울시민 등 공익제보자 ● 사업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익제보 홍보물 제작(사무관리비 40,000) - 공익제보 보상금 및 구조금(기타보상금 100,000)
			기타 보상금	100,000	
15	기후 환경 본부	자원 순환 과	자치 단체 경상 보조	102,0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위치 : 25개 자치구 ● 사업기간 : 2020.1.~2020.12. ● 사업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폐현수막을 활용하여 재활용정거장 등에서 사용하는 재활용품 수거용마대 제작 구매 (자치단체경상보조금 102,000)

16	노동 민생 정책 관	노동 정책 담당 관	프리랜서 종합지원 대책마련	사무 관리비	200,0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기간 : 2020.1~2020.12 ● 사업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프리랜서 종합지원 실태조사
17	노동 민생 정책 관	노동 정책 담당 관	서울시 직장내괴롭힘 방지확산	사무 관리비	215,0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기간 : 2020.1~2020.12 ● 사업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컨텐츠 개발(70,000) - 교육실시(20,000) - 실태조사(125,000)
18	노동 민생 정책 관	공정 경제 담당 관	문화예술분야 프리랜서 공정거래 문화 정착	사무 관리비	100,0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기간 : 2020.1.~2020.12. ● 사업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예술 분야 프리랜서 보수실태조사(표준단가 산출 포함) 연구용역
19	관광 체육 국	관광 정책 과	서울형 여행바우처 지원사업 (비정형 노동자 사회보장 제고)	공기관 등에대 한경상 적위탁 사업비	650,0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대상 : 청년 비정규직/ 특수고용노동자 ● 사업기간 : 2020.1.~2020.12. ● 사업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정규직노동자 휴가비 지원(500,000) - 여행바우처사업 홍보비(50,000)
20	도시 교통 실	교통 정책 과	나눔카 전기차 활성화 지원사업	민간 경상 사업 보조	769,5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위치 : 서울시 전체 나눔카 전기차 대여소 ● 사업기간 : 2020.1.~2020.10. ● 사업내용 : 나눔카 전기차 이용시 차량 대여요금을 30% 할인된 가격에 제공하여 전기차 이용 활성화 유도 (민간경상사업보조 769,500)
21	문화 본부	문화 예술 과	서울문화재단 출연금 (문화예술 중간지대 활동가 양성사업)	사무 관리 및 회의비	50,0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위치 : 서대문구 총정로역 역세권청년주택 내 지하2층 <청년예술청> ● 사업기간 : 2020.1.~2020.11 ● 사업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반운영 및 자문회의·평가 등(사무관리 및 회의비 50,000) - 문화·예술 경계지대 활동가 대상 자율기획 프로젝트 공모형 사업(행사운영비 200,000) - 라운드테이블 기획형 사업(행사운영경비 200,000)
				행사 운영 경비	400,000	
22	복지 정책 실	장애 인자 립지 원과	농인의 의사소통 지원서비스 확대	사회 복지 사업 보조	470,9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위치 : 서울시 10개구(공모 예정) ● 사업기간 : 2020.3.~2020.12. ● 사업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어통역사 인건비(371,000) - 농아인 소통지원 프로그램 운영(100,000) - 사업수행주체 : 수어통역센터 - 추진방법 : 센터별 지원사업 공모실시 - 주요행사 : 농인가족 소통 교육 및 센터별 종합발표회
23	서울 민주 주의 위원 회	지역 공동 체담 당관	성평등 마을만들기	사무 관리비	70,0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위치 : 25개 자치구 ● 사업기간 : 2020.1.~2020.12. ● 사업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평등 홍보물 제작·배포(사무관리비 51,500) - 사업공모 운영비(사무관리비 18,500) - 성평등 소모임 지원, 교육(민간경상사업보조 142,500)
				민간 경상 사업 보조	142,500	
24	기획 조정 실	조직 담당 관	서울시립대 운영 지원 (서울시립대 사회참여활동	일용 임금	23,44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위치: 시립대(동대문구 전농동 90) ● 사업기간: 2020.3.1.~2021.2.29. ● 사업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휴먼라이브러리 사업 홍보 행사 및 기
				일반 수용비	44,844	

			학점연계 개설 추진사업)	급식비	4,500	념품·홍보물 제작(23,000) - 사람책 모집 및 인터뷰집 발간(7,000) - 사람책 대출 행사 기획 및 운영(24,000) - 기간제근로자 인건비,여비(27,700) - 사회봉사교과목 학생 자율 봉사활동 지원 (5,000)
		운영 수당		7,200		
		국내 여비		800		
		사업 추진비		2,400		
		일용직 부담금		3,516		
25	시민 건강 국	식품 정책 과	채식하기 편한 환경조성	사무 관리비	190,000	● 사업기간 : 2020년 ● 사업대상 : 채식을 지향하는 서울시민 및 외국인 관광객 등 ● 사업내용 - 채식 메뉴 제공 식당 실태조사(제공현황 및 운영형태 등) 145,000 - 수집 정보에 대한 온·오프라인 매체를 통 한 정보 제공 45,000
26	여성 가족 정책 실	여성 권익 담당 관	데이트폭력 예방	민간 경상 사업 보조	133,000	● 사업위치 : 미정 ● 사업기간 : 2020.1.~2020.12. ● 사업내용 - 데이트폭력 예방 및 성평등문화 확산을 위 한 교육 및 프로그램운영 - 민간단체의 전문성을 활용하여 젠더의식 변화를 반영한 웹툰형 책자 및 영상콘텐츠를 제작·배포함으로 여성폭력예방에 대한 시민관 심 제고
27	여성 가족 정책 실	여성 정책 담당 관	성평등활동 지원센터 운영	민간 위탁금	109,800	● 사업위치 : 은평구 녹번동 (성평등활동지원센터) ● 사업기간 : 2020.1.~2020.12. ● 사업내용 - 성평등 활동가 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
28	여성 가족 정책 실	여성 정책 담당 관	성평등한 미래도시 만들기를 위한 소모임 지원 사업	민간 경상 사업 보조	68,000	● 사업대상: 서울시 거주 및 활동 중인 청년 등 3명 이상의 모임 및 단체 ● 사업기간: 2020.1.~2020.12. ● 사업내용 - 성평등 문화확산을 위한 청년 소모임 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 48,000) -청년을 위한 학습 지원(민간경상사업보조 10,000) -성평등 활동 공동체 간 네트워킹 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 10,000)
29	여성 가족 정책 실	외국 인다 문화 담당 관	문화 다양성 이해교육 운영 (난민, 이주민, 다문화 계층 자립강화)	사무 관리비	42,500	● 사업위치 : 미정 ● 사업기간 : 2020.1.~2020.12. ● 사업내용 - 다양한 국적 및 환경의 외국인주민을 발굴 하여 인권·문화다양성 강사로 양성하기 위한 전문교육 실시
30	여성 가족 정책 실	여성 정책 담당 관	성평등문화 확산조성	민간 경상 사업 보조	85,000	● 사업기간 : 2020.1.~2020.12. ● 사업내용 - 초등학교 내 성평등 교육활동 실시 - 대상 : 초등(4학년), 참여학교 교직원 및 양육자 - 교육내용: 성평등, 젠더감수성, 성차별과 혐오, 미디어 속 성차별 재해석 등
31	인권 담당 관	인권 담당 관 (2개)	서울시민 인권실태 조사	사무 관리비	80,000	● 사업위치 : 서울특별시 (전체) ● 사업기간 : 2020.1.~2020.12. ● 사업내용 - 청년혐오표현인식 실태조사 75,000 (인건비 39백만원, 회의비 7,000,

		사업)				유인물 및 전산처리비 7,000, 교통통신비 2,000, 조사비 20,000 - 청년혐오표현인식 실태조사 선정위원회 등 운영 (5,000)
32	인권 담당 관	인권 담당 관 (2개 사업)	인권정책 홍보 및 인권문화행사 개최	행사 운영비	50,000	● 사업위치 : 서울시 중구 ● 사업기간 : 2020.1.~2020.7. ● 사업내용 - 청년 문화 캠페인, 소수자 인권인식 개선 프로그램 진행 등 상반기 인권 문화행사 개최(50,000)
33	주택 건축 본부	주택 정책 과	청년 월세 지원 사업	사회 보장적 수혜금	10,000,000	● 사업기간 : 2020.1.~12. ● 사업내용 - 지원대상: 중위소득 120% 이하 청년 1인 가구 5천명 지원 (만19세~39세 이하) - 지원내용: 월 20만원 임대료 지원 (최대 10 개월·200만원 지원) ※생애 1회 지원
				전산 개발비	900,000	
				기간제 근로자 등보수	10,000	
34	주택 건축 본부	주택 정책 과	주거복지센터 운영 사업(청년주거 종합지원단)	공기관 등에대 한경상 적위탁 사업비	458,000	● 사업기간 : 2020.3.~2020.12. ● 사업내용 중앙주거복지센터 내 청년주거종합지원단을 설치하여 청년 맞춤형 주거상담, 주거권 교 육, 청년 상담 인력 양성, 청년 주거정책 연 구 등 청년·신혼부부 특화 주거서비스 제공 인건비= 179,704천원 운영비= 79,481천원 사업비= 198,815천원
35	주택 건축 본부	주택 공급 과	2030 역세권 청년주택 정책진단 및 발전방향 수립용역	시설비	200,000	● 사업위치 : 서울시 역세권 청년주택 가능 부지 등 ● 사업기간 : 2020.1.~2020.11. ● 사업내용 - 청년층에 대한 정책 기초자료 조사(국내·외) - 역세권 청년주택 실태조사 - 역세권 청년주택 정책진단 - 역세권 청년주택 발전방향 모색
36	평생 교육 국	평생 교육 과	평생교육 진흥원 운영 (청년 시민교육 활성화 사업)	사업 운영비	7,000	● 사업위치 : 마포구 공덕동 ● 사업기간 : 2020.1.~2020.12. ● 사업내용 - 청년실행위원회 운영 (회의운영비 30,900천원, 사업운영비 7,000천원) - 시민교육 실태조사 연구(연구개발비 30,000천원, 회의운영비 2,100천원) - 전문가 양성 프로그램 운영 설계 (연구개발비 15,000천원)
				회의 운영비	33,000	
				연구 개발비	45,000	
37	평생 교육 국	평생 교육 과	평생교육 진흥원 운영 (2020 서울형 직장인 갭이어)	지원금	61,410	● 사업위치 : 마포구 공덕동 ● 사업기간 : 2020.1.~2020.12. ● 사업내용 - 미니 갭이어 운영(지원금 61,410천원) - 운영 자료집 제작 및 활동공유회 대관 등 (사업운영비 19,544천원) - 오리엔테이션, 인생설계 프로그램 운영 등 (행사홍보비 323,070천원) - 자문위원회 운영, 참여자 선발 등 심사운영비 (회의운영비 6,136천원) - 프로그램 효과 측정 연구 (연구개발비 8,010천원) - 신규 채용 인력 기본급 및 복리후생비 (인건비 100,230천원)
				사업 운영비	19,544	
				행사 홍보비	323,070	
				회의 운영비	6,136	
				연구 개발비	8,010	
				인건비	100,230	

① 서울시 청년명예옴부즈만 시범 운영

- 동 사업은 서울시 청년정책 전반의 실효적 추진을 위한 정책 감시·감독을 수행하는 청년명예옴부즈만위원회를 구성하고 청년명예옴부즈만을 시범적으로 운영하려는 것으로, 1억 4천 2백만원의 예산을 신규로 편성하고 있으며, 청년자율예산제 운영에 따른 서울청년시민회의에서 제안된 사업임.

〈편성 예산〉

(단위 : 천원)

구 분	2019년		2020예산(안) (B)	증감 (B-A)	(B-A)*100/A
	본예산	최종예산 (A)			
계	(x-) 0	(x-) 0	(x-) 142,000	(x-) 142,000	(x-) 0
기간제근로자등 보수	(x-) 0	(x-) 0	(x-) 45,000	(x-) 45,000	(x-) 0
사무관리비	(x-) 0	(x-) 0	(x-) 50,000	(x-) 50,000	(x-) 0
연구용역비	(x-) 0	(x-) 0	(x-) 47,000	(x-) 47,000	(x-) 0

〈주요 산출 기초〉

과목구분	2019년 본예산	2020년 예산(안)
기간제근로자등보수		○ 청년명예옴부즈만 운영요원 2,500,000원*2명*9개월 = 45,000천원
		증감사유 ○기간제 근로자 2명 인건비 - 청년자율예산제 운영에 따른 서울청년시민회의 정책 제안사업
사무관리비		○ 청년명예옴부즈만위원회 운영 500,000원*10개월 = 5,000천원
		○ 위탁교육비 1,000,000원*5회 = 5,000천원
		○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참석수당 100,000원*2명*5회 = 1,000천원
		○ 정례회의 참석수당

□ **청년명예옴부즈만위원회 구성**

- 인 원 : 총30명(서울시 시민과 청년 관련 정책·예산집행 분야)
 -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 위원 28명
- 운영방법
 - 청년명예옴부즈만위원회 전담 요원에 의한 운영(기간제근로자 2명 포함)
 - 정례회의 개최(월1회), 청년옴부즈만 포럼 및 성과발표회 개최
 - 현장의 목소리 청취를 위한 현장점검 활동(월1회)
 -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회의 참여, 청년정책 평가기준 마련 등
- 역 할
 - 청년자치정부 추진 사업(청년자율예산 50여개)에 대한 1차 감시 활동
 - 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와 연계하여 시정 모니터링
 - 고충민원에 대한 청년명예옴부즈만의 감사청구
 - 청년옴부즈만 대외 홍보 및 청렴 서울 이미지 제고
 - 청년자치정부 정책 지원

- 첫째, 동 사업은 용역 예산을 편성하여 “청년 참여 옴부즈만 발전방향 연구”를 진행하려는바, 용역을 통해 동 사업의 필요성과 운영방안에 대해서 먼저 살펴본 후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한 것은 아닌지 여부,
- 둘째, 동 사업의 청년명예옴부즈만위원회 조직 및 운영을 위해서는 「지방자치법」 및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조례상 근거가 필요함에도 법적 조치가 미비한 점,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위원회”란 위원회, 심의회, 협의회 등 명칭을 불문하고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와 시 산하기관의 소관 사무에 관하여 자문에 응하거나 조정, 협의, 심의 또는 의결 등을 하기 위하여 복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합의제 기관을 말한다.
2. “담당부서”란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위원회를 설치하고 운영하는 부서를 말한다.

3. "총괄부서"란 서울시 각종 위원회의 운영 실태 등을 전반적으로 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7조(위원회의 설치절차 등) ① 시장 등은 위원회를 설치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례나 규칙 등에 명시하여야 한다.

1. 설치 목적·기능 및 성격
2. 위원의 구성 및 임기
3. 존속 기한(존속기한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4. 위원의 결격사유, 제척·기피·회피(시민의 권리·의무와 관련되는 인가·허가, 분쟁 조정 등 특히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의결이 필요한 경우에 한정한다)
5. 회의의 소집 시기, 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
6. 위원장의 권한 및 위원장의 업무 대행자
7. 분과위원회, 실무위원회를 둘 경우 그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②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설치방법,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6조(위원회의 설치절차 등) ① 행정기관의 장(대통령 및 국무총리 소속 위원회 중 그 위원회의 간사 역할을 수행하는 등 운영을 주관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따로 있는 경우에는 그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위원회를 설치하려면 미리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의 대상 위원회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② 행정기관의 장은 위원회를 설치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법령에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4호의 경우에는 국민의 권리·의무와 관련되는 인·허가, 분쟁 조정 등 특히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의결이 필요한 경우에 한정한다.

1. 설치목적·기능 및 성격
2. 위원의 구성 및 임기
3. 존속기한(존속기한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4. 위원의 결격사유, 제척(除斥)·기피·회피
5. 회의의 소집 및 의결정족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행정기관의 장은 국민의 권리·의무와 관련되는 인·허가, 분쟁 조정 등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의결이 필요한 위원회를 설치할 때에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제8조제3항에 따른 분과위원회 등의 위원을 포함한다)에 대한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의제에 관한 사항이 관련 법률에 명시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5. 8. 11.>

④ 행정기관의 장은 공정하고 객관적인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업무 관련 비위(非違)가 있는 등 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위원에 대한

면직 또는 해촉 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신설 2015. 8. 11.>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설치 방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지방자치법」

제116조의2(자문기관의 설치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법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의회·위원회 등의 자문기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자문기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다른 자문기관의 기능을 포함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셋째, 동 사업의 청년명예옴부즈만위원회 운영을 위해 ‘기간제근로자’ 2명을 채용하려고 하나, 위원회 운영만을 위해 기간제근로자의 채용까지 필요한 것인지 여부,
- 넷째, 동위원회를 설치하여 청년정책네트워크 소속으로 운영하려고 하나 동 위원회 설치시 청년청 직속으로 설치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운영이 필요하다는 점,

○ 조직구성 : 청년청 산하 청년정책네트워크에 청년명예옴부즈만 설치



- 다섯째, 동 사업에서 편성한 ‘위탁교육비’ 예산은 「2020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 (이하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르면, “공무원 위탁 교육에 따른 교육관련 경비”로 청년 옴부즈만 양성 전문 아카데미 등의 교육을 위한 경비가 아니라는 점,

청년 옴부즈만 양성 전문가 아카데미

- 시 기 : 연 5회
- 대 상 : 청년명예옴부즈만 위원 및 관심있는 청년 등
- 교육내용
 - 권익구제를 위한 옴부즈만 교육, 갈등조정/해결 과정 교육
 - 관련제도 교육, 국내외 사례 학습 등
- 방 법
 - 시 옴부즈만위원회 및 공공기관과의 교육과정 연계
 - 민간 전문기관 강의과정 참여, 교육성과 발표 등

「2020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

2. 위탁교육비

가. 공무원 위탁교육에 따른 교육관련 경비

나. 지방공무원의 국가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의 교육기관 위탁교육에 따른 경비

- 여섯째, “청년명예옴부즈만 포럼(행사비)”은 주제나 내용도 정해지지 않고 구체적인 계획도 없는 1회성, 행사성 포럼 예산으로 불요불급한 예산은 아닌지 여부,
- 일곱째, “청년명예옴부즈만 포럼(행사비)”은 ‘행사운영비’로 편성하여야 함에도 예산과목에 맞지 않게 ‘사무관리비’로 편성하고 있는 점 등임.
- 따라서, 동 사업이 필요한 사업이라면 먼저 연구용역을 추진 중인바, 연구용역을 통한 결과를 바탕으로 사업 추진 여부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음.
- 또한, 사업 필요시 법적인 근거 마련 등 선행 조치 후 조례를 바탕으로 예산을 편성하여 사업을 집행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연구용역과 시범사업 실시를 동시에 진행하는 것은 예산의 효율적인 사용을 저해하는 것은 아닌지 면밀한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음.

- 한편, 청년청은 미흡한 준비, 설익은 행정, 속도만을 중시하는 행정이 아닌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적용되는 정당한 법적 절차의 철저한 사전 준수가 요망된다고 하겠음.

② 서울 청년실태조사

- 동 사업은 서울형 청년정책 마련을 위한 기초자료 조사로 자치구별 특수성을 고려한 차등적 정책 개발 등을 하려는 것으로, 9억 5천만원의 예산을 신규로 편성하고 있으며, 청년자율예산제 운영에 따른 서울청년 시민회의에서 제안된 사업임.

〈편성 예산〉

(단위 : 천원)

구 분	2019년		2020예산(안) (B)	증감 (B-A)	(B-A)*100/A
	본예산	최종예산 (A)			
계	(x-) 0	(x-) 0	(x-) 950,000	(x-) 950,000	(x-) 0
사무관리비	(x-) 0	(x-) 0	(x-) 950,000	(x-) 950,000	(x-) 0

〈주요 산출 기초〉

과목구분	2019년 본예산	2020년 예산(안)
사무관리비		○ 청년종합 실태조사 = 950,000천원
		- 청년정책 마스터플랜 200,000,000원 = 200,000천원
		- 청년 실태조사 50,000,000원*3개분야 = 150,000천원
	- 청년패널조사 25개구*400명*60,000원 = 600,000천원	
	증감사유	
	○ 서울형 청년정책 마련 위한 기초자료 조사	

과목구분	2019년 본예산	2020년 예산(안)
	- 청년자율예산제 운영에 따른 서울청년시민회의 정책 제안사업	

- 동 사업의 주요내용은 청년정책 마스터플랜을 위한 ‘사무관리비’(2억원), 청년 실태조사를 위한 ‘사무관리비’(1억5천만원), 25개 자치구 청년패널 조사를 위한 ‘사무관리비’(6억원) 등임.

〈청년 종합 실태조사 개요〉

1 청년 가계현황 실태조사

조사개요

- 조사기간 : 2020.3.~2020.6. (3개월)
- 조사대상 :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조례」에서 정하는 청년
- 조사방법 : 설문조사(1,000명) 및 면접조사(FGI:비진학청년, 비정규직, 정규직) 실시
- 조사내용 : 주거형태, 가구형태, 가구실부양자, 월별 평균 소득 및 지출(가구/개인), 지원받고 있는 서울시 청년 정책

후속 사업

- 서울시 청년 자립지원 기본계획(안) 수립 및 제안
- 전문가 자문회의 구성 및 의견수렴, 보고회 개최

2 청년 건강 실태조사

조사개요

- 추진배경 : 실태조사를 통한 청년대상 신체건강, 마음건강의 현황 파악, 실태 현황조사를 통한 청년대상 마음건강 정책 시행 근간 마련
- 조사대상
 - 만19세~39세 이하 서울시민
 -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상근한지 1년 이상 된 활동가 중 피고용인
 - 도시근로자 가구별 월평균소득 100% 이하
- 조사방법
 - 연령대, 활동/거주지역별 청년 2,000명 대상 온라인 설문조사 실시
 - 온라인 설문조사에 응한 청년 중 10% 이상 비율 대상 FGI 심층 인터뷰

3 청년 시민사회 활동가 실태조사

□ 조사개요

- 조사내용 : 서울시 청년시민사회활동가 지원관련 실태조사 실시
 - 근무특성(근무단체 유형, 근무단체 특성, 처우개선 등) 현황
 - 사회서비스(의료, 주거, 고용, 교육, 문화 지원 등) 지원 현황
 - 정서, 심리 지원 현황
- 조사방법 : 집단 면접
 - 서울시 내 25개 지역구 청년시민활동가 50명 대상
 - 시민사회활동가 활동 지원 관련한 개별 의견 수집

4 청년 패널 조사

□ 조사개요

- 추진배경 : 자치구별 특수성을 고려한 차등적 정책 개발 및 근거기반 서울형 청년정책 수립을 위한 청년의 실태와 정책수요 파악
- 조사대상 : 만 19~39세 서울 청년
- 조사내용 : 청년의 취업·경제생활 실태, 행복(삶의 질), 가치관(미래관), 신체·정신건강, 정책수요 및 평가 등

※ 참고: 청년 사회·경제실태조사(통계청 승인통계, 15~39세 대상으로 격년 조사)

□ 총 예산액 : 950백만원

- 서울시 청년정책 마스터플랜 수립 실태조사 : 200백만원
 - 마스터플랜 수립 자문단 운영 : 50백만원
 - 포럼, 토론회 등 공론장 개최 : 150백만원
- 청년실태조사(분야별) : 150백만원
 - 청년개인가계현황 실태조사 : 50백만원
 - 청년건강 실태조사 : 50백만원
 - 청년시민사회활동가 : 실태조사 50백만원
- 서울시 청년패널조사 : 600백만원(25개구*400명*60,000원)

- “청년정책 마스터플랜” 사업은 2억원의 예산을 1식으로 편성하고 있어 세부 집행 계획을 살펴본 바에 따르면 “마스터플랜 수립 자문단 운영” 5천만원, “포럼, 토론회 등 공론장 개최” 1억 5천만원으로 구성되어 있음.

○ 서울시 청년정책 마스터플랜 수립 실태조사 : 200백만원

- 마스터플랜 수립 자문단 운영 : 50백만원
- 포럼, 토론회 등 공론장 개최 : 150백만원

- 구체적인 사업 계획도 없는 동 사업에 대해 2억원의 예산을 편성한 것은 방만하고 낭비성 예산 편성은 아닌지 신중한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으며,
- 동 사업은 서울시 “청년정책 마스터플랜 수립 실태조사” 라고 하지만 결국 사업 내용은 자문단 운영이고, 포럼, 토론회 등 공론장 개최인바 이러한 예산 편성은 의회를 기만하고, 예산 심의권을 경시하고 훼손하는 것은 아닌지 엄중한 경고가 요망된다고 하겠음.
- 청년청은 ‘청년자율예산’이라는 이름으로 신중한 검토나 사업계획 없이 무조건적인 예산확보에만 주력하는 것은 아닌지 신중한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음.
- 또한, 모든 사업에 불법적이고, 근거 없는 자문단 운영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지양되어야 할 것이며, 이는 불필요한 예산은 아닌지 철저한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음.
 - 한편, 청년청은 정책이나 사업의 정당성과 당위성을 외부 자문위원회에 의존하는 구조를 탈피하여 스스로 정책결정의 주체가 되어 책임있는 행정가로서 사업을 집행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동 사업 중 “청년 건강 실태조사”는 조사 대상을 ‘만19세~39세 이하 서울시민으로,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상근한지 1년 이상된 활동가 중 피고용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 “청년 시민사회 활동가 실태조사”는 시민사회활동가의 활동 지원과 관련한 개별적인 의견(25개 자치구 청년시민활동가 50명 대상)을 조사하려는 것임.
 - 먼저, “청년 건강 실태조사” 대상을 ‘만19세~39세 이하 서울시민으로 중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상근한지 1년 이상된 활동가 중 피고용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바, 조사 대상을 비영리민간단체 활동가로 한정하는 것이 필요하고 적절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하겠으며,
 - “청년 시민사회 활동가 실태조사”의 경우도 서울시 청년정책이 청년활동가 중심, 소수의 청년 참여자 중심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은 상황에서 특별히 청년 시민사회 활동가의 실태만을 별도로 조사하는 것이 필요한 사업인지는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음.
- “서울 청년실태조사” 사업은 전체적으로 자치구별 차등적 정책 개발을 위한 조사라고 하나, 서울시는 서울시 전역에 산재해 있는 청년들의 공통적인 문제와 사무에 대해 먼저 고민하여야 함에도 자치구별로 자체 예산으로 수행해야하는 조사를 서울시가 9억 5천만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실시해야 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으며,
 - 각 자치구별 조사 등과 중복은 없는지, 청년들의 실태를 파악하고 정책적인 대안을 마련하는 기초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매년 조사하는 “청년 사회 경제 실태조사”와 중복성은 없는지 등에 대해서도 검토 후 사업을 시행하여 불요불급한 사업에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청년 사회 경제 실태조사〉

○ 조사배경 및 목적

- 현재 청년 실업 문제가 매우 심각한 상황이며 청년들은 취업만이 아니라 주거나 학자금 등 생활비 부담, 빈곤이나 부채 문제, 청년들의 사회 부족 등 다양한 어려움에 처해 있음.
- 최근 확대되고 있는 청년 문제들을 해결하고 이를 지원하는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청년 세대만이 갖는 특징을 이해할 필요가 있음.
- 청년을 둘러싼 다양한 환경들이 급변하고 이러한 환경 변화가 청년들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나 이를 정확하게 진단하고 청년 실태를 분석할 자료들은 많지 않음.
- 현재 청년들의 생활실태 전반을 파악할 수 있는 대표성 있는 조사를 수행하고 청년관련 지원 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함.

○ 조사대상 및 표본설계

- 조사대상 및 표본규모: 일반가구에 거주하는 만15-39세 이하 청년 2,700명 내외표본설계
- 표본추출틀 : 조사구 명부 이용
- 표본추출방식 1차: 추출 조사구 각 층에서 조사구 내 가구 수 비례하는 확률비례계통추출법
2차: 각 표본 조사구에서 계통추출법으로 가구 추출

○ 표본배분방식 : 층화비례배분

- 조사방법 및 조사시기
- 조사방법: 개별방문면접조사
- 조사시기: 매년 7월~9월

○ 조사내용

- 15~39세 공통사항 일반사항, 결혼 및 자녀관, 교육관련 인식, 일자리 관련 인식, 주거 및 가구취득 관련 인식, 건강 및 스트레스, 행복과 가치관, 인간관계 및 사회참여 등
- 19~39세 청년층 대학생활, 취업준비 및 직업 훈련, 경제활동 상태 등

○ 조사 및 공표주기

- 조사 및 공표주기 : 1년
- 공표범위 : 성별(남, 여), 연령(만15~18세, 만19~29세, 만30~39세), 지역규모(서울, 인천/경기, 대전/충청/세종/강원, 광주/전라/제주, 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 학력(중/고등학생, 대학생/대학원생, 고졸이하, 대졸이상), 주거형태(동거, 비동거/독립)

○ 조사연혁

- 2013년 ~ 2015년: 대통령직속 청년위원회
- 2016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2017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은 통계청 승인통계절차를 거쳐 2010년 인구주택총조사의 조사구를 활용하여 확률비례계통추출법으로 표본을 추출하여 **국가승인통계**로 조사를 진행함.

③ 자치구 청년정책 거버넌스 활성화 지원

- 동 사업은 광역 중심의 청년참여 공간을 자치구로 확장하고 자치구 청년 거버넌스의 독립적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76억 4백만원의 예산을 신규로 편성하고 있으며, 청년자율예산제 운영에 따른 서울 청년시민회의에서 제안된 사업임.

〈편성 예산〉

(단위 : 천원)

구 분	2019년		2020예산(안) (B)	증감 (B-A)	(B-A)*100/A
	본예산	최종예산 (A)			
계	(x-) 0	(x-) 0	(x-) 7,604,950	(x-) 7,604,950	(x-) 0
사무관리비	(x-) 0	(x-) 0	(x-) 115,000	(x-) 115,000	(x-) 0
자치단체경상 보조금	(x-) 0	(x-) 0	(x-) 7,489,950	(x-) 7,489,950	(x-) 0

〈주요 산출 기초〉

과목구분	2019년 본예산	2020년 예산(안)
사무관리비		○ 사업설명회 운영 1,000,000*1회 = 1,000천원
		○ 홍보물 제작 및 배포 5,000,000*1식 = 5,000천원
		○ 자치구 성과발표회 운영 5,000,000*1회 = 5,000천원
		○ 자치구 청년정책 공동포럼 65,000,000*1식 = 65,000천원
		○ 민간협의회 운영 27,000,000*1식 = 27,000천원
		○ 자치구 담당자 회의운영 400,000*4회 = 1,600천원
	○ 자치구 청년활동 실태조사 5,000,000*1식 = 5,000천원	

과목구분	2019년 본예산	2020년 예산(안)
		○ 워크숍 진행비 5,400,000*1식 = 5,400천원
	증감사유	
	○ 청년 거버넌스를 자치구로 확장 추진 - 청년자율예산제 운영에 따른 서울청년시민회의 정책 제안사업	
자치단체경상보조금		○ 자치구 청년정책 거버넌스 활성화 사업비(강남구) 425,655,000*1식 = 425,655천원 ○ 자치구 청년정책 거버넌스 활성화 사업비(강동구) 299,850,000*1식 = 299,850천원 ○ 자치구 청년정책 거버넌스 활성화 사업비(강서구) 180,570,000*1식 = 180,570천원 ○ 자치구 청년정책 거버넌스 활성화 사업비(관악구) 496,850,000*1식 = 496,850천원 ○ 자치구 청년정책 거버넌스 활성화 사업비(구로구) 445,610,000*1식 = 445,610천원 ○ 자치구 청년정책 거버넌스 활성화 사업비(금천구) 495,155,000*1식 = 495,155천원 ○ 자치구 청년정책 거버넌스 활성화 사업비(노원구) 519,000,000*1식 = 519,000천원 ○ 자치구 청년정책 거버넌스 활성화 사업비(도봉구) 486,650,000*1식 = 486,650천원 ○ 자치구 청년정책 거버넌스 활성화 사업비(동대문구) 484,800,000*1식 = 484,800천원 ○ 자치구 청년정책 거버넌스 활성화 사업비(서대문구) 416,060,000*1식 = 416,060천원 ○ 자치구 청년정책 거버넌스 활성화 사업비(성동구) 516,600,000*1식 = 516,600천원

과목구분	2019년 본예산	2020년 예산(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치구 청년정책 거버넌스 활성화 사업비(성북구) 514,750,000*1식 = 514,750천원 ○ 자치구 청년정책 거버넌스 활성화 사업비(송파구) 391,000,000*1식 = 391,000천원 ○ 자치구 청년정책 거버넌스 활성화 사업비(양천구) 540,000,000*1식 = 540,000천원 ○ 자치구 청년정책 거버넌스 활성화 사업비(은평구) 543,400,000*1식 = 543,400천원 ○ 자치구 청년정책 거버넌스 활성화 사업비(중랑구) 545,000,000*1식 = 545,000천원 ○ 자치구 청년정책 거버넌스 활성화 사업비(마포구) 27,000,000*1식 = 27,000천원 ○ 자치구 청년정책 거버넌스 활성화 사업비(동작구) 27,000,000*1식 = 27,000천원 ○ 자치구 청년정책 거버넌스 활성화 사업비(서초구) 27,000,000*1식 = 27,000천원 ○ 자치구 청년정책 거버넌스 활성화 사업비(광진구) 27,000,000*1식 = 27,000천원 ○ 자치구 청년정책 거버넌스 활성화 사업비(용산구) 27,000,000*1식 = 27,000천원 ○ 자치구 청년정책 거버넌스 활성화 사업비(강북구) 27,000,000*1식 = 27,000천원 ○ 자치구 청년정책 거버넌스 활성화 사업비(영등포구) 27,000,000*1식 = 27,000천원
		증감사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년 거버넌스를 자치구로 확장하기 위한 증액 -청년자율예산제 운영에 따른 서울청년시민회의 정책 제안사업 	

- 동 사업 중 ‘사무관리비’로 편성한 주요 사업은 자치구 청년정책 공동포럼(6천5백만원), 민간협의회 운영(2천7백만원), 자치구 청년활동 실태조사(5천만원) 등임.
- “자치구 청년정책 공동포럼(6천5백만원)” 사업은 23개 자치구에서 공동으로 기획하고 참여하는 청년정책 포럼을 개최하려는 것이나,

○ 『자치구 청년정책 공론장 운영 ▶ 안건상정 ▶ 토론 및 숙의 ▶ 민주적 결정』

- 공론장 운영: 자치구 청년 누구나 참여 가능한 정책 공론장 운영
- 안건상정: 분과별 토론과제 및 정책제안 논의를 위한 필요한 안건제출
- 토론 및 숙의: 충분한 정보제공, 토론과 숙의 과정 보장을 위한 운영지원
- 민주적 결정: 제출된 안건을 민주적 절차에 따라 결정
- 숙의 과정 및 결과를 시민과 공유

- 서울시에서 자치구와 공동포럼을 진행하면서 전액 사업비를 서울시 예산으로 편성하는 것은 광역과 기초의 사무가 분리되어 있음을 감안해 볼 때, 바람직하지 않은 측면이 있다고 하겠으며,
- 청년청에는 “청년 정책 추진을 위한 민관협력” 사업의 청년정책 간담회 및 포럼 운영(8천만원), “서울청년 시민회의 및 청년거버넌스 운영 지원” 사업의 정책간담회 및 공론장 운영(8천만원)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청년청 소관 포럼, 공론화 등 예산 편성 내역〉

부서	사업명	2020년 예산액 (천원)	사업내용
청년청	청년 정책 추진을 위한 민관협력	5,000 80,000	-청년인지예산제 추진 및 관리 공론장 개최 및 실국 협업 -청년정책 간담회 및 포럼 운영
	서울청년 시민회의 및 청년거버넌스 운영 지원	80,000	-정책간담회 및 공론장운영
	자치구 청년정책	65,000	- 자치구 청년정책 공동포럼

	거버넌스 활성화 지원		
	서울시 청년명예음부즈만 시범 운영	10,000	-청년명예음부즈만 포럼 /행사비
	청년시의회학교 운영	120,000	-청년 및 시의원 공동 정책 포럼 개최
	서울시 청년허브 운영	100,000	- N개의 공론장
	서울-지역 협력강화 및 청년 교류기반 구축	100,000	-지방정부 청년정책 협 력포럼 및 공무원연수
	서울시 청년교류공간 운영	20,000	-청년교류 활성화를 위 한 컨퍼런스

- 지나치게 유사하고 중복되며, 구체적인 주제나 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은 포럼 등 행사비가 과도한바,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불요불급한 포럼 예산 편성은 지양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또한, 청년청 이외에도 서울시에는 서울혁신기획관의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협업 공론장”, 서울민주주의위원회의 “지역협치 활성화 정책 토론회”, “협치현안 정책토론회 ”등 수많은 공론장과 정책포럼 사업이 있는바, 서울시 청년정책과 관련하여 통합하여 운영할 수는 없는지에 대해서도 면밀한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음.

〈공론장(토론, 포럼) 운영 관련 유사 중복 사업〉

부서	사업명	2020년 예산액 (천원)	사업내용
서울혁신기획관 사회혁신담당관	사회혁신 생태계 조성 및 지원	160,000	- 미래혁신포럼 운영
		15,000	- 사회혁신 전국 포럼
서울혁신기획관 사회혁신담당관	기부 및 사회 협력 활성화	34,760	- 사회공헌혁신포럼
서울혁신기획관 전환도시담당관	전환도시거버넌스 운영	60,000	-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협업 시민이해관 계자 공론장 운영
		60,000	-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협업 전문가 토론회 개최
서울혁신기획관	공유서울 확산	290,000	- 공유서울 페스티벌 및

전환도시담당관			공유서밋 개최
서울혁신기획관 갈등조정담당관	시민 참여형 의사결정을 위한 공공토론 운영	345,000	- 공론화추진단 운영 - 전문가 토론회 운영
서울혁신기획관 갈등조정담당관	갈등관리 거버넌스 강화	200,000	-서울갈등포럼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서울민주주의담당관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운영	201,400 200,000	- 시민회의 구성 및 운영 - 시민회의 토론회 개최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서울민주주의담당관	함께서울 정책박람회 개최	40,000	- 정책포럼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서울민주주의담당관	시민 제안 발굴 및 실행	1,292,680	- 시민의제 기획단 및 선정단 운영 -시민토론 - 온오프라인 공론장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서울민주주의담당관	민주주의 서울 플랫폼 운영·관리	40,000	- 오프라인 공론장 개최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시민숙의예산담당관	시민숙의예산 운영	75,900 420,650 10,000	- 토론회 및 공론 , 기타 워크숍 등 운영 - 온시민예산광장 운영 -숙의예산지원협의회 및 숙의·공론 관련 간담회 등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시민숙의예산담당관	시민참여예산 운영	55,000	- 시민참여예산 홍보, 위촉식, 토론회 등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서울협치담당관	민관협치 체계구축 및 활성화 지원	18,000 95,000 20,000 25,000	- 공론장 운영 - 협치공론장 운영지원 - 협치사업 시민 대토론회 개최 - 협치현안 정책토론회 개최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서울협치담당관	지역협치 활성화	15,000,000	- 지역협치 활성화 정책 토론회 운영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서울협치담당관	행정-시민사회-지역사회 간 사회적 협약 체결	20,000	- 서울사회협약 정책 토론회 등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서울협치담당관	서울시 권역 NPO지원센터 조성 및 운영	273,287중 일부	- NPO 공론장 및 포럼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서울협치담당관	행정-시민사회-지역사회 간 사회적 협약 체결	20,000	- 서울사회협약 정책토 론회 등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지역공동체담당관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 운영	294,500	- 마을공동체 활동가 역 량 강화 공론장 운영 등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지역공동체담당관	마을공동체 활동 지원	5,000,000	- 연 2회 마을만들기 의 제 공동토론회 운영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지역공동체담당관	서울형 주민자치 활동지원 사업	15,000,000	- 주민자치회 분과별 의 제 발굴, 결정을 위한 숙의, 토론 등 주민총 회 운영 등

- 한편, “자치구 청년정책 공동포럼” 사업은 행사의 성격으로 ‘사무관리비’가 아니라 ‘행사운영비’로의 편성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데, 청년청은 예산 과목 기준에 맞는 예산 편성에 주의가 요망된다고 하겠음.
- 동 사업 중 “민간협의회 운영(2천7백만원)”은 23개 자치구 청년주체 간 교류와 협력을 위한 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하려는 것인바,

○ 민간협의회 구성 및 운영

- 일시: 매월 1회
- 내용: 23개 자치구 청년주체 간 교류와 협력을 위한 협의회 구성 및 운영

- “자치구 청년주체”라는 모호한 대상이 아닌 명확한 대상 규정을 바탕으로 한 근거 있는 ‘민간협의회 구성 및 운영’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바와 같이 「지방자치법」,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⁵⁾ 및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5)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기본원칙) ① 행정기관의 장은 위원회(위원회, 심의회, 협의회 등 명칭을 불문하고 행정기관의 소관 사무에 관하여 자문에 응하거나 조정, 협의, 심의 또는 의결 등을 하기 위한 복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합의제 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공정하고 적정하게 운영함으로써 주요 정책에 관한 이해를 원활하게 조정하고, 관계 행정기관 간의 합의 및 협이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며, 민주적이고 효율적인 행정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6조(위원회의 설치절차 등) ① 행정기관의 장(대통령 및 국무총리 소속 위원회 중 그 위원회의 간사 역할을 수행하는 등 운영을 주관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따로 있는 경우에는 그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위원회를 설치하려면 미리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의 대상 위원회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② 행정기관의 장은 위원회를 설치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법령에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4호의 경우에는 국민의 권리·의무와 관련되는 인·허가, 분쟁 조정 등 특히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의결이 필요한 경우에 한정한다.

1. 설치목적·기능 및 성격
2. 위원의 구성 및 임기
3. 존속기한(존속기한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4. 위원의 결격사유, 제척(除斥)·기피·회피
5. 회의의 소집 및 의결정족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행정기관의 장은 국민의 권리·의무와 관련되는 인·허가, 분쟁 조정 등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의결이 필요한 위원회를 설치할 때에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제8조제3항에 따른 분과위원회 등의 위원을 포함한다)에 대한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에 관한 사항이 관련 법률에 명시되도록 필요한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명칭을 불문하고 합의제 자문기구 등을 설치할 경우에는 법령에 근거가 있어야 하는바, 상설적으로 운영하려는 동 민간협의회가 법령과 조례에 근거가 없는 자의적인 자문기구가 되지 않도록 하는 주의가 요망된다고 하겠음.

「지방자치법」

제116조의2(자문기관의 설치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법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의회·위원회 등의 자문기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자문기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다른 자문기관의 기능을 포함하여 운영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위원회"란 위원회, 심의회, 협의회 등 명칭을 불문하고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와 시 산하기관의 소관 사무에 관하여 자문에 응하거나 조정, 협의, 심의 또는 의결 등을 하기 위하여 복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합의제 기관을 말한다.

2. "담당부서"란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위원회를 설치하고 운영하는 부서를 말한다.

3. "총괄부서"란 서울시 각종 위원회의 운영 실태 등을 전반적으로 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7조(위원회의 설치절차 등) ① 시장 등은 위원회를 설치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례나 규칙 등에 명시하여야 한다.

1. 설치 목적·기능 및 성격

2. 위원의 구성 및 임기

3. 존속 기한(존속기한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4. 위원의 결격사유, 제척·기피·회피(시민의 권리·의무와 관련되는 인가·허가, 분쟁 조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5. 8. 11.>

④ 행정기관의 장은 공정하고 객관적인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업무 관련 비위(非違)가 있는 등 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위원에 대한 면직 또는 해촉 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신설 2015. 8. 11.>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설치 방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정 등 특히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의결이 필요한 경우에 한정한다)

5. 회의의 소집 시기, 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

6. 위원장의 권한 및 위원장의 업무 대행자

7. 분과위원회, 실무위원회를 둘 경우 그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②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설치방법,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 동 사업 중 “자치구 청년활동 실태조사(5천만원)”는 자치구별 청년활동가 분포도 및 활동패턴 등을 조사하려는 것이나,

○ 자치구 청년활동 실태조사

- 일시: 2020년 5월 중

- 내용: 자치구별 청년활동가 분포도 및 활동패턴 등 조사

- 유사한 청년자율예산 사업인 “서울 청년실태조사” 사업에 포함되어 있는 예산인바, 청년청은 청년자율예산이라는 이름으로 유사하고 중복적인 사업에 대해서 분석과 검토 없이 예산을 편성하여 제출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면밀한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음.
- 한편, 두 사업 모두 공통적으로는 “자치구별 청년활동가”에 대한 조사로, 서울의 일반적인 청년 대상이 아닌 소수의 특화된 청년활동가에 대한 조사 예산을 반복적으로 편성하고 있는 것은 서울시 청년 모두를 대변해야 하는 청년청이 일부 청년활동가 중심의 사업에만 집중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음.
- 공정하고 중립적인 입장에서 서울시 전체 청년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청년청이 되도록 맡은바 역할을 충실히 이행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서울 청년 종합 실태조사 개요〉

1 청년 가계현황 실태조사

조사개요

- 조사기간 : 2020.3.~2020.6. (3개월)
- 조사대상 :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조례」에서 정하는 청년
- 조사방법 : 설문조사(1,000명) 및 면접조사(FGI:비진학청년, 비정규직, 정규직) 실시
- 조사내용 : 주거형태, 가구형태, 가구실부양자, 월별 평균 소득 및 지출(가구/개인), 지원받고 있는 서울시 청년 정책

후속 사업

- 서울시 청년 자립지원 기본계획(안) 수립 및 제안
- 전문가 자문회의 구성 및 의견수렴, 보고회 개최

2 청년 건강 실태조사

조사개요

- 추진배경 : 실태조사를 통한 청년대상 신체건강, 마음건강의 현황 파악, 실태 현황조사를 통한 청년대상 마음건강 정책 시행 근거 마련
- 조사대상
 - 만19세~39세 이하 서울시민
 -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상근한지 1년 이상 된 활동가 중 피고용인
 - 도시근로자 가구별 월평균소득 100% 이하
- 조사방법
 - 연령대, 활동/거주지역별 청년 2,000명 대상 온라인 설문조사 실시
 - 온라인 설문조사에 응한 청년 중 10% 이상 비율 대상 FGI 심층 인터뷰

3 청년 시민사회 활동가 실태조사

조사개요

- 조사내용 : 서울시 청년시민사회활동가 지원관련 실태조사 실시
 - 근무특성(근무단체 유형, 근무단체 특성, 처우개선 등) 현황
 - 사회서비스(의료, 주거, 고용, 교육, 문화 지원 등) 지원 현황
 - 정서, 심리 지원 현황
- 조사방법 : 집단 면접

- 서울시 내 25개 지역구 청년시민활동가 50명 대상
- 시민사회활동가 활동 지원 관련한 개별 의견 수집

4 청년 패널 조사

조사개요

- 추진배경 : 자치구별 특수성을 고려한 차등적 정책 개발 및 근거기반 서울형 청년정책 수립을 위한 청년의 실태와 정책수요 파악
- 조사대상 : 만 19~39세 서울 청년
- 조사내용 : 청년의 취업·경제생활 실태, 행복(삶의 질), 가치관(미래관), 신체·정신건강, 정책수요 및 평가 등

※ 참고: 청년 사회·경제실태조사(통계청 승인통계, 15~39세 대상으로 격년 조사)

총 예산액 : 950백만원

- 서울시 청년정책 마스터플랜 수립 실태조사 : 200백만원
 - 마스터플랜 수립 자문단 운영 : 50백만원
 - 포럼, 토론회 등 공론장 개최 : 150백만원
- 청년실태조사(분야별) : 150백만원
 - 청년개인가계현황 실태조사 : 50백만원
 - 청년건강 실태조사 : 50백만원
 - 청년시민사회활동가 : 실태조사 50백만원
- 서울시 청년패널조사 : 600백만원(25개구*400명*60,000원)

- 동 사업 중 “자치구 청년정책 거버넌스 활성화 사업”은 자치구에서 청년 참여기구 및 청년정책위원회의 구성 여부 등에 따라 차등적으로 보조금을 교부하려는 것으로,
 - 마포구, 광진구, 동작구 등 7개구는 최소 2천7백만원, 성동구, 성북구, 노원구 등 16개구에는 최대 5억1천9백만원의 “자치단체경상보조금”을 교부하려는 것이며, 중구와 종로구는 제외되어 있음.

<자치구별 사업비 세부 산출 기초>

과목구분	2020년 예산(안)	산출내역
자치단체경상보조금	○ 자치구 청년정책 거버넌스 활성화 사업비(강남구) 425,655,000*1식 = 425,655천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년 1인가구 지원사업: 44,800천원 ▶ 청년 1인가구 소셜다이닝: 14,800천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소대관료 및 강사료: 6,000천원 · 재료비: 4,800천원 · 식품명인 체험 운영비용: 4,000천원 ▶ 청년 마음건강상담소 운영: 30,000천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심리검사지 구매: 5,000천원 · 심리상담 관련 물품준비 등 운영비: 5,000천원 · 심리상담 내담자 다과비: 1,000천원 · 심리상담료 및 검사비: 19,000천원 - 청년창업 활성화 프로그램: 96,100천원 ▶ 2020 강남 청년창업톤: 41,100천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프로젝트 매니저: 9,200천원 · 운영요원: 5,200천원 · 여비: 600천원 · 사전컨설팅 워크샵, 창업계획 수립교육 등: 5,000천원 · 사후창업실행컨설팅: 3,200천원 · 서류심사수당: 700천원 · 해커톤 심사비: 750천원 · 특별강사: 500천원 · 사회자: 800천원 · 퍼실리테이터 및 현장자문 인력: 3,000천원 · 현장운영스텝: 1,110천원 · 렌탈물자(파티션, 테이블, 프린터, 노트북 등): 500천원 · 참가자 및 심사위원 등 식사: 1,600천원 · 다과 및 음료: 60천원 · 우수팀 상금지급: 4,000천원 · 홍보비 및 출력물: 5,000천원 · 조형물(포토존, 디자인장식물 등): 1,500천원 · 결과보고서: 400천원 · 참가자 1일 행사보험: 500천원 · 영상스케치 촬영 및 편집: 1,500천원 · 진행비(표찰, 소모품, 행사준비 등): 1,240천원 ▶ 청년 컨설팅 운영: 35,000천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년기업가 정신 강의 등: 10,000천원 · 금융, 주거, 경제 강의 등: 10,000천원 · 분야별 자문가 구성: 10,000천원 · 기타 운영비용(홍보): 5,000천원 ▶ 청년 스타트업 글로벌 마케팅 패널 지원사업: 20,000천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프로그램 마케팅 지원, 물류비용, 리워드 지급 등: 20,000천원 - 청년 거버넌스 운영 지원사업: 240,300천원 ▶ 강남 청년 토크 콘서트: 62,500천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토크 콘서트 운영비: 60,000천원 · 홍보비: 2,500천원 ▶ 청년 네트워크 모집 및 운영: 32,800천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강남청년풀 공개 모집: 10,000천원 · 청년 스토리 발굴 인터뷰: 3,000천원 · 거버넌스 연계 회의 운영비: 1,800천원 · 오리엔테이션 등 워크숍 운영비: 18,000천원

과목구분	2020년 예산(안)	산출내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강남 청년 페스티벌: 50,000천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획, 홍보 및 연출: 20,000천원 · 시설물 설치: 15,000천원 · 참가자 사례금: 8,000천원 · 프로그램 등 운영: 5,000천원 · 기타 업무추진비: 2,000천원 ▶ 청년 동아리 활동 지원 사업: 30,000천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년동아리 활동사업 위탁운영비: 10,000천원 · 동아리(팀) 활동비 지급: 20,000천원 ▶ 강남 청년 100인 테이블: 65,000천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년 100인 테이블 운영비: 60,000천원 · 장소, 기자재 대관료: 3,000천원 · 홍보비: 2,000천원 - 청년 활동 지원사업: 67,900천원 ▶ 강남 청년도전 프로젝트: 52,500천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심사위원 수당: 500천원 · 우수자 포상금: 1,000천원 · 강남 청년도전 프로젝트 사업비 보조: 50,000천원 · 홍보물 제작 등 운영비: 1,000천원 ▶ 청년 작가들의 찾아가는 미술관: 15,400천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시 기획 및 섭외: 4,000천원 · 전시 및 운송·설치비: 4,000천원 · 디스플레이: 1,000천원 · 인건비(큐레이터, 작가): 3,200천원 · 운영비: 1,000천원 · 대행료: 1,200천원 · 전시오픈 리셉션: 1,000천원
	<p>○ 자치구 청년정책 거버넌스 활성화 사업비(강동구) 299,850,000*1식 = 299,850천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강동 청년참여기구 운영: 146,000천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참여기구 인건비: 86,000천원 · 참여기구 사업비: 40,000천원 · 참여기구 운영비: 20,000천원 - 강동 청년축제(해뜨는 강동): 60,000천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회의 및 사업추진 간담회 등: 3,000천원 · 홍보물 제작비 등: 5,000천원 · 사무용품 및 행사준비물 구입 등: 12,000천원 · 행사비: 15,000천원 · 인건비: 15,000천원 · 음향/무대장비: 10,000천원 - 강동구 청년도전 프로젝트 지원사업 (JOIN+): 65,000천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프로젝트 지원비(민간이전): 40,000천원 · 홍보물 제작: 1,000천원 · 네트워크 운영비: 5,000천원 · 교육 및 컨설팅 프로그램: 9,000천원 · 심사수당, 사례집 제작 등 기타 운영비: 5,000천원 · 성과공유회 개최 등: 5,000천원 - 강동 이웃청년 지역공헌 프로젝트: 56,000천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운영비(회의 및 기본 운영비): 8,000천원 · 홍보비(직접 홍보비, 홍보물 제작비 등): 6,000천원 · 사업추진비(식비): 5,000천원 · 사업추진비(행사비): 16,000천원 · 사업추진비(상해보험 가입비): 1,000천원

과목구분	2020년 예산(안)	산출내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60,000천원 · 동문회 지원: 40,000천원 · 체육대회 개최: 20,000천원 ▶ 금천 청년활동 실무자 근로환경 개선 연구: 15,000천원 ▶ 청년활동 실무자 근로환경 개선 및 역량 강화사업: 15,000천원 - 금천 청년 문화다양성랩(Lab.)프로젝트: 106,200천원 ▶ 금천 청년 문화다양성랩(Lab.) 사업운영: 55,200천원 · 사업 인건비: 48,000천원 · 운영 및 사무관리비: 600천원 · 문화다양성랩 사업협의체 운영: 6,600천원 ▶ 문화다양성 네트워크 구축 및 운영: 5,000천원 ▶ 문화다양성리빙랩 운영: 46,000천원 · 문화다양성 전시 및 공연: 30,000천원 · 캠페인, 굿즈제작, 콜로키움 등 행사운영비: 14,000천원 · 홍보비: 2,000천원
	<p>○ 자치구 청년정책 거버넌스 활성화 사업비(노원구) 519,000,000*1식 = 519,000천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0 노원청년 탐구생활: 160,000천원 · 사무국 운영: 100,000천원 · 공론장 운영: 20,000천원 · 아카데미 운영: 20,000천원 · 노원청년축제 기획 운영: 20,000천원 - 레일로드 아트 프로젝트: 130,000천원 · 프로젝트 기획단 운영비용: 310,000천원 · 프로젝트 준비비용: 50,000천원 · 프로젝트 진행비용: 40,000천원 · 프로젝트 홍보 및 아카이빙: 9,000천원 - No.1(노원)재능 공유 마켓: 140,000천원 · 재능 공유 교육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50,000천원 · 교육 공간 운영: 30,000천원 · 재능 공유 플랫폼 공간 상시 운영: 30,000천원 · 소셜네트워크 운영: 10,000천원 · 재능 공유 커뮤니티 활성화 비용: 20,000천원 - 창업은 처음이지, 난 4번째야!: 120,000천원 · 공간확보: 20,000천원 · 공간 홍보 및 운영: 50,000천원 · 창업 및 교류 프로그램: 50,000천원
	<p>○ 자치구 청년정책 거버넌스 활성화 사업비(도봉구) 486,650,000*1식 = 486,650천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년 연극문화 활성화: 167,000천원 · 인건비: 23,000천원 · TFT회의 등 운영비: 2,000천원 · 연극인 교육비: 20,000천원 · 단체 창작비: 120,000천원 · 홍보비: 2,000천원 - 도봉구 청년 참여기구 활성화: 178,000천원 · 인건비: 71,000천원 · 교육비: 3,000천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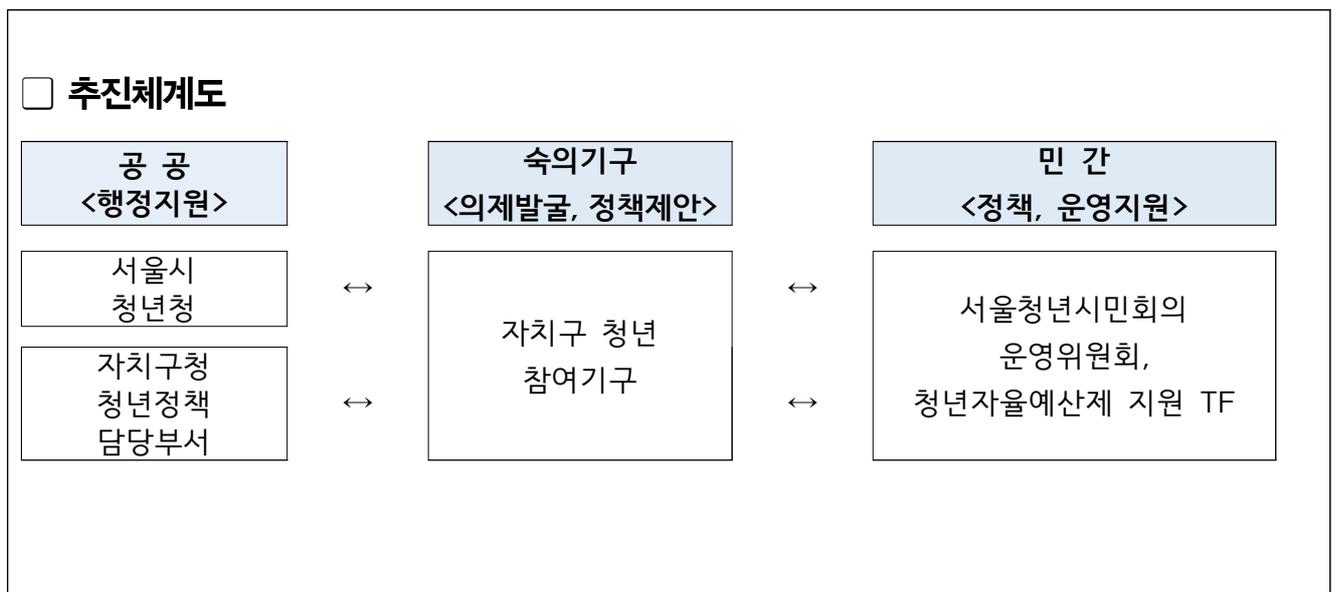
과목구분	2020년 예산(안)	산출내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진행비: 5,000천원 · 분과별 프로젝트 예산: 50,000천원 · 연구비: 22,000천원 · 영상 촬영 및 홍보비: 15,000천원 · 사무국 운영비: 7,000천원 · 성과보고회: 5,000천원 - 도봉구 청년 사회혁신 활동가 양성: 150,000천원 · 활동비: 120,000천원 · 교육 및 캠프, 멘토링 및 네트워킹 지원, 활동기록물 제작비 등: 30,000천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치구 청년정책 거버넌스 활성화 사업비(동대문구) 484,800,000*1식 = 484,800천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대문구 청년발전소 동청넷: 294,800천원 · 프로그램비: 120,000천원 · 네트워크 회의비: 28,800천원 · 상설 사무국 설치 운영: 141,000천원 · 홍보비: 5,000천원 - 동대문구 청년지원 Project Innovation Station D: 200,000천원 · 프로그램비: 180,000천원 · 모니터링 및 중간, 최종 평가: 15,000천원 · 홍보비: 5,000천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치구 청년정책 거버넌스 활성화 사업비(서대문구) 416,060,000*1식 = 416,060천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대문구 청년네트워크 활성화 사업: 120,560천원 · 청년네트워크 전담운영인력: 74,160천원 · 운영 물품 구입 및 홍보물 제작: 7,000천원 · 청년네트워크 분과운영: 22,400천원 · 아카데미 운영: 3,000천원 · 공청회 운영: 11,000천원 · 업무추진비: 3,000천원 - 서대문구 청년동아리 지원사업: 10,000천원 · 지원금: 10,000천원 - 서대문구 외식산업 창업 사업: 50,000천원 · 외식산업 교육지원: 35,000천원 · 시그니처 메뉴개발 지원: 15,000천원 - 서대문구 청년 치유·문화예술 지원: 155,000천원 ▶ 여가 치유 지원 사업: 25,000천원 · 치유형 프로그램 운영: 15,000천원 · 집단상담 프로그램 운영: 10,000천원 ▶ 동네 청년 영화제 지원: 30,000천원 · 미디어 아카데미: 5,000천원 · 진행과정 아카이빙: 10,000천원 · 미디어 여행진행: 5,000천원 · 동네 영화제 운영: 10,000천원 ▶ 서대문구 독립출판 창작자 육성 프로그램: 30,000천원 · 북 콘서트 등 강연행사: 10,000천원 · 글을 쓰는 워크숍: 12,000천원 · 출판기념회: 3,000천원 · 홍보 및 결과물 제작: 5,000천원 ▶ 서대문구 실무형 문화예술기획학교: 70,000천원 · 이론과정: 10,000천원

과목구분	2020년 예산(안)	산출내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무과정 1: 25,000천원 · 실무과정 2: 25,000천원 · 영상/출판물 제작: 10,000천원 - 서대문구 청년 세입자 권리 찾기 사업: 88,500천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대문구 청년공공임대주택 모니터링: 40,000천원 · 실태조사 및 연구 비용: 40,000천원 ▶ 서대문구 청년 가구 라이프스타일 리빙랩: 40,000천원 · 지정 주제 팀: 20,000천원 · 자유 주제 팀: 15,000천원 · 지원 사업 운영비: 5,000천원 ▶ 서대문구 청년주거 릴레이 포럼: 8,500천원 · 사전 인터뷰 및 자문: 2,000천원 · 청년 주거 포럼: 5,000천원 · 결과 자료 및 결과 공유회: 1,500천원
	<p>○ 자치구 청년정책 거버넌스 활성화 사업비(성동구) 516,600,000*1식 = 516,600천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년 문화생태계 조성 사업: 284,000천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년 어울림마당 개최: 110,000천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사비: 52,000천원 · 대관료: 5,000천원 · 홍보비: 5,000천원 · 운영비: 30,000천원 · 창작보조금: 15,000천원 · 워크숍: 2,000천원 · 기타사업비: 1,000천원 ▶ 대학생 멘토: 74,000천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비: 57,000천원 · 운영비: 17,000천원 ▶ 청년벤처 창업박람회: 100,000천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사비: 50,000천원 · 홍보비: 10,000천원 · 운영비: 40,000천원 - 성동 청년 자치시대: 191,000천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동 청정넷 구축: 65,000천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건비: 20,000천원 · 운영비: 18,000천원 · 홍보비: 7,000천원 · 공론장: 7,000천원 · 활동비: 11,000천원 · 워크숍: 2,000천원 ▶ 성동 청년 기자단 운영: 50,000천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활동비: 24,000천원 · 홍보비: 3,000천원 · 장비대여: 6,000천원 · 제작비: 5,000천원 · 발대식 및 수료식: 6,000천원 · 우수기자 포상: 3,000천원 · 행사비: 3,000천원 ▶ 청년 리빙랩 프로젝트 운영: 76,000천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비: 75,000천원 · 심사수당: 1,000천원 - 청년 1인가구 기반 조성: 70,000천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동 공유부업 조성: 30,000천원

과목구분	2020년 예산(안)	산출내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업무추진비: 3,000천원 - 청년 미래직업 양성과정: 200,000천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운영비: 195,000 · 프로그램1: 60,000천원 · 프로그램2: 60,000천원 · 프로그램3: 70,000천원 · 발표회: 5,000천원 ▶ 홍보비: 5,000천원 · 홍보물 제작: 4,500천원 · 문자발송료: 500천원 - 청년 도시양봉 프로젝트: 50,000천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운영비 · 체험/입문/심화프로그램: 40,000천원 · 자문·기획회의: 1,000천원 · 운영물 ▶ 홍보비 · 홍보물 제작: 5,000천원 · 문자발송료: 1,000천원 · 교재 등 제작: 3,000천원 - 서울특별시 양천구 청년주간 운영: 130,000천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운영비: 105,000천원 · 행사운영비: 100,000천원 · 기획 회의: 5,000천원 ▶ 홍보비: 22,000천원 · 홍보물 제작: 10,000천원 · 문자발송료: 2,000천원 · 홍보영상 제작: 5,000천원 · 자료제작: 5,000천원 ▶ 업무추진비: 3,000천원 · 업무추진비: 3,000천원
	<p>○ 자치구 청년정책 거버넌스 활성화 사업비(은평구) 543,400,000*1식 = 543,400천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년 함께 알아가'봄': 143,000천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건비: 30,000천원 · 연구용역비: 35,000천원 · 프로젝트비: 60,000천원 · 행사비 등: 10,000천원 · 운영비 및 홍보비: 8,000천원 - 청년 판을 활짝 '여름': 132,000천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년축제: 60,000천원 · 행사비: 25,000천원 · 기타 행사경비: 15,000천원 · 운영비 및 홍보비: 200,000천원 ▶ 청년프로젝트: 72,000천원 · 사업비: 56,000천원 · 행사비(성과발표회): 5,000천원 · 운영비 및 홍보비: 11,000천원 - 청년 일하러 '가을'까: 110,000천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년창업: 90,000천원 · 행사비: 25,000천원 · 엑셀러레이팅: 40,000천원 · 운영비: 5,000천원 · 홍보비: 20,000천원 ▶ 청년취업: 20,000천원 · 행사비: 5,000천원

과목구분	2020년 예산(안)	산출내역
	○ 자치구 청년정책 거버넌스 활성화 사업비(광진구) 27,000,000*1식 = 27,000천원	- 자치구 청년정책 거버넌스 생태계 조성사업: 27,000천원 · 사무국운영인력: 18,000천원 · 공론장 운영비: 3,000천원 · 홍보비: 3,000천원 · 회의비: 1,500천원 · 강사비: 1,500천원
	○ 자치구 청년정책 거버넌스 활성화 사업비(용산구) 27,000,000*1식 = 27,000천원	- 자치구 청년정책 거버넌스 생태계 조성사업: 27,000천원 · 사무국운영인력: 18,000천원 · 공론장 운영비: 3,000천원 · 홍보비: 3,000천원 · 회의비: 1,500천원 · 강사비: 1,500천원
	○ 자치구 청년정책 거버넌스 활성화 사업비(강북구) 27,000,000*1식 = 27,000천원	- 자치구 청년정책 거버넌스 생태계 조성사업: 27,000천원 · 사무국운영인력: 18,000천원 · 공론장 운영비: 3,000천원 · 홍보비: 3,000천원 · 회의비: 1,500천원 · 강사비: 1,500천원
	○ 자치구 청년정책 거버넌스 활성화 사업비(영등포구) 27,000,000*1식 = 27,000천원	- 자치구 청년정책 거버넌스 생태계 조성사업: 27,000천원 · 사무국운영인력: 18,000천원 · 공론장 운영비: 3,000천원 · 홍보비: 3,000천원 · 회의비: 1,500천원 · 강사비: 1,500천원
자치단체경상보조금 편성합계: 7,489,950천원		

○ 동 사업의 추진체계, 추진기관별 주요 역할 및 유형별 구분은 다음과 같음.



추진기관별 주요역할

구분	추진기관	역 할
공공	서울시 청년청	· 사업총괄, 예산 확보 및 지원 · 서울청년시민회의 운영지원단 구성 · 청년자율예산제 자치구숙의형 예산편성
	자치구 청년정책 담당부서	· 사업총괄 및 지원 · 자치구 청년참여기구 구성 및 지원 · 자치구 청년참여기구 제안 사업 집행
민간	서울청년시민회의 운영위원회	· 서울청년시민회의 운영위원회 산하 청년자율예산제 지원 TF (가칭) 구성을 통한 정책 및 운영 지원
숙의 기구	자치구 청년 참여기구	· 공론·숙의를 통한 청년자율예산제 자치구 숙의형 사업제안

지원유형 구분

항목	청년자율예산제 자치구 숙의형 사업	자치구 청년정책 거버넌스 활성화 지원 사업
참여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년 기본조례가 제정된 구 - 청년 참여기구를 운영 중인 구 - 현재 참여기구를 운영하고 있지 않으나,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향후 청년참여기구를 운영할 계획으로 청년 당사자가 참여하는 '청년참여 민관 TF' 등 협의체를 구성한 경우 ② '청년정책위원회' 등 청년심의기구를 구성·운영하는 경우 	자치구 숙의형 사업 참여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했거나 2019년 청년자율예산제 참여하지 않은 자치구 중 지역 청년 거버넌스 조성 의지가 있는 자치구
대상 구	강남, 강동, 강서, 관악, 구로, 금천, 노원, 도봉, 동대문, 서대문, 성동, 성북, 송파, 양천, 은평, 중랑	마포, 동작, 서초, 광진, 용산, 강북, 종로, 영등포, 중구
선정방법	사업 공고 후 신청서 접수 및 내부 기준에 따라 선정	
지원규모	자치구 당 최대 550백만원 (단위 사업 별 최대 300백만원)	자치구 당 27백만원
지원목적	2019년 청년자율예산제(자치구 숙의형) 사업운동을 통해 제안된 정책에 대한 실행예산 교부	자치구 청년 공론장 운영 부대비용 등 자치구 별 청년정책 거버넌스 조성을 위한 예산 교부
지원방법	자치단체경상보조금 교부	

- 동 사업은 자치구에서 청년 참여기구 및 청년정책위원회의 구성 등에 따라 2019년 청년자율예산제(자치구 숙의형) 사업운영을 통해 제안된 정책에 대한 실행예산을 교부하려는 것으로,
 - 청년 참여 기구 등이 없어 자치구 숙의형 사업에 참여하지 못한 자치구에는 자치구당 최소 금액의 보조금(2천7백만원)을 지원하고 있음.

- 동 사업은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신중한 예산 편성과 집행이 요망된다고 하겠음.
 - 첫째, “자치구 숙의형 청년자율예산제” 사업은 시민참여예산 중 지역참여형과 구단위계획형 사업과 일정부분 유사하나, 법령에 따르면 참여 예산의 다양한 참여 방식에 대해서는 조례로 정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운영의 근거로는 “청년자율예산제 운영계획”만을 근거하고 있는바,
 - 계획서(방침서)에 근거한 청년자율예산제는 법령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안정적 제도화를 저해하는 측면이 있는 것은 아닌지 신중한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음.

「지방재정법」

제39조(지방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의 주민 참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지방자치법」 제39조에 따른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제도(이하 이 조에서 "주민참여예산제도"라 한다)를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5. 5. 13., 2018. 3. 27.>

② 지방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의 주민 참여와 관련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으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등 주민참여예산기구(이하 "주민참여예산기구"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신설 2018. 3. 27.>

1.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2. 제3항에 따라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예산안에 첨부하여야 하는 의견서의 내용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민참여예산제도를 통하여 수렴한 주민의 의견서를 지방

의회에 제출하는 예산안에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4. 5. 28., 2018. 3. 27.>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지역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별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15. 5. 13., 2017. 7. 26., 2018. 3. 27.>

⑤ 주민참여예산기구의 구성·운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6조(지방예산 편성과정에의 주민참여 절차) ① 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예산 편성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요사업에 대한 공청회 또는 간담회
2. 주요사업에 대한 서면 또는 인터넷 설문조사
3. 사업공모

4. 그 밖에 주민의견 수렴에 적합하다고 인정하여 조례로 정하는 방법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렴된 주민의견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예산편성시 반영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주민참여 예산의 범위·주민의견수렴에 관한 절차·운영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또한, ‘자치단체경상보조금’을 포함한 보조금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는 법령에 근거가 있어야 함에도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 어디에도 자치구 청년 사업을 지원할 근거는 없는 실정임.

「지방재정법」

제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공기관에 지출하는 경우에만 개인 또는 법인·단체에 기부·보조, 그 밖의公款 지출을 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에 따른 지출은 해당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14. 5. 28.>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 보조 자원(財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4.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공공기관”이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4. 5. 28.>

1. 그 목적과 설립이 법령 또는 법령의 근거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정하여진 기관
2. 지방자치단체를 회원으로 하는 공익법인

제32조의2(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 등) ① 지방보조금(제17조제1항 및 제23조제2항에 따른 보조금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해당 지방보조사업(제17조제1항 및 제23조제2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출 또는 교부받는 사무 또는 사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성격, 지방보조사업자(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비용부담능력 등에 따라 적정한 수준으로 책정되어야 한다.

② 지방보조금은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운영비로 교부(제17조제1항에 따른 지출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수 없다.

○ 서울시가 서울시 전체 청년들을 위한 청년 정책 추진을 위해 청년청을 신설한바, 서울시 전체 청년들을 위한 맞춤형 정책을 직접 설계하는 다각적인 노력을 했어야 함에도

- 자치구 나눠주기식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광역자치와 기초자치가 구분되어 있음에도 광역자치권에 대한 직무 유기는 아닌지 신중한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음.

○ 특히, 제출된 사업들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 계획이 없어 필요한 사업에 적정한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지에 대한 검토가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하겠으며, 이는 자치구 숙의형 청년자율예산이라는 명분아래 의회의 예산 심의권을 무력화시키고 의회를 거수기 역할만 수행하도록 하는 등의 문제가 있는 것으로 사료됨.

※ 시민참여예산제는 시민참여를 확대함으로써 재정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예산에 대한 시민 통제를 통해 책임성을 고취시키기 위해 「지방재정법」 개정(2011. 9.)과 「서울특별시 시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를 시행 중인 제도인바, 시민참여예산제도가 자치구의 민원해결창구 역할을 하게 된다면 서울시와 자치구간 사무구분의 불명확화와 함께 유사사례에 대한 민원 급증 및 광역차원의

행정계획에 대한 재원 부족, 인기영합주의적 예산편성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는 바, 앞으로 시민참여예산제도 시행에 있어서 참여시민들에 대한 충분한 사전교육 및 정보제공 등을 통하여 실효적으로 시민참여예산제도가 정착화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이 필요하다고 하겠음.

- 청년청에서 제한적으로 제출한 자료에 대한 검토 결과, 강동구는 “자치단체경상보조금”으로 집행할 수 없는 청년 참여기구 운영을 위해 인건비, 운영비 등을 편성하고 있으며,
 - 관악구(민간전문가채용 및 운영사무국 운영(프로젝트 매니저) 6,100만원), 구로구(청년정책코디네이터(인건비) 9,200만원, 민간전문가채용 및 운영사무국 운영), 금천구(금천 청년네트워크 운영사무국 설치 1억3천4백만원, 청년활동코디네이터 채용 8,200만원), 전문가(공인중개사)채용(비상근직) 2,200만원 사무운영비: 2,200만원), 노원구(2020 노원청년 탐구생활 1억6천만원, 사무국 운영 1억원), 도봉구(도봉구 청년 참여기구 활성화 1억7천8백만원 인건비7,100만원), 동대문구(상설 사무국 설치 운영 1억4천1백만원), 서대문구(청년네트워크 전담 운영인력 7,400만원), 성동구(성동 청정넷 구축 6,500만원, 인건비: 2천만원, 운영비 1,800만원) 또한 동일하게 인건비, 운영비 등을 편성하고 있음.
- 관악구는 서울시에서 이미 종료된 마을 사업인 커뮤니티 공간지원 공모 사업예산을 편성하고 있으며,

〈커뮤니티 공간지원 공모사업〉

- (공간지원비): 60,000천원
- (홍보비): 5,000천원
- (진행비): 2,000천원

- 성동구에서는 ‘자치단체경상보조금’으로 사용할 수 없고, ‘자치단체자본보조’로 편성해야할 것으로 보이는 “성동 공유부엌 조성을 위한 장비구입 1천만원 등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 등

- 동 사업들이 서울시 전체 청년들을 위한 직접적인 예산 집행인지 여부와 함께 “사업의 기대 효과가 일반 시민에게 보편적으로 제공되는 사업을 우선하여 선발”하도록 하는 관련 조례(「서울특별시 시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와의 부합 여부에 대해서도 신중한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음.

「서울특별시 시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18조의2(참여예산사업 심사기준)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시민참여예산사업을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13.>

1. 시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을 우선한다.
2. 사업의 기대 효과가 일반 시민에게 보편적으로 제공되는 사업을 우선한다.
3. 이미 설치 운영 중인 시 또는 자치구 시설에 대한 운영비의 신규 또는 증액을 요구하는 사업은 제외한다.
4. 단년도 사업이 아닌 계속사업은 제외한다.
5. 기타 예산편성 기준과 절차를 피할 목적으로 제안된 사업은 제외한다.

- 종합적으로 동 사업은 근거있는 사업운영, 자치구 사업에의 지나친 개입과 관여 등의 자치권 침해여부에 대해 신중한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으며,
- 동 사업방식은 구단위계획형 및 지역협치형 시민참여예산제를 그대로 답습한 유형으로 자치구에 협치기구, 마을계획 등을 강요했던 것과 유사하게 자치구에서 자체적으로 결정할 청년참여기구 설치 등을 강요하는 것은 아닌지 여부와 관치적 청년 사업에 대한 우려 등에 대하여 정책적이고 종합적인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음.
- 특히, ‘보조금’으로 자치구에서 조직하려는 청년참여기구의 인건비 등을 지원하는 것은 법령을 위반하는 사업 방식으로, 법령을 먼저 모범적으로 준수해야하는 청년청에서 편법적으로 인건비, 운영비 등을 보조금으로 지원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음.

- 또한, 자치구 단위에서 이미 구성되어있는 마을계획단, 주민자치회, 협치협의회 등을 활용할 수 있음에도 자치구에서의 청년조직을 별도로 운영하는 것은 오히려 지역에서 청년세대와 기성세대간 통합을 저해하는 것은 아닌지 등에 대한 우려가 있는바,
 - 기 활성화 되어 있는 기구들에서의 청년참여 비중을 높이는 등의 방안을 통해 청년들의 목소리를 시정에 반영하면서 세대 간 갈등을 조장하지 않고 세대 간 통합과 협력으로 나아갈 수 있는 사업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 청년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청년정책이 자칫 “청년” 공간, “청년” 일자리, “청년” 주택, “청년” 수당 등의 이름으로 서울시 전체 통합을 저해하는 것이 아닌지와 서울시의 청년정책 등 청년세대(2030)를 위한 지원정책이 어르신 세대(5060)에게도 유익한 정책이 되어 서울시민의 눈높이에 부합하고 정책 수용성을 높일 수 있도록 정책 설계에 더욱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종합적으로 청년자율예산제 운영에 따른 서울청년시민회의의 정책제안 사업을 살펴볼 때, 청년시민회의는 천 명도 안 되는 청년들로 구성되어 있고 실질적으로 왕성한 활동을 하는 청년은 소수에 불과한바,
 - 청년 자율예산으로 편성된 예산이 대표성있게 청년들의 의사를 대변한다고 보기에는 미흡한 측면이 있다고 하겠으며,
 - 법령과 조례 그 어디에도 청년시민회의에 서울시 청년자율예산편성권을 부여하는 근거가 없음에도 청년시민회의가 청년자율예산의 편성권자가 되어 있는 심각한 오류를 먼저 해소하는 등의 근거 마련이 필요할 것은 아닌지 신중한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음.

- 청년자율예산제도는 청년 당사자의 참여와 눈높이를 반영하려는 좋은 취지의 사업이라 할지라도 준비가 미흡한 사업, 법적 근거가 불충분한 사업 등을 집행할 수 없음에도 청년청은 면밀한 검토 없이 예산을 편성한 것은 아닌지 주의가 요망된다고 하겠으며, 청년청은 서울시 청년 모두를 위한 청년청 본연의 역할에 더욱 충실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한편, 서울시 시민참여예산제에 서울시 공무원의 참여에 제약을 둔 목적은 공정성 훼손 등에 대한 사전 방지 대책의 일환으로 보아야 할 것인바, 공무원에 준하는 법규를 적용받는 민간위탁기관의 임직원, 수탁 법인의 관계자에 대해서 서울시정 참여에 일정부분 제한 규정을 두어야 하는 것은 아닌지 신중한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음.
 - 특히, 청년당사자로 청년시민회의에 참여한다고 하나, 민간위탁의 수탁기관, 수탁법인 관계자의 청년시민회의 참여가 청년자율예산 참여 제안시 공정성 훼손 및 특혜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는 주의와 사전적 견제 장치가 필요하다고 하겠음.
- 시민참여예산사업 중 동단위 및 구단위계획형 시민참여예산은 변형된 시민참여 예산으로 자치구 사업 지원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이와 유사하게 청년자율예산에서 마저 자치구 사업 지원 예산을 일괄로 편성하여 예산안을 제출한 것은 광역자치와 기초자치가 구분되어 있는 지방자치제도를 퇴색시키는 것은 아닌지 신중한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음.

④ 청년 프리랜서 건강보험료 지원

- 동 사업은 청년 프리랜서의 사회적 안전망 확충을 위해 건강보험료 지원을 통한 청년 프리랜서의 생활안정 등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3억원의 예산을 신규로 편성하고 있으며, 청년자율예산제 운영에 따른 서울청년 시민회의에서 제안된 사업임.

〈편성 예산〉

(단위 : 천원)

구 분	2019년		2020예산(안) (B)	증감 (B-A)	
	본예산	최종예산 (A)			(B-A)*100/A
계	(x-) 0	(x-) 0	(x-) 300,000	(x-) 300,000	(x-) 100
사회보장적 수혜금	(x-) 0	(x-) 0	(x-) 300,000	(x-) 300,000	(x-) 100

〈세부 산출 기초〉

과목구분	2019년 본예산	2020년 예산(안)
사회보장적수혜금		○ 청년 프리랜서 건강보험료 지원 30,000원*10개월*1,000명 = 300,000천원
		증감사유
		○ 청년자율예산제 운영에 따른 서울청년시민회의 정책 제안사업

- 동 사업은 서울 거주 만19세부터 34세까지 청년 프리랜서 중 지역가입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는 세대주 1,000명에게 건강보험료를 지원하려는 것으로,

□ 사업내용

- 사업기간 : 2020.1월~12월
- 지원대상 : 서울 거주 만19~34세 청년 프리랜서 중, 지역가입 건강보험료 납부하는 세대주 1,000명 내외
 - 프리랜서(개인사업자등록증 보유 1인 개인사업자 또는 연간 용역계약

3건 이상 계약 프리랜서), 건강보험 지역가입 세대주, 서울 거주 만 19~34세 청년

- 서울시에서 거주하는 또는 활동하는 청년 프리랜서
- 개인사업자로 등록하여 활동하는 프리랜서 뿐만 아니라, 개인 자격으로 연간 3회 이상 용역 계약을 하는 프리랜서까지 포함.

- 사업수행주체 : 서울시
- 추진방법 : 모집신청 → 선정 → 지원(개인별 지원)
- 사업의 주요내용 :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인 청년 프리랜서(세대주)에게 10개월 이상 건강보험료 지원 통한 사회안정망 확충

- 「사회보장기본법」 6) 협의 대상사업으로 보건복지부의 협의를 진행중이며, 보건복지부 협의는 사업 시행을 위한 사전 절차에 해당한다고 하겠음.

6)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보장"이란 출산, 양육, 실업, 노령, 장애, 질병, 빈곤 및 사망 등의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하고 국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필요한 소득·서비스를 보장하는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를 말한다.
2. "사회보험"이란 국민에게 발생하는 사회적 위험을 보험의 방식으로 대처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를 말한다.
3. "공공부조"(公共扶助)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하에 생활 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를 말한다.
4. "사회서비스"란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의 도움이 필요한 모든 국민에게 복지, 보건의료, 교육, 고용, 주거, 문화, 환경 등의 분야에서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고 상담, 재활, 돌봄, 정보의 제공, 관련 시설의 이용, 역량 개발, 사회참여 지원 등을 통하여 국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지원하는 제도를 말한다.
5. "평생사회안전망"이란 생애주기에 걸쳐 보편적으로 충족되어야 하는 기본욕구와 특정한 사회 위험에 의하여 발생하는 특수욕구를 동시에 고려하여 소득·서비스를 보장하는 맞춤형 사회보장제도를 말한다.

제26조(협의 및 조정)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경우 기존 제도와의 관계, 사회보장 전달체계와 재정 등에 미치는 영향 등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고 상호협력하여 사회보장급여가 중복 또는 누락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경우 신설 또는 변경의 타당성, 기존 제도와의 관계, 사회보장 전달체계에 미치는 영향 및 운영방안 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경우 위원회가 이를 조정한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보장급여 관련 업무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기준을 마련할 수 있다.

「2020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

<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제도 이행 >

- 자치단체 예산편성 단계에서 협의·조정 이행여부를 자체적으로 점검하여 사업시행 전 협의절차를 준수할 수 있도록 명시

현 행	개 정
<p>V. 예산편성 참고자료</p> <p>1. 예산운용 실무</p> <p>1. 예산 일반</p> <p><input type="checkbox"/> 예산의 원칙</p> <p> 아. 예산 사전절차 이행의 원칙</p> <p> ○ 예산은 법령, 조례와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으므로 예산과 관련된 법령과 조례는 반드시 사전에 제정된 후에 예산을 의결하여야 하며, 중앙정부 또는 상급자치단체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사항은 승인절차를 이행하고 예산을 편성, 의회에 제출하여야 함</p> <p> - 각종 위원회나 관련부서의 협의를 거쳐야 하는 사안에 대해서도 반드시 사전절차를 이행한 후에 예산을 편성하여야 함.</p> <p style="text-align: center;">< 신 설 ></p>	<p>(예시)<u>사회보장기본법(제26조)에 따라 사회보장제도를 신설·변경할 경우 복지부장관과 사전 협의</u></p>
<p>1. 예산운용 실무</p> <p>3. 예산편성</p> <p><input type="checkbox"/> 예산의 편성절차</p> <p> 나. 예산편성 운영방법</p> <p>○ 편성과정 : 방침시달(예산) → 예산요구(사업부서) → 조정(예산</p>	

부서) → 의회제출(자치단체장) → 의회심의 → 확정

- **편성방법** : 분야·부문,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편성목

- **예산요구**

- 예산부서(기획관리실장, 기획실장)의 예산편성 방침을 통보 받은 각 실·국·과장 (청·소의장 포함)은 지정된 기일까지 세입·세출 예산 요구서와 사업관리카드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를 작성하여 예산 부서에 제출

- 성과계획서 : 조직의 미션, 전략 목표, 성과목표, 성과지표 등이 포함된 성과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
- 세입예산요구 : 회계별로 세입 예산요구서를 작성
- 세출예산요구 : 세출예산요구서를 작성하되, 세부사업단위로 편성목·통계목·산출 근거를 작성
- 보조금부담조서 : 보조사업의 경우에는 보조금 부담조서를 작성 하여 제출

< 신 설 >

다. 예산의 조정

- 예산요구서가 제출되면 예산부서에서 요구자의 설명을 청취한 후 단체장의 방침, 재정상황, 사업의 효율성 등을 충분히 검토 산출근거까지 조정하되
 - 조정 또는 심사를 할 때는 소관 부서장의 설명을 들어야 하며,
 - 세입예산을 증액 조정할 필요가 있을 때는 세입주관 부서장의 의견을 들어야 함

- 기타 개별 법령에서 규정한 사전 절차 이행 사항 등 관련자료 첨부 (예,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완료 공문 등)

- 예산요구서가 제출되면 예산부서에서 요구자의 설명을 청취한 후 단체장의 방침, 재정상황, 사업의 효율성, 법령에서 규정한 사전 절차 이행* 등을 충분히 검토 산출근거까지 조정하되

* (예)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 등

○ 동 사업은 다음의 사항에 대한 신중한 검토를 통한 예산 편성이 요망된다고 하겠음.

- 첫째, 동 사업은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편성하였으나, ‘사회보장적수혜금’은 법령과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근거가 있어야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는 점,

「2020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

01. 사회보장적수혜금

- 1. 법령에 의하여 민간에 지급하는 사회보장적 수혜금 및 보철구 제작비
- 2. 국고보조금에 의한 사회보장적수혜금
- 3.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해 저소득계층에 지원하는 사회보장적수혜금 및 물품
- 4.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해 지급하는 출산장려금
- 5.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운영비(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에 지급하는 예산포함)

- 둘째,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에 따르면,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경우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하나, 현재까지 사전 협의가 완료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한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음.

- 셋째, 대상은 “서울시에 거주하거나 활동”하는 청년 중에서 개인사업자로 등록하여 활동하는 프리랜서 뿐만 아니라, 개인 자격으로 연간 용역 계약을 3회 이상 수행하는 프리랜서도 포함하고 있는바, 이러한 정책 대상 범위가 적정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음.

- 넷째, 동 사업은 청년 프리랜서의 건강보험료를 지원하려는 것으로 프리랜서의 지원은 비단 청년의 문제만은 아닐 것인바, 그 범위의 적정성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하겠음.

- 다섯째, 청년자율예산으로 편성되어 노동민생정책관에서도 프리랜서 종합지원 대책마련 등의 사업이 있는바, 청년 프리랜서만을 위한 사업 예산이 과도한 것은 아닌지 여부와 중복적인 투자는 아닌지 면밀히 살펴볼 필요는 있을 것으로 사료됨.

〈청년자율예산 중 프리랜서 지원 관련 노동민생정책관 사업〉

실국명	세부사업명	예산액(천원)
노동민생 정책관	프리랜서 종합지원 대책마련	200,000
	서울시 직장내 괴롭힘 방지확산	215,000
	문화예술분야 프리랜서 공정거래 문화 정착	100,000

- 종합적으로 살펴볼 때, 동 사업을 시행할 경우, 조례에 대상, 범위, 규모, 방법 등의 구체적인 근거 규정 마련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이를 통해 「공직선거법」 상의 기부행위 여부에 대한 논란도 함께 해소될 수 있도록 해야할 것으로 사료됨.

⑤ 민주시민 역량강화를 위한 사회현안 토론프로그램

- 동 사업은 청년들의 민주시민 역량 강화를 위한 사회현안 토의·토론 학습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교육을 진행할 청년 강사를 양성하려는 것으로, 3천 4백만원의 예산을 신규로 편성하고 있으며, 청년자율예산제 운영에 따른 서울청년시민회의에서 제안된 사업임.

〈편성 예산〉

(단위 : 천원)

구 분	2019년		2020예산(안) (B)	증감 (B-A)	(B-A)*100/A
	본예산	최종예산 (A)			
계	(x-) 0	(x-) 0	(x-) 34,000	(x-) 34,000	(x-) 0
사무관리비	(x-) 0	(x-) 0	(x-) 34,000	(x-) 34,000	(x-) 0

〈주요 산출 기초〉

과목구분	2019년 본예산	2020년 예산(안)
사무관리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문토론 콘텐츠 및 ICT 교구 이용권 구입 10,000,000원*1식 = 10,000천원 ○ 강사비 500,000원*10회 = 5,000천원 ○ 다과비 4,000원*100명*10회 = 4,000천원 ○ 임차료 1,000,000원*10회 = 10,000천원 ○ 홍보비 5,000,000원*1식 = 5,000천원
		증감사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년들의 민주시민 역량강화를 위한 시민교육 프로그램의 시행 및 홍보, 전문 청년 강사(퍼실리테이터) 모집 - 청년자율예산제 운영에 따른 서울청년시민회의 정책 제안사업

- 주요 사업은 전문토론 콘텐츠 및 ICT 교구 이용권 구입을 위한 ‘사무관리비’(1천만원), 다과비를 위한 ‘사무관리비’(4백만원), 임차료를 위한 ‘사무관리비’(1천만원), 홍보비(1식)을 위한 ‘사무관리비’ (5백만원) 등임.

□ 사업내용

- 사업기간 : '20년도 ~ 계속
- 지원대상 : 청(소)년을 포함한 일반 시민 약 300~500명
- 사업의 주요내용 :
 - 토론 시민교육 프로그램의 시행 및 홍보
 - 프로그램 진행 전문 청년강사(퍼실리테이터) 양성

- 동 사업은 청(소)년을 포함한 모든 일반 시민 약 300~500명을 모집하여 전문토론 콘텐츠 및 ICT 교구 이용권 구입을 통해 토론 교육 프로그램을 시행하려는 것으로 보이나,
- 동 사업을 통해 사업 목표인 사회현안 토의·토론을 위한 청년 강사를 양성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하겠으며, 전체적으로 사업 내용이 추상적이고 모호한 것으로 보이는바,
 -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소관 민주시민교육 관련 예산과 중복성 검토와 함께 청년청 보다는 서울민주주의위원회 또는 평생교육진흥원에서 추진하는 것이 보다 적절하지 않은지 등에 대한 다각적이고 종합적인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음.

⑥ 청년시의회학교 운영

- 동 사업은 청년들의 의정활동 체험 및 시의회와 청년 간 정책 교류를 위하여 2억 1천 3백만원의 예산을 신규로 편성하고 있으며, 청년자율 예산제 운영에 따른 서울청년시민회의에서 제안된 사업임.

〈편성 예산〉

(단위 : 천원)

구 분	2019년		2020예산(안) (B)	증감 (B-A)	(B-A)*100/A
	본예산	최종예산 (A)			
계	(x-) 0	(x-) 0	(x-) 212,500	(x-) 212,500	(x-) 0
사무관리비	(x-) 0	(x-) 0	(x-) 212,500	(x-) 212,500	(x-) 0

〈주요 산출 기초〉

과목구분	2019년 본예산	2020년 예산(안)
사무관리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정참여 프로그램 홍보 13,500,000원*1식 = 13,500천원 ○ 의정활동 참여를 위한 교육과정 개발 50,000,000원*1식 = 50,000천원 ○ 의정활동 참여를 위한 교육프로그램 운영 10,000,000원*12회 = 120,000천원 ○ 청년 및 시의원 공동 정책 포럼 개최 12,000,000원*2회 = 24,000천원 ○ 의정참여 활동보고서 제작 5,000,000원*1식 = 5,000천원
		증감사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년들의 시의회 의정참여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을 위해 212,500천원 신설 - 청년자율예산제 운영에 따른 서울청년시민회의 정책 제안사업

- 주요 사업은 의정참여 프로그램 홍보를 위한 ‘사무관리비’(1천3백만원), 의정활동 참여를 위한 교육과정을 개발하기 위한 ‘사무관리비’(5천만원), 의정활동 참여를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 ‘사무관리비’(1억 2천만원), 청년 및 시의원간 공동 정책 포럼을 개최하기 위해 ‘사무관리비’(2천4백만원) 등 총 2억1천3백만원의 사무관리비를 편성하고 있음.

□ 사업내용

- 사업기간 : 2020. 2.~2020. 12.
- 지원대상 : 서울지역 청년(만 19세~39세)
- 사업수행주체 : 서울시, 서울시의회, 외부 전문 교육기관
- 추진방법 : 시의회와 협력을 통해 교육과정 자문 및 시의원 참여 협조, 용역 계약을 통해 운영 대행
- 사업의 주요내용 :
 - 의정 참여 활성화를 위한 의회제도 및 입법 과정 교육
 - 상임위 회의, 본회의 등 의정활동 참관 지원
 - 시의원과 협력하여 입법과정 참여 및 행정사무감사 보조
 - 청년들과 시의원 정책 포럼 공동 주최
 - 의정참여 활동보고서 제작

- 동 사업의 주요내용은 청년들을 대상으로 의회제도 및 입법 과정 등을 위한 교육과정 개발과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의원과 협력하여 입법 과정에 참여하고, 행정사무감사 보조에 참여시키기 위한 것으로 보여짐.
- 동 사업은 서울시의회와 소통과 협력이 필요한 사업이나, 서울시의회와의 사전 협의가 미흡한 것은 아닌지 검토의 여지가 있다고 하겠으며,
 - 유사 교육사업과 마찬가지로 청년청은 동 “교육과정 개발 사업” 또한 ‘사무관리비’로 편성하고 있는바, 예산과목의 적정성에 대해서도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⑦ 청년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운영

- 동 사업은 청년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생활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하려는 것으로, 9천 6백만원의 예산을 신규로 편성하고 있으며, 청년 자출예산제 운영에 따른 서울청년시민회의에서 제안된 사업임.

〈편성 예산〉

(단위 : 천원)

구 분	2019년		2020예산(안) (B)	증감 (B-A)	(B-A)*100/A
	본예산	최종예산 (A)			
계	(x-) 0	(x-) 0	(x-) 95,000	(x-) 95,000	(x-) 0
사무관리비	(x-) 0	(x-) 0	(x-) 95,000	(x-) 95,000	(x-) 0

〈주요 산출 기초〉

과목구분	2019년 본예산	2020년 예산(안)
사무관리비		○ 청년생활교육 프로그램 홍보 5,000,000*1식 = 5,000천원
		○ 청년생활교육 교육과정 개발 30,000,000*1식 = 30,000천원
		○ 청년생활교육 프로그램 운영 6,000,000*10회 = 60,000천원
	증감사유	
	○ 청년 생활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을 위해 95,000천원 신설 - 청년자출예산제 운영에 따른 서울청년시민회의 정책 제안사업	

- 주요 사업은 청년생활교육 프로그램 홍보를 위한 ‘사무관리비’(5백만원), 청년생활교육 교육과정 개발을 위한 ‘사무관리비’(3천만원), 청년생활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6천만원)등임.

□ 사업내용

- 사업기간 : 2020. 2.~2020. 12.
 - 청년 생활교육 실태조사 : 2020. 2.~2020. 12.
 - 청년 생활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2020. 5.~2020. 12.
- 지원대상 : 서울지역 거주 만 19세~39세 청년
- 사업수행주체 : 청년청, 외부 전문 교육기관
- 추진방법 : 용역 계약을 통해 개발 및 교육 대행
- 사업의 주요내용 :
 - 청년시민들이 근로계약서, 주택임대차계약서 등 생활에서 스스로의 권익을 더 잘 지킬 수 있도록 교육 프로그램 개발
 - 청년시민 생활교육프로그램 진행

- 동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청년 생활교육 실태조사와 청년 생활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 교육 내용으로는 “근로계약서, 주택임대차계약서” 작성 등인 것으로 나타나 있음.
- 동 사업 중 “청년 생활교육 실태조사”의 경우, 이미 청년자율예산 사업으로 제안되어 9억5천만원(사무관리비)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 “서울 청년실태조사”와 통합하여 실시할 수는 없는지 여부와 중복적인 실태조사 사업이 과도하게 편성된 것은 아닌지 면밀한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음.
- 동 사업 중 “청년 생활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의 경우는 서울시 노동인권센터, 청년공간 무중력지대, 청년일자리센터 등에서 이미 수행하고 있는 사업인바, 중복적인 투자로 예산 낭비의 우려는 없는지 신중한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음.
- 또한, 동 사업 예산을 전부 ‘사무관리비’로 편성하고 있으나, “청년 생활교육 프로그램 개발” 등은 “연구용역비”로 편성해야 하는 것은 아닌지 여부에 대한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음.

⑧ 청년이 주도하는 서울미래교육 지원

- 동 사업은 교육 당사자이자 주체로서 청년이 교육을 제안하고 실현할 수 있도록 서울시 교육청, 혁신교육지구(자치구)와 협력하여 그 기반을 조성하고 지원하려는 것으로, 1억7천만원의 예산을 신규로 편성하고 있으며, 청년자율예산제 운영에 따른 서울청년시민회의에서 제안된 사업임.

〈편성 예산〉

(단위 : 천원)

구 분	2019년		2020예산(안) (B)	증감 (B-A)	(B-A)*100/A
	본예산	최종예산 (A)			
계	(x-) 0	(x-) 0	(x-) 170,000	(x-) 170,000	(x-) 0
사무관리비	(x-) 0	(x-) 0	(x-) 10,000	(x-) 10,000	(x-) 0
자치단체경상보조금	(x-) 0	(x-) 0	(x-) 160,000	(x-) 160,000	(x-) 0

〈주요 산출 기초〉

과목구분	2019년 본예산	2020년 예산(안)
사무관리비		○ 청년청-교육청 협력체계 구축 = 10,000천원 - 협력회의 100,000원*10명*10회 = 10,000천원
		증감사유
	○ 청년자율예산제 운영에 따른 서울청년시민회의 정책 제안사업	
자치단체경상보조금		○ 공모사업(자치구) 100,000천원*1회 = 100,000천원
		○ 사업설명회 10,000천원*1식 = 10,000천원
		○ 사업홍보 20,000천원*1식 = 20,000천원
		○ 컨설팅단 운영 20,000천원*1년 = 20,000천원
		○ 현장 모니터링 500천원*10회 = 5,000천원
		○ 사업평가 500천원*10회 = 5,000천원

과목구분	2019년 본예산	2020년 예산(안)
	증감사유	
	○청년자율예산제 운영에 따른 서울청년시민회의 정책 제안사업	

- 주요 사업은 청년청과 서울시 교육청간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사무관리비’(1천만원), 교육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자치단체경상보조금’(1억 6천만원) 등임.

사업내용

- 사업기간 : 2020. 1. ~ 2020. 12.
- 지원대상 : 서울시 혁신교육 제안과정에 함께하는 19세~39세 청년
- 사업수행주체 : 교육프로그램 운영 청년/청년단체
- 추진방법 : 시범지구(자치구)를 선정하여, 자치구별 공모사업 수행
- 사업의 주요내용 :
 - 서울시-서울시교육청 협력체계구축
 - 청년이 제안하고 실행하는 교육 프로그램 및 프로젝트 공모를 통한 발굴 및 혁신교육지구(자치구)별 제공
 - 컨설팅단 구성 및 운영을 통한 교육 프로그램 현장성 담보 및 실행 담보

- 동 사업은 교육문제에 관심이 있고, 학교 현장에서 구체적인 프로그램 또는 프로젝트 운영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서울시 거주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년이 제안하고 실행하는 교육 프로그램 및 프로젝트 등을 서울시교육청에 제공하면,
 - 서울시교육청이 제안된 프로그램 및 프로젝트를 학교 현장에 안내하고, 안정적으로 실행될 수 있도록 협력하려는 것으로 보임.
- 다만 동 사업은 추진시 다음의 사항을 포함한 신중한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음.
 - 첫째, 동 사업은 ‘자치단체경상보조금’ 으로 자치구에 교부하여 공모사업으로 집행하려고 하나, ‘자치단체경상보조금’으로 보조금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는 법령에 근거가 있어야 함에도 「서울특별시 청년기본 조례」 어디에도 자치구 청년 사업을 지원할 근거가 없는 실정임.

「지방재정법」

제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공기관에 지출하는 경우에만 개인 또는 법인·단체에 기부·보조, 그 밖의公款 지출을 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에 따른 지출은 해당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14. 5. 28.>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 보조 자원(財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4.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공공기관"이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4. 5. 28.>

1. 그 목적과 설립이 법령 또는 법령의 근거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정하여진 기관
2. 지방자치단체를 회원으로 하는 공익법인

제32조의2(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 등) ① 지방보조금(제17조제1항 및 제23조제2항에 따른 보조금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해당 지방보조사업(제17조제1항 및 제23조제2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출 또는 교부받는 사무 또는 사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성격, 지방보조사업자(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비용부담능력 등에 따라 적정한 수준으로 책정되어야 한다.

② 지방보조금은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운영비로 교부(제17조제1항에 따른 지출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수 없다.

- 둘째, 예산과목에 맞지 않게 사업설명회 예산, 사업홍보 예산(1식), 현장 모니터링 예산 등을 '자치단체경상보조금' 으로 편성하고 있으며,
- 셋째, 어떠한 교육을 시행하겠다는 구체적인 내용없이 공모사업을 통해 청년들이 제안한 교육을 학교현장 등에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실행하겠다는 것은 교육의 중요성 및 파급효과를 감안할 때, 구체화되어 있지 않은 교육 콘텐츠에 대한 위험성 등은 없는지 신중한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음.

⑨ 세대공감 릴레이 토론회

- 동 사업은 청년층과 노년층 간 소통의 기회를 확대하고 이해의 폭을 확장하기 위한 토론회를 추진하려는 것으로, 4천 2백만원의 예산을 신규로 편성하고 있으며, 청년자율예산제 운영에 따른 서울청년시민회의에서 제안된 사업임.

〈편성 예산〉

(단위 : 천원)

구 분	2019년		2020예산(안) (B)	증감 (B-A)	(B-A)*100/A
	본예산	최종예산 (A)			
계	(x-) 0	(x-) 0	(x-) 42,500	(x-) 42,500	(x-) 0
사무관리비	(x-) 0	(x-) 0	(x-) 42,500	(x-) 42,500	(x-) 0

〈주요 산출 기초〉

과목구분	2019년 본예산	2020년 예산(안)
사무관리비		○ 세대공감 토론회 기획단 구성·운영 100,000원*30명*5회 = 15,000천원
		○ 타운홀 미팅 및 세대공감 토론회 5,500,000원*5회 = 27,500천원
		증감사유
		○ 청년층-노년층 간 소통의 기회를 확대하고 이해의 폭을 확장하기 위한 토론회 추진 - 청년자율예산제 운영에 따른 서울청년시민회의 정책 제안사업

- 주요 사업은 세대공감 토론회 기획단 구성·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1천 5백만원), 타운홀 미팅 및 세대공감 토론회 개최를 위한 ‘사무관리비’(2천 7백만천만원) 등임.

□ 사업내용

- 사업기간 : 2020년 1월~12월
- 사업수행주체 : 서울시
- 추진방법 : 직접수행
- 사업의 주요내용
 - 세대공감 토론회 기획단 구성·운영
 - 세대공감 토론회 주제 선정을 위한 타운홀 미팅 진행(1회)
 - 타운홀 미팅을 통해 선정된 주제를 토대로 세대공감 토론회 개최(4회)

- 동 사업은 30명 규모의 세대공감 토론회 기획단을 구성하여 토론회 주제 선정을 위한 타운홀 미팅(1회)을 실시하고, 세대공감 토론회(4회)를 개최하려는 것으로 보임.
- 법령에 근거 없이 기획단 등의 예산을 편성할 수 없음에도 기획단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를 편성하고 있으며,
- 주제 선정을 위한 미팅과 세대 공감 토론회를 실시하려고 하나, 이미 청년청 자체 및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서울혁신기획관에도 토론회 실시 사업이 많은바, 통합하여 실시할 필요는 없는지 신중한 검토가 요망 된다고 하겠음.

〈토론, 포럼, 공론장 운영 관련 유사 중복 사업〉

부서	사업명	2020년 예산액 (천원)	사업내용
청년청	청년 정책 추진을 위한 민관협력	5,000 80,000	- 청년인지예산제 추진 및 관리 공론장 개최 및 실무 협업 운영 - 청년정책 간담회 및 포럼 운영
	서울청년 시민회의 및 청년거버넌스 운영 지원	210,000 65,000	- 서울청년시민회의 및 공론장(원탁회의) 운영포럼 - 자치구 청년정책 공동포럼
	서울시 청년명예옴부즈만 시범 운영	10,000	- 청년명예옴부즈만 포럼/행사비
	청년시의회학교 운영	120,000	- 청년 및 시의원 공동 정책 포럼 개최
	자치구 청년정책 거버넌스 활성화 지원	65,000	- 자치구 청년정책 공동포럼

	서울시 청년허브 운영	100,000	- N개의 공론장
	서울-지역 협력강화 및 청년 교류기반 구축	100,000	- 지방정부 청년정책 협력포럼 및 공무원연수
	서울시 청년교류공간 운영	20,000	- 청년교류 활성화 위한 컨퍼런스
서울혁신 기획관 사회혁신 담당관	사회혁신 생태계 조성 및 지원	160,000	- 미래혁신포럼 운영
		15,000	- 사회혁신 전국 포럼
서울혁신 기획관 사회혁신 담당관	기부 및 사회 협력 활성화	34,760	- 사회공헌혁신포럼
서울혁신 기획관 전환도시 담당관	전환도시거버넌스 운영	60,000 60,000	-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협업 시민·이해관계자 공론장 운영 -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협업 전문가 토론회 개최
서울혁신 기획관 전환도시 담당관	공유서울 확산	290,000	- 공유서울 페스티벌 및 공유서밋 개최
서울혁신 기획관 갈등조정 담당관	시민 참여형 의사결정을 위한 공공토론 운영	345,000	-공론화추진단 운영 -전문가 토론회 운영
서울혁신 기획관 갈등조정 담당관	갈등관리 거버넌스 강화	200,000	- 서울갈등포럼
서울민주주의 위원회 서울민주주의 담당관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운영	201,400 200,000	- 시민회의 구성 및 운영 - 시민회의 토론회 개최
서울민주주의 위원회 서울민주주의 담당관	함께서울 정책박람회 개최	40,000	- 정책포럼
서울민주주의 위원회 서울민주주의 담당관	민주시민교육 추진	15,940	- 민주시민 포럼
서울민주주의 위원회 서울민주주의 담당관	시민 제안 발굴 및 실행	1,292,680	- 시민의제 기획단 및 선정단 운영 - 시민토론 - 온오프라인 공론장
서울민주주의 위원회	민주주의 서울 플랫폼 운영·관리	40,000	- 오프라인 공론장 개최

서울민주주의 담당관			
서울민주주의 위원회 시민숙의예산 담당관	시민숙의예산 운영	75,900 420,650 10,000	- 토론회 및 공론, 기타 워크숍 운영 - 온시민예산광장 운영 - 숙의예산지원협의회 및 숙의· 공론 관련 간담회 등
서울민주주의 위원회 시민숙의예산 담당관	시민참여예산 운영	55,000	- 시민참여예산 홍보, 위촉식, 토론회 등
서울민주주의 위원회 서울협치담당 관	민관협치 체계구축 및 활성화 지원	18,000 95,000 20,000 25,000	- 공론장 운영 - 협치공론장 운영지원 - 협치사업 시민 대토론회 개최 - 협치현안 정책토론회 개최
서울민주주의 위원회 서울협치담당 관	지역협치 활성화	15,000,000	- 지역협치 활성화 정책토론회 운영
서울민주주의 위원회 서울협치담당 관	행정-시민사회-지역사회 간 사회적 협약 체결	20,000	- 서울사회협약 정책토론회 등
서울민주주의 위원회 서울협치담당 관	서울시 권역 NPO지원센터 조성 및 운영	273,287중 일부	- NPO공론장 및 포럼
서울민주주의 위원회 서울협치담당 관	행정-시민사회-지역사회 간 사회적 협약 체결	20,000	- 서울사회협약 정책토론회 등
서울민주주의 위원회 지역공동체담 당관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 운영	294,500	- 마을공동체 활동가 역량 강화 공론장 운영 등
서울민주주의 위원회 지역공동체담 당관	마을공동체 활동 지원	5,000,000	- 연 2회 마을만들기 의제 공동 토론회 운영
서울민주주의 위원회 지역공동체담 당관	서울형 주민자치 활동지원 사업	15,000,000	- 주민자치회 분과별 의제 발굴, 결정을 위한 숙의, 토론 등 주 민총회 운영 등

- 한편, 청년 사업에 대한 이해와 공감 필요성은 노년층에만 한정되는 문제는 아닌바, 노년층만을 겨냥한 토론회가 사업 대상으로 적절한지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는 있다고 하겠음.

⑩ 시민이 선정부터 평가까지 직접 설계하는 청년지원

- 동 사업은 청년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청년지원사업의 선정기준 및 방식, 후속 평가기준 등을 마련하여 청년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관련 사례를 구축하려는 것으로, 2억 4천 7백만원의 예산을 신규로 편성하고 있으며, 청년자율예산제 운영에 따른 서울청년시민회의에서 제안된 사업임.

〈편성 예산〉

(단위 : 천원)

구 분	2019년		2020예산(안) (B)	증감 (B-A)	(B-A)*100/A
	본예산	최종예산 (A)			
계	(x-) 0	(x-) 0	(x-) 246,500	(x-) 246,500	(x-) 0
사무관리비	(x-) 0	(x-) 0	(x-) 46,500	(x-) 46,500	(x-) 0
민간경상사업보조	(x-) 0	(x-) 0	(x-) 200,000	(x-) 200,000	(x-) 0

〈주요 산출 기초〉

과목구분	2019년 본예산	2020년 예산(안)
사무관리비		○ 청년지원사업 개선방안 마련 15,000,000원 = 15,000천원
		○ 사업운영비 31,500,000원 = 31,500천원
	증감사유	
	○ 청년자율예산제 운영에 따른 서울청년시민회의 정책 제안사업	
민간경상사업보조		○ 프로젝트 지원 10,000,000원*20개팀 = 200,000천원
	증감사유	
	○ 청년자율예산제 운영에 따른 서울청년시민회의 정책 제안사업	

- 동 사업은 당초(2019년 10월 22일) 「시민이 선정부터 평가까지 직접 설계하는 청년지원 사업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으로 제출하였다가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부결 등으로 철회(2019년 10월 24일)하였던 사업으로,
 - 청년지원사업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사무관리비’(1식, 1천5백만원), 사업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1식, 3천1백만원), 프로젝트 지원을 위한 ‘민간경상사업보조’(20팀, 2억원)를 편성하고 있으나, 여전히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이 없는 등 다음의 사항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음.

□ 사업내용

- 사업기간 : '20. 1. ~ 12.
- 지원대상 : 청년단체 등
- 사업수행주체 : 서울시
- 추진방법 : 공모를 통한 사업추진(민간경상사업보조)
- 사업의 주요내용
 - 청년 당사자가 진행하는 서울시 청년지원사업 개선방안 마련(선정·평가 기준 등)
 - 개선방안을 적용한 청년지원사업 실행 및 평가

- 동 사업은 청년 당사자가 서울시 청년 사업에 대한 선정, 평가기준을 마련하고 공모를 통해 청년지원사업 대상자를 선정하고 실행 및 평가까지 추진하려는 것으로,
- 사업자 선정 및 평가기준 마련과 선정, 평가에 직접 참여할 시민은 누구인지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음.
- 또한, 기존 공모사업 관련 선정 및 평가기준이 있음에도 청년들의 사업에 대해서만 별도의 선정 기준과 평가기준이 필요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는 있다고 하겠음.

○ 결국 사업내용을 살펴보면, 주제가 정해져 있지 않은 공모사업으로, 청년청의 청년지원 공모사업에는 “청년프로젝트투자사업(55억 4천만원)” 및 청년허브, 무중력지대 등 “민간위탁기관 공모사업” 등 다수의 공모사업이 있으며, 2020년도 청년자율예산으로 편성하여 제출하고 있는 사업(10개 사업)도 아래와 같이 많이 있는 실정인바, 청년단체 등을 지원하는 공모사업이 지나치게 많은 것은 아닌지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음.

〈2020년도 청년자율예산 중 공모사업(민간경상사업보조) 현황〉

연번	실·국명 부서명		세부사업명	통계목	예산액	사업개요
1	청년청		청년이 주도하는 서울미래교육 지원	사무 관리비	10,0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대상: 서울시 혁신교육 제안과정에 함께하는 19세~39세 청년 ● 사업기간 : 2019.1.~2019.8. ● 사업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시 교육청과 협력처계구축(사무관리비 10,000) - 청년이 제안하고 실행하는 교육 프로그램 및 프로젝트 공모를 통한 발굴 및 자치구별 제공(자치단체 경상보조155,000) - 컨설팅단 구성 및 운영(자치단체 경상보조 5,000)
				자치 단체 경상 보조	160,000	
2	청년청		시민이 선정부터평가 까지 직접 설계하는 청년지원	사무 관리비	46,5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대상 :청년단체 등 ● 사업기간 : 2020.1.~2020.12. ● 사업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시 청년지원사업 현황 분석, 개선점 및 새로운 선정기준 마련, 사업만족도 조사 등(사무관리비 46,500) - 청년 당사자가 설계하는 청년 참여형 지원 사업 시행을 위한 프로젝트 지원(민간경상사업보조 200,000)
				민간경 상사업 보조	200,000	
3	기후 환경 본부	자원 순환 과	폐현수막 재활용수거용 마대확산사업	자치 단체 경상 보조	102,0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위치 : 25개 자치구 ● 사업기간 : 2020.1.~2020.12. ● 사업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폐현수막을 활용하여 재활용정거장 등에서 사용하는 재활용품 수거용마대 제작 구매 (자치단체경상보조금 102,000)
4	도시 교통 실	교통 정책 과	나눔카 전기차 활성화 지원사업	민간 경상 사업 보조	769,5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위치 : 서울시 전체 나눔카 전기차 대여소 ● 사업기간 : 2020.1.~2020.10. ● 사업내용 : 나눔카 전기차 이용시 차량 대여요금을 30% 할인된 가격에 제공하여 전기차 이용 활성화 유도 (민간경상사업보조 769,500)
5	문화 본부	문화 예술 과	서울문화재단 출연금 (문화예술	사무관 리 및 회의비	50,0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위치 : 서대문구 충정로역 역세권청년주택 내 지하2층 <청년예술청> ● 사업기간 : 2020.1.~2020.11

			중간지대 활동가 양성사업)	행사 운영 경비	400,0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반운영 및 자문회의·평가 등(사무관리 및 회의비 50,000) - 문화·예술 경계지대 활동가 대상 자율기획 프로젝트 공모형 사업(행사운영비 200,000) - 라운드테이블 기획형 사업(행사운영경비 200,000)
6	복지 정책 실	장애 인자 립지 원과	농인의 의사소통 지원서비스 확대	사회 복지 사업 보조	470,9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위치 : 서울시 10개구(공모 예정) ● 사업기간 : 2020.3.~2020.12. ● 사업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어통역사 인건비(371,000) - 농아인 소통지원 프로그램 운영 (100,000) - 사업수행주체 : 수어통역센터 - 추진방법 : 센터별 지원사업 공모실시 - 주요행사 : 농인가족 소통 교육 및 센터별 종합발표회
7	서울 민주 주의 위원 회	지역 공동 체담 당관	성평등 마을만들기	사무 관리비	70,0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위치 : 25개 자치구 ● 사업기간 : 2020.1.~2020.12. ● 사업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평등 홍보물 제작·배포(사무관리비 51,500) - 사업공모 운영비(사무관리비 18,500) - 성평등 소모임 지원, 교육(민간경상사업보조 142,500)
				민간 경상 사업 보조	142,500	
8	여성 가족 정책 실	여성 권의 담당 관	데이트폭력 예방	민간 경상 사업 보조	133,0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위치 : 미정 ● 사업기간 : 2020.1.~2020.12. ● 사업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데이트폭력 예방 및 성평등문화 확산을 위한 교육 및 프로그램운영 - 민간단체의 전문성을 활용하여 젠더의식 변화를 반영한 웹툰형 책자 및 영상콘텐츠를 제작·배포함으로 여성폭력예방에 대한 시민관심 제고
9	여성 가족 정책 실	여성 정책 담당 관	성평등한 미래도시 만들기를 위한 소모임 지원 사업	민간 경상 사업 보조	68,0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대상: 서울시 거주 및 활동 중인 청년 등 3명 이상의 모임 및 단체 ● 사업기간: 2020.1.~2020.12. ● 사업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평등 문화확산을 위한 청년 소모임 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 48,000) -청년을 위한 학습 지원(민간경상사업보조 10,000) -성평등 활동 공동체 간 네트워킹 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 10,000)
10	여성 가족 정책 실	여성 정책 담당 관	성평등문화 확산조성	민간 경상 사업 보조	85,0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기간 : 2020.1.~2020.12. ● 사업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초등학교 내 성평등 교육활동 실시 - 대상 : 초등(4학년), 참여학교 교직원 및 양육자 - 교육내용: 성평등, 젠더감수성, 성차별과 혐오, 미디어 속 성차별 재해석 등

- 한편, 방침서를 살펴보면, “청년지원사업 선정·평가 기준 개선 연구”는 현재 ‘사무관리비’로 편성하고 있으나, ‘연구용역비’로 편성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는바, 사전 학술용역 심의를 회피하기 위한 편법적인 편성은 아닌지 신중한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음.

서울특별시 청년지원사업 선정·평가 기준 개선 연구(선행 과제)

- 서울특별시 청년대상 지원사업의 선정·평가 기준 사례 연구(청년지원사업에 대한 만족도 현황 조사 실시)

〈청년지원사업 현황 및 만족도 조사〉

- 청년지원사업 현황
- 청년지원사업의 선정기준, 선발방식, 평가방식 현황
- 청년지원사업 참여자·탈락자 인터뷰
- 청년지원사업 만족도 조사

- 선정기준, 선발방식 및 평가기준 개선안 제시
- 연구는 청년 전문가 그룹에게 위탁 운영

- 또한, ‘사무관리비’로 3천1백만원의 ‘사업운영비’를 편성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산출기초가 없고, ‘사업운영비’를 ‘사무관리비’로 편성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 면밀한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음.

나. 청년 프로젝트 투자사업

- 지속가능하고 사회혁신과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프로젝트에 투자함으로써 민관의 사회적 협력관계를 통해 다양한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청년들의 창업과 고용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으로 2019년 예산(55억7천만원) 대비 0.5% 감액한 55억 4천만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음.

〈편성 예산〉

(단위 : 천원)

구 분	2019년		2020예산(안) (B)	증감 (B-A)	(B-A)*100/A
	본예산	최종예산 (A)			
계	(x-) 5,570,000	(x-) 5,570,000	(x-) 5,540,000	(x-) △30,000	(x-) △0.5
사무관리비	(x-) 420,000	(x-) 420,000	(x-) 540,000	(x-) 120,000	(x-) 28
민간경상사업보조	(x-) 5,150,000	(x-) 5,150,000	(x-) 5,000,000	(x-) △150,000	(x-) △2

〈세부 산출 기초〉

과목구분	2019년 본예산	2020년 예산(안)
사무관리비	○ 청년프로젝트 투자사업 운영 20,000,000 = 20,000천원	○ 청년프로젝트 투자사업 운영 홍보 등 70,000,000 = 70,000천원
	○ 세대균형 혁신프로젝트 운영 50,000,000 = 50,000천원	○ 세대균형 프로젝트 운영 50,000,000 = 50,000천원
	○ 청년프로젝트 투자 사업 기획관리 전문기관 운영 350,000,000 = 350,000천원	○ 청년프로젝트 투자 사업 기획관리 전문기관 운영 420,000,000 = 420,000천원
증감사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년프로젝트 투자사업 기획관리 전문기관 운영기간 증가(10→12개월)에 따른 증액 ○ 프로젝트 운영 홍보 등 50,000천원 증액 		
민간경상사업보조	○ 청년프로젝트 투자사업 지원 232,500,000*20개팀 = 4,650,000천원	○ 청년프로젝트 투자사업 지원 215,000,000*20개팀 = 4,300,000천원
	○ 세대균형 프로젝트 지원(12개팀) 500,000,000 = 500,000천원	○ 세대균형 프로젝트 지원 50,000,000*14개팀 = 700,000천원
	증감사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년프로젝트 투자사업 지원비 350,000천원 감액 ○ 미래대응과제에 대응하는 세대균형 프로젝트의 본격적인 추진을 위한 증액 		

- 동 사업은 2017년부터 공모절차를 거쳐 선정된 단체에게 2개년 동안 14개 단체에 보조금 80억원(최대 9억 9천 8백만원)을 지원했으며,
- 2019년부터 신규모델사업인 ‘세대균형 프로젝트사업’ 유형은 단년도 사업으로 진행중이며, ‘청년프로젝트투자사업’은 여전히 2개년도 사업으로 시행중임.
- 2020년 사업개요와 2018 정산내역과 2019년 집행실적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2019년 청년프로젝트 투자사업 현황〉

1. 청년프로젝트투자사업

	2019년 사업개요	2020년 사업개요
규모	50억2천만원	47억9천만원
사업내용	성장가능성이 높고 사회적가치가 높은 청년프로젝트에 투자하여 공공의 문제를 해결하고, 청년의 좋은 일자리를 창출	성장가능성이 높고 사회적가치가 높은 청년프로젝트에 투자하여 공공의 문제를 해결하고, 청년의 좋은 일자리를 창출
추진방식	1. 컨설팅주관 기관 운영 2. 청년프로젝트팀 선정 및 지원	1. 컨설팅 주관기관 운영 2. 청년프로젝트팀 지원 3. 민간투자유치 대회 운영

2. 세대균형프로젝트

	2019년 사업개요	2020년 사업개요
규모	5억원	7억원
사업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년이 주목하는 문제를 분석해 서울의 미래대응 과제 수립 ▪ ‘문제대응 프로젝트’를 공모, 지원해 미래대응과제 수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년이 주목하는 문제를 분석해 서울의 미래대응 과제 수립 ▪ ‘문제대응 프로젝트’를 공모, 지원해 미래대응과제 수행
추진방식	1. 프로젝트 공모 및 선정, 지원	1. 컨설팅 주관기관 운영 2. 프로젝트 공모 및 선정, 지원

〈2018년 청년프로젝트투자사업 예산집행 현황〉

(단위: 원)

선정법인(단체)	예산액	지출액	집행잔액	불인정액	집행잔액 반납액	이자 발생액	이자 반납액
세어하우스우주(주)외 1	411,849,000	392,574,672	19,274,328	-	19,274,320	40,680	40,680
(주)어반플레이	240,250,000	238,113,620	2,136,380	-	2,136,380	21,360	21,360
라솜외 1	456,645,510	435,100,762	21,544,748	375,000	21,919,740	38,750	38,750
(주)인라이튼	286,500,000	274,512,691	11,987,309	-	11,987,300	32,250	32,250
(주)트리플래닛	446,932,920	400,291,422	46,641,498	130,941	46,772,430	41,140	41,140
(주)엔피프틴	277,260,000	177,371,008	99,888,992	6,997,877	106,886,860	22,700	22,700
피치마켓	305,440,000	302,422,840	3,017,160	243,234	3,260,390	26,450	26,450
(주)에이치지이니셔티브	388,544,790	352,855,967	35,688,823	181,909	35,870,730	46,680	46,680
레이즈지엘에스(주)	440,126,260	387,193,684	52,932,576	-	52,932,570	42,150	42,150
(주)케이오에이	228,287,000	228,233,768	53,232	-	53,230	19,560	19,560
(주)마인드디자인	260,521,570	257,582,777	2,938,793	16,637	2,955,430	25,300	25,300
(주)프렌트립	657,805,000	612,331,098	45,473,902	861,487	46,335,380	79,400	79,400
(주)위누	374,013,520	365,931,536	8,081,984	714,350	8,796,330	35,040	35,040
(주)터치포굿	154,300,000	124,607,483	29,692,517	320,000	30,012,510	16,450	16,450
다음세대재단	512,198,000	393,682,998	118,537,802	22,800	118,537,802	49,752	49,752
합계	4,928,475,570	4,549,123,328	379,352,242	9,841,435	389,193,600	487,910	487,910

〈2019년 청년프로젝트 투자사업 예산집행현황〉

1) 청년프로젝트투자사업

(10월말 기준, 단위:원)

공모	선정법인(단체)	예산액	보조금 교부액	단체별 집행액
1차	주식회사칠리펀트	27,870,000	27,870,000	
	(주)위대한상사	234,500,000	160,100,000	
	주식회사방앗간컴퍼니	256,810,900	201,916,949	
	(주)로보트리	71,670,000	58,490,000	
	(주)유티인프라	283,130,000	219,050,000	
	주식회사 퍼플레이컴퍼니	105,500,000	58,500,000	
	(주)공공공간	120,200,000	69,840,000	
2차	주식회사 컴앤스데이 (케이앤에스컴퍼니외1)	146,000,000	110,000,000	
	우트 주식회사	103,740,000	51,870,000	
	(주)빈티지하우스	34,000,000	25,000,000	
	(주)학생독립만세	396,000,000	138,000,000	
	(주)인포그린	134,900,000	134,900,000	
	(주)엘오이코리아	157,902,496	60,300,000	
	(주)자락당	301,680,331	137,020,337	
	주식회사 트래쉬버스터즈 (저스트프로젝트외1)	240,128,332	240,128,330	
	주식회사 메디즘	153,870,000	100,250,000	
3차	45도컴퍼니 주식회사	88,270,000	88,270,000	
	주식회사 마이리얼짐	27,000,000	4,800,000	
	안티카(비영리)	149,790,000	149,790,000	
	와이즈레인 주식회사	49,999,000	16,666,600	
	협동조합 가치공유연구소	52,020,000	52,020,000	
합계		3,134,981,059	2,104,782,216	

2) 2019년 세대균형 프로젝트

(10월 말 기준, 단위:원)

유형	선정법인(단체)	보조금	보조금 교부액	단체별 집행액
유형1	(사)꿈과나눔	24,000,000	19,438,900	
	(사)한국장애인관광협회	20,000,000	20,000,000	
	(주)지노도예학교	30,000,000	30,000,000	
	(주)282박스	30,000,000	30,000,000	

	로컬엔터테인먼트협동조합	30,000,000	25,629,960	
	민달팽이유니온	29,830,936	26,039,006	
	아웃박스	30,000,000	30,000,000	
	최나현(엔터미러)	29,100,000	29,100,000	
유형2	다이애나랩	92,860,680	70,701,860	
	리슨투더시티	72,000,000	53,100,000	
	브랜드후드	29,684,000	26,956,400	
	스튜디오가타부타	57,000,000	53,100,000	
	합계	474,475,616	414,066,126	

- 2018년 결산 기준 동 사업의 집행잔액은 5억 6천 9백만원으로 불용률은 8.7%로 서울시 일반회계 전체 규모(2.1%)보다 상당히 높을 뿐만 아니라, 보조금을 교부받은 단체의 보조금 불인정액 및 집행잔액이 과도한 측면이 있다고 하겠으며,
- 2019년 보조사업의 경우 동 사업비가 매달 교부되나, 중간 정산 없이 12월에 일괄하여 정산하여 청년청은 연도 중에는 교부대비 집행실적을 알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하고 있는바, 이는 사업비에 대한 관리 부실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매달 사업비 교부시 중간 점검 등을 통해 보조금이 적절하게 집행되는지 여부 등에 대한 점검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또한, 2018회계연도 결산검사의견서에서 동 사업에 대해 제시한 문제점 및 시정권고 내용은 다음과 같으며, 뚜렷하고 가시적인 성과 창출이 미비한 사업임에도 2020년에도 2019년도와 동일한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임.

〈문제점〉

1) 청년프로젝트 1기 피보조 사업자 선정의 타당성

1기 피보조 사업자는 (주)엔피프틴 등 14개 업체임. 보조금 지원 성격이 업체가 아닌 혁신 프로젝트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라고 하나, 민간 업체에 대출

이 아닌 지원 성격의 자금이므로 해당 업체의 성장 가능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도 필요할 것임.

그러나 1기 사업 보조사업자의 최근 3년간 재무제표 등을 보면 기업의 성장가능성 차원에서 과연 지원 대상 업체의 선정이 적절하였는지 의문임.

2) 청년프로젝트 투자 2기 사업구조의 타당성

2기 청년프로젝트 투자사업은 기획관리기관 전문업체인 ‘다음세대재단&언더독스’가 서울시로부터 교부받은 보조금을 실제로 지원할 피보조기관에 재교부 하는 구조임. 이러한 구조로 ‘다음세대재단&언더독스’는 2기 지원 대상 프로젝트 16개 팀에 445백만원을 재교부하였음.

피보조 사업자가 제2의 피보조 사업자에게 보조금을 재교부하는 특이한 사업방식은, 서울시와 다음세대가 작성한 협약서 제23조, ‘보조사업수행자는 보조사업의 본질적 내용을 구성하지 아니하는 한도 내에서 시장의 사전승인을 받아 그 사무의 일부를 제3자에게 위탁하거나 용역할 수 있다’에 근거한 것으로 추정됨. 다만 협약서 내용처럼 다음세대가 제2의 보조사업 수행자에게 보조금을 재교부 함에 있어 시장의 사전승인을 득하였는지 등에 대해서는 별도 검토가 필요함.

3) 2019년도 예산 편성을 가정한 협약서 체결의 정당성

전술한 바처럼 청년정책담당관은 동 사업의 기획관리를 위해 다음세대와 총 58.9억원(사업기간: 협약일~2019.12.31.) 약정 협약서를 체결하였음. 그러나 그 날짜가 2018년 9월 20일로, 이때는 2019년 예산안이 전혀 확정된 시점이 아니었는바, 예산 배정 전 지출원인행위를 금지하는 예산의 기본원칙을 위배한 것으로 보임.

사업부서는 협약서에 ‘2019년 교부액의 경우 서울시 예산편성, 2018년 사업평가 및 제제에 따라 변경, 취소될 수 있다’고 명기했다고 하나, 이러한 방식으로 차년도 예산 편성을 가정하여 협약을 체결하는 행위가 정당화 될

수는 없다고 봄.

4) 청년프로젝트 투자 3기 사업 설계의 타당성

2기 사업계획서와 사업실적보고서를 비교 검토해보면, 2기 사업은 사실상 계획한 성과를 달성하지 못하고 종결되었음. 당초 기획·검증 단계를 거쳐 성장·지원 단계로 추진하고자 했으나, 어떠한 이유에서든 성장·지원 단계로 진입하지 못한 것은 명백한 사실임.

2기 사업 실패의 원인 분석과 진단이 제대로 이루어진 상태에서 3기 사업이 설계되고 추진되는 것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음.

5) 기획관리 업체에 대한 민간경상보조금 지원 타당성

다음세대의 2기 사업 기획관리 업무는 청년프로젝트 투자사업 직접 지원 대상이 아니라, 동 사업의 관리를 위한 운영 또는 위탁으로 보아야 하나 이를 실제 지원업체와 동일한 선상에서 민간보조금(307-02)으로 집행하였음.

사업부서의 이러한 사업 설계가 예산의 편성 목적과 용도를 명확히 구분하여 집행하는 것인지 의문임. 참고로 1기 및 3기 사업의 기획관리 업무는 사무관리비로 집행했거나 추진중임.

6) 기타사항

기획관리 수행기관 ‘다음세대재단&언더독스’ 컨소시엄에 함께 참여하고 있는 언더독스(주)는 벤처캐피탈 업체로, 일자리노동정책관에서 추진하는 민간경상보조사업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혁신형사업’의 피보조기관 자격으로 2018년 보조금 100백만원을 교부받은 바 있음. 서울시가 추진하는 혁신형 사업에 동일업체가 하나는 지원 대상 업체로, 하나는 지원업체를 관리하는 기관의 자격으로 보조사업을 수행하는 것은, 법적인 문제를 떠나 일반상식에 어긋남.

〈시정권고〉

전반적으로 동 사업이 서울시가 사업의 취지와 목적에 맞게 수행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었는지 의문임.

상기 [현황 및 문제점]에서 제기한 문제인식에 대해서는 소관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상세한 소명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특히 피보조사업자가 제2의 피보조사업자에게 보조금을 재교부하는 사업방식에 대해서는 예산 및 계약관리 부서에서 별도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한편, 상기 6)번에서 기술한 언더독스(주)의 사례 이외에도, 청년프로젝트 투자사업 피보조기관 중의 하나인 엔피프틴(2018년도 교부금 2.8억원)의 경우, 경제진흥본부에서 추진하는 위탁사업 ‘디지털 대장간’ (위탁금 360백만원)과 도시재생본부에서 추진하는 용역사업 ‘용산전자상가 운영’ (용역비 280백만원) 수행업체임.

법적인 문제를 떠나 제한된 예산범위 내에서 수많은 청년기업들에게 기회가 고루 공평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민간보조사업 지원업체 선정에 있어 다양하고 깊은 고려가 필요함.

- 동 사업은 2년 연속 지원 사업으로 성과가 미흡한 단체에는 다음연도 보조금을 삭감하거나 지급하지 않는다고 하나, 각 보조사업에 대한 성과 평가 등 결과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당해연도와 유사한 예산을 편성하는 등 의회의 예산심의권을 제약하고 있고,
- 2018년도에도 14개 보조사업자에게 지급하려던 교부금 차액으로 당초 의회가 의결하지 않은 “2018년 청년프로젝트 2기 투자사업을 위한 육성프로젝트팀 선정 사업”을 수행한 바도 있는 등 “예산의 목적외 사용 금지 원칙”에 전면적으로 배치되는 자의적인 사업 집행을 한바 있으며,
- 2019년도에도 청년청은 적정한 단체가 없어 단체 선정을 하지 못하였다는 사유 및 불용방지 목적으로 9월에 사업자를 추가로 선정하여 10월에 최초 보조금을 교부하는 등 불성실한 사업집행 행태를 보이고 있음.

○ 또한, 동 사업의 선정단체 및 추진 사업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으며,

□ 2019년 청년프로젝트투자사업 선정(21단체)

선정단체명	프로젝트요약
주식회사 칠리펀트	정치교육프로젝트와 정치참여프로젝트를 통해 올바른 정치문화형성에 기여
(주)위대한상사	①창업지원 : 창업활성화및공유창업문화구축 ②지역업자(소상공인)지원 : 점포폐점을감소 ③일자리창출 : 양질의시간제일자리, 정규직일자리창출 ④외식문화창출 : 점포공유를 통한 창업으로 높고 개저렴한외식문화창출 과제1. 서울지역내 취약계층주1)공유점포매칭창업및전환 과제2. 서울지역 공유점포상권분석 Map제작 및 Web고도화를 통한 창업 매칭 안정성 강화 과제3. 다양한 상권 및 점포에 적용 가능한 공유점포용 브랜드솔루션 개발
주식회사 방앗간컴퍼니	목표 : 도시와 농촌지역상생/도시의 건강한 먹거리의 빈부격차 해소 과제1. 오프라인 라이프스타일 브랜드강화 과제2. 팜투테이블 케이터링 강화 과제3. 지역 식재료 상품개발 과제4. 온라인 커머스 개발
(주)로보트리	저렴한교보재, 코딩교육으로의 확장성이 높은 교육콘텐츠를 개발을 통해 서비스 및 가치제공
(주)유티인프라	목표 : 키니케어플랫폼을 구축하여 서울시 임환자들이 암병원, 보건소를 통하여 체계적인 영양관리를 받을 수 있는 환경구축 과제1. 병원, 보건소용 스마트태블릿 교육관리 시스템구축 과제2. 홈케어용 키니케어3.0앱구축 과제3. 학습형HMR 과제4. 마케팅 및 기관(병원,보건소)제휴 과제5. 임산부 영양관리
주식회사 퍼플레이컴퍼니	목표 : 여성영화향유 기회확대를 통해 상평등문화를 확산하는데 앞서고 여성향년김투의 수익을 도모 과제1. 여성감독수의 증대를 위한 모바일앱 고도화 과제2. 관객확장을 위한 여성영화전문 온라인매거진제작 과제3. 자립기반미련을 위한 상평등한 행사기획 및 콘텐츠 제작
주식회사 컴앤스테이 (케이앤에스컴퍼니외1)	1. 온라인청년주택플랫폼 개발 및 운영과 동시에 오프라인에서 전속중개인조직을 구축, 온라인플랫폼과 오프라인공인중개사를 연결하여 매출 등록 검색 서비스부터 청년주택중개,입주관리까지 원스톱서비스 제공 2. 임대관리프로그램을 개발입주신청에서 계약서작성, 예약연장/퇴실여부확인, 청구서발행, 입금확인까지 반복되는 임대관리업무의 자동화 실현으로 관리의 효율성 제고 3. 입주자 전용앱을 통해 청구서 및 입금내역확인, AS신청, 1:1상담 등 고객편의성을 제고하고, 입주자소개, 입주자동아리 개설기능을 통해 입주자간 취향과 관심에 따라 자발적 교류지원 4. 지점에 상관 없이 청년주택입주자는 전지점공용공간사용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공간활용의 효율성 제고

우트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우트2.0개발(BM고도화포함) : 기존기구도참여할수있도록참여사용자범위확대/채팅솔루션변경/유저생성커뮤니티구조추가등커뮤니티구조피봇팅/동일커뮤니티내참여자별맞춤콘텐츠를공급하는UI/UX구현.수익창출을위한커머스/광고모델S/W개발및앱탑재 2. 사용자 확보 및 사용자 대상 로컬 광고 / 커머스 수익 창출 : 현대적 이웃관계를 원하는 서울시민들 참여유도, 2030 1인청년기구부터 시작해 기존기구로 점진적 확장하고 프로젝트 이후에도 자생적 성장이 가능할 수 있도록 수익창출(광고주,커머스모집등진행)
빈티지하우스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워터멜론 플랫폼 개발 2. 워터멜론 플랫폼 활성화
학생독립만세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소득 공유 후불제 방식의 취업교육 서비스 2. 소득 공유 납부관리 콘솔개발
인포그린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접근성 강화 : 네이티브앱(쇼핑몰연동)개발 2. 어린이집 대상 친환경 제품 납품 3. 영상 콘텐츠 제작 4. 제품 개발 컨설팅 및 PB 상품개발
공공공간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디자인상품을 베이스로, 서울의 청년창작자들이 제조역량(디자인, 생산관리,CS관리등)이 없더라도 쉽게 본인의 창작물로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윈스톱 온라인 제조 서비스 구축을 통해 청년창작자들에게 지속적인 수익창출의 기회제공 2. 선주문을 통해 실제수요를 파악하여 실수요수 제작을 통해 재고관리비용을 줄이는 생산과 베이스상품(모듈) 기반의 후기공으로 스마트팩토리 생산시스템구축(메이커스페이스) 3. 제조과정에서 도심소규모 제조업체들과의 협력생산을 통해 침체기에 있는 도심제조업에 새로운활력을 불어 넣으며 지속적인 일거리 창출에 기여
엘오이코리아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표준화(공간디자인/운영체계/멤버쉽등)후, 2,3호점 확장 2. ProjectSchool 실행(청소년문화분야) 3. LOE아카데미실행(청소년교육분야)
자락당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공간을 차지하는 물건 마켓인유창고에 보관 2. 그중, 공유를 원하는 품목은 대여&수익 세어 3. 유희지원 공유로 신규기치창출 및 사회적 비용절감 4. 청년의 추가 수입원 제공 5. 월정액/품목당 과금으로 다양한 제품 사용 가능 6. 청년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 <p>과제1. 복합공간 1호점 개점</p> <p>과제2. 공유창고 베타서비스 시작 및 온/오프라인 물류 연계서비스 개발 및 운영</p> <p>과제3. Back-up물류창고 구축 및 시스템 고도화</p>
주식회사 트래쉬버스터즈 (저스트프로젝트외1)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식기(다회용기) 브랜드 모듈 개발 및 렌탈시스템 안정화 2. 브랜드홍보 및 영업체계구축
메디쥬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오늘의할인 IOS앱개발 2. 오늘의할인 웹서비스 개발 3. 오늘의할인 서비스 활성화
45도컴퍼니 주식회사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우울증 및 무기력증을 겪고 있는 청년들에게 일상의 행복과 만족도 개선 2. 오프라인 소셜 모임서비스 제공을 통해 온라인중심의 인적네트워크 속 관계단절 및 외로움을 느끼는 청년들의 문제 해결

	3. SNS 및 영상홍보 채널운영을 통한, 청년정책 및 제도적 혜택 밖에 있는 사회초년생 및 직장인 청년들의 프로젝트 참여유도 과제1. 오프라인모임의확대 과제2. '해봄인증' 시스템개선 과제3. 온라인프로모션수행 과제4. 오프라인프로모션수행
주식회사 마이리얼집	고급PT센터에서 제공하는 근골격검사와 맞춤형운동을 집에서 스마트폰으로 경제적인가격에 제공/ 이를 통해 더 많은 청년이 고급 운동과정을 경험
인타카 (비영리)	청년정신장애인들의 문화예술창작활동을 통한 사회적,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고 미디어캠페인을 통해 사회적인식을 개선 과제1) 정신질환 및 정신장애당사자의 창작지원 과제2) 정신질환 및 정신장애당사자의 네트워크지원 과제3) 정신질환 및 정신장애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
와이즈레인 주식회사	공시 낙방생들에게 체계적인 심리/진로상담과 실질적인 직무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여 그들이 사회에 잘 복귀할 수 있도록 자신감을 회복하고 경제적으로 독립할 수 있는 역량을 키움
협동조합 가치공유연구소	개별 활동이나 기획 등을 공유하는 온오프라인콘텐츠플랫폼과 채용플랫폼 구현 과제1. 활동공유플랫폼 - 나의활동을 촬영하여 온라인에 게재 - 콘텐츠시청을 통한 신규회원 유치 - 기존에 청년활동 발굴지원사업 및 가치공유학교를 통해 약1,000여개 콘텐츠 확보 - 회원들이 자신의 콘텐츠를 만들며 재생산 - 이를 오프라인에서 활동 및 모임으로 진행하며 지속적으로 청년유저 유입 2. 채용플랫폼운영 - 유저들에게 사회적경제 기업들의 구인정보 제공 - 사회적경제기업들에게(예비) 구직자 정보 리포팅 - 사회적경제 교육

세대균형 프로젝트 선정 단체(12개팀 유형1: 8개, 유형2: 4개)7)

유형	단체명	프로젝트 요약 (10대미래대응과제)
유형1	(사)꿈과나눔	각 분야별 청년 사회복지종사자 관계망 구축을 통해 사회복지분야의 문제점에 대한 인식 공유 및 대안 마련 (건강한 관계망)
	(사)한국장애인민공협회	저상버스 탑승 캠페인 등을 통해 장애인, 교통약자가 함께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교통문화 정착 (장애교통환경)
	(주)지노도예학교	청년장애인 예술가를 발굴 육성하는 사업 (다양성 존중)

7) 지원분야 <유형1>, <유형2>는 프로젝트 사업규모에 맞춰 적절히 지원할 수 있도록 분리한 것임 (사업별 심사기준, 제출서류의 차이없음). 자부담차이 존재 (유형1 : 자부담 x / 유형2 : 총사업비의 5% 자부담 의무배정)

	282Books	상대적 소외당사자를 대상으로 심리치유 워크숍, 낭독극 진행. 감정노동자의 이야기를 도심 곳곳에 작품으로 전시 (다양성 존중)
	로컬엔터테인먼트 협동조합	지역, 마을을 중심으로 쓰레기에 대한 인식개선 (환경의 지속가능성)
	민탈팽이유니온	등록임대주택 알리기 및 세입자 권리찾기 캠페인 등 진행 (임대차문화)
	이웃박스	초등학교 선생님들의 젠더교육단체. 학생, 학부모를 대상으로 성평등페스티벌 등을 통해 성인지 감수성 향상 (다양성 존중)
	엔터미러	다양한 형태의 가족을 선택해도 '별일없이 사는' 사회를 위한 당사자 인터뷰 및 생활동반자법 제정을 위한 활동 (다양한 형태의 '가족')
유형2	다이애나랩	장애인, 소수자들이 자유롭고 편안하게 방문할 수 있는 베리어프리한 공간조성 및 인권교육을 통해 차별없는 가게 조성 (다양성 존중)
	리슨투더시티	장애인을 포괄하여 서울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난에 대응할 수 있는 교육·워크숍 개발 (다양성 존중)
	브랜드후드	자신의 생각과 고민, 전문지식을 대중에게 표현하고 말하는 과정을 통해 지식 및 고민 공유 (공교육, 대학교육)
	스튜디오 가타부타	이주청년여성에 대한 한국사회의 다양한 선입견을 해소하는 다큐멘터리 제작 및 전시 진행 (다양성 존중)

- 2019년에 처음 실시한 세대균형 프로젝트의 경우 “대표자가 청년(만 19~39세)인 서울시 소재 법인, 단체 또는 심지어 개인을 대상으로 3천만원에서 1억원까지의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공모주제와 사업비 구성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공모주제 : 10대 미래대응과제 (중 택1)

10대 과제	부연설명
다양한 형태의 '가족'을 편하게 선택할 수 있는 사회 만들기	가족의 유형이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회적 인식과 제도는 아직 '4인가족'을 중심으로 형성되어있습니다. 다양한 모습의 가족을 원하는 시민의 선택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해서 다양한 삶을 원하는 요구에 대응합니다.
약자에 대한 차별을 줄이고 다양성 존중하는 문화 만들기	사회적 약자·소수자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개선하거나 제도적 변화를 촉구합니다. 이를 통해 약자, 소수자가 소외당하지 않고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는 미래로 더 빠르게 이행할 수 있도록 합니다.
소모적인 사회적 갈등	세대·성별·계층 등이 다른 집단 간의 소모적인 갈등을 완화합니다.

을 즐기거나 생산적으로 바꾸기	또는 생산적인 갈등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유도합니다. 갈등의 당사자나 그 밖의 시민에게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하고 설득합니다.
직장인의 인권을 존중하는 합리적인 직장 늘리기	직장인이 존중받으면서 합리적인 문화 속에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갑니다. 직장 내 괴롭힘, 부당한 처우, 비인격적인 대우가 없고 워라밸이 실현되는 '좋은 일자리'가 많아지도록 합니다.
청년이 쉽게 사회 참여에 나설 수 있는 환경 만들기	청년의 일상적인 고민이 개인 안에 머무르지 않고 다양한 방법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합니다. 사회적으로 중요한 의사결정에 청년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합니다.
보다 실효성 있는 공교육, 대학교육 만들기	불필요한 경쟁을 줄이고 실효성 있는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교육환경을 만듭니다. 부담은 가능한 낮추고, 개인이 미래를 설계하는데 실질적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교육을 기대합니다.

프로젝트 추진 사업비 지원

- 심사결과에 따라 프로젝트 사업비 조정 및 지원

※**유형1 : 최대 30백만원 이내 / 유형2 : 최대 1억원 이내**

- **비목별 사업비 구성은 인건비, 사업진행비, 홍보비로 구분 편성**

— < 사업비 구성 > —

- ◆ 인건비 : 프로젝트 수행을 위한 강사수당, 회의참석비, 자문비, 단순인건비, 신규채용한 프로젝트 전담인력 인건비 등
- ◆ 사업진행비 : 프로젝트 수행관련 제반비용
- ◆ 홍보비 : 영상, 책자 및 콘텐츠 제작 등
- ◆ 사업비 구성시 유의사항
 - 자부담은 총 사업비의 자부담률(5%) 이상을 포함 작성(유형2에 해당)
 - 부가가치세는 사업비 구성에서 제외

- 동 사업의 사업비 구성 내역을 살펴보면,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인건비를 지원할 수 없음에도 사업수행을 위해 신규채용한 인력을 지원한다는 명목으로 민간단체의 인건비, 운영비를 지원하는 것은 편법적인 보조금 사용을 조장하고 방관하는 것으로 심지어 단체의 자부담도 없는 사업 유형도 있는 실정임.

- 이러한 공모사업 추진을 언제까지 지속하려는 것인지에 대한 검토와 함께 소수의 민간단체 등에 최대 1억원까지 지원하고 있으나, 동 사업의 성과가 일반청년과 시민에게 무엇으로 돌아갈 수 있는지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음.

- 특히, 동 사업은 대표자가 청년(만19세~39세이하)인 민간단체를 지원한다고 하나, 오히려 다른 민간단체에 역차별적 요소는 없는지 면밀히 살펴보아야 할 것이며, 동 사업은 서울민주주의위원회의 “공익활동지원사업”과 사업 내용의 차별성을 찾을 수 없을 만큼 중복되는 사업으로 보이는바, 동 사업의 취지 및 목적, 사업집행에 따른 성과에 대하여 면밀한 분석이 요망된다고 하겠음.
- 종합적으로 살펴볼 때, 동 사업은 2017년 신규로 추진한 사업으로, ‘민간 경상사업보조’를 통해서 청년들의 고용을 늘리려는 좋은 취지의 사업임에도 보조금으로 인건비 지원이라는 지속적인 논란과 특정단체 지원으로 사업 성격의 변질, 한 기관에 10억원 가까운 보조금을 지원하면서도 사업의 성과 부실 등이 제기되고 있는바, 전면적인 재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음.
- 특히, 새로 신설된 세대균형 프로젝트 사업의 선정단체를 살펴보면, 그 대표나 임원이 서울시에 과잉 참여하는 단체도 선정되어 있는 바, 나눠먹기식 보조금 사업이라는 오명과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8)위배 여부에 대한 논란을 벗을 수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11조(공무수행사인의 공무 수행과 관련된 행위제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공무수행사인"이라 한다)의 공무 수행에 관하여는 제5조부터 제9조까지를 준용한다.

1.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

8) 서울시에는 각종 위원회가 있고 소속 위원들은 서약서 등을 작성하고 “위원회 직무와 직접 관련된 연구·용역·공사·계약 등 이득을 취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는바, 위원회 위원들이 서울시 사업 등을 수탁할 경우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배 여부에 대한 면밀한 사전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겠음.

종 위원회의 위원 중 공직자가 아닌 위원

2. 법령에 따라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
3. 공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민간부문에서 공공기관에 파견 나온 사람
4. 법령에 따라 공무상 심의·평가 등을 하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

② 제1항에 따라 공무수행사인에 대하여 제5조부터 제9조까지를 준용하는 경우 "공직자 등"은 "공무수행사인"으로 보고, "소속기관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로 본다.

1. 제1항제1호에 따른 위원회의 위원: 그 위원회가 설치된 공공기관의 장
2. 제1항제2호에 따른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 감독기관 또는 권한을 위임하거나 위탁한 공공기관의 장
3. 제1항제3호에 따른 사람: 파견을 받은 공공기관의 장
4. 제1항제4호에 따른 개인 또는 법인·단체: 해당 공무를 제공받는 공공기관의 장

〈서약서 양식〉

위원 위촉 서약서 (표준안)

직위 : ○○○○위원회 위원(장)

성명 : ○ ○ ○

상기 본인은 ○○○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아래 사항을 위반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위원(장) 해촉 및 관련 법령에 따른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1. 위원회 직무 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비밀 준수

- 특히, 이미 각 기관별 평균 10억원 가까운 보조금이 교부되었으나, 교부 받은 이후 다음연도에 동 사업을 유지하지 않는 단체도 속출하고 있으며, 청년 고용이 지속적으로 유지되는지 여부에 대한 분석이나 성과에 대한 관리는 부실하고 당해연도 보조금 교부와 관리에만 급급한 측면이 있는 것은 아닌지 신중한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음.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와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32조에 따르면 보조사업의 존속기간은 3년 이내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지속 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3년마다 유지 필요성에 대해 심의를 거쳐 평가하도록 하고 있는바, 동 사업에 대한 보조금을 언제까지 지원할 것인지에 대한 신중하고 정책적인 판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보조사업의 존속기간과 연장평가)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조사업을 제외한 **보조사업의 존속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존속기간이 만료되는 보조사업에 대하여 실효성 및 재정지원의 필요성을 평가**하여 3년 이내의 범위에서 해당 보조사업의 존속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존속기간이 연장된 보조사업에 대해서도 또한 같다.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평가를 실시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사업평가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④ 기획재정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보조사업에 대한 평가 결과를 「국가재정법」 제33조에 따른 예산안과 함께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32조(성과평가) ① 시장은 법 제32조의7 및 법 시행령 제37조의4에 따라 국고보조사업을 제외한 지방보조사업에 대하여 매년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평가결과를 예산편성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보조사업 지속 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3년마다 유지 필요성에 대해 제11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평가를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심의결과에 따라 보조사업으로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보조사업의 효과가 미흡한 사업에 대하여는 보조금의 예산을 계상하지 아니하거나 전년도 교부한 보조금보다 감하여 다음연도 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평가의 시기·대상·방법 및 실무평가반의 구성·운영 등을 포함하는 평가계획의 수립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다. 서울 청년수당

- 동 사업은 미취업청년의 사회활동 촉진 및 자립기회 제공을 위한 청년 활동 지원금을 지원하려는 것으로, 전년 대비 401.4% 증액한 904억 원의 예산(전년 180억원 대비 401.4% 증액)을 편성하고 있음.

〈편성 예산〉

(단위 : 천원)

구 분	2019년		2020예산(안) (B)	증감 (B-A)	(B-A)*100/A
	본예산	최종예산 (A)			
계	(x-) 15,030,000	(x-) 18,030,000	(x-) 90,400,000	(x-) 72,370,000	(x-) 401.4
사무관리비	(x-) 30,000	(x-) 30,000	(x-) 400,000	(x-) 370,000	(x-) 1,233
사회보장적 수혜금	(x-) 0	(x-) 0	(x-) 90,000,000	(x-) 90,000,000	(x-) 0
기타보상금	(x-) 15,000,000	(x-) 18,000,000	(x-) 0	(x-) △18,000,000	(x-) △100

〈세부 산출 기초〉

과목구분	2019년 본예산	2020년 예산(안)
사무관리비	○ 위원회 운영 20,000,000원 = 20,000천원	○ 콜센터 운영 300,000,000 = 300,000천원
	○ 청년수당 홍보 포스터 제작 등 10,000,000원 = 10,000천원	○ 모집신청 홍보 및 실태조사 등 50,000,000 = 50,000천원
		○ 심사위원회 운영 50,000,000 = 50,000천원
	증감사유	
	○ 사업대상 확대에 따른 홍보 및 응대 시스템 구축	

과목구분	2019년 본예산	2020년 예산(안)
사회보장적수혜금		○ 청년수당 지급 30,000명*500,000원*6개월 = 90,000,000천원
		증감사유
	○ 사업수요에 맞춰 사업대상 확대	

- 동 사업은 주민등록상 서울시에 거주하는 만 19세~34세 청년을 대상 (2018년도에는 만19~29세)으로 월 50만원의 활동비를 6개월간 지원 하려는 것으로,
- 무한한 발전가능성을 지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급변하는 정치·경제·사회·문화적 환경 속에서 심각한 취업난과 주거문제 등의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는 청년에 대한 지원이 가능하다는 차원에서는 일정 부분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고 하겠음.
- 동 사업은 2019년도부터 고용노동부가 “구직활동지원사업” 추진함에 따라 서울시 청년 수당과의 중복 수령 등을 차단하기 위해 대상자 자격 등 제도를 수정 한바 있음.

〈서울시 청년 수당〉

2018년	2019년	2020년
○ 지원대상 : 공고일 기준 서울시 거주 <u>만19세~29세의 미취업청년 7,000명</u> - 자격 : 졸업자·졸업 예정 미취업 청년	○ 지원대상 : 공고일 기준 서울시 거주 <u>만19세~34세의 미취업청년 2019년 5,000명</u> ⇒ 2020년 3만명 - 자격 : 졸업후 2년 이상 미취업 청년	
○ 지원내용 - (금 전) 매월 50만원× 최대6개월간 지급 - (비금전) 취·창업 포함한 다양한 사회참여 활동 지원, 커뮤니티 지원, 정보제공 및 현장 연계	○ 지원내용 - (금 전) 매월 50만원× 최대6개월간 지급 - (비금전) 취·창업 포함한 다양한 사회참여 활동 지원, 커뮤니티 지원, 정보제공 및 현장 연계	
○ 총사업비 : 210억원 (500천원×6개월×7,000명), 시비100%	○ 총사업비 : 900억원 (500천원×6개월×3만명), 시비100%	

〈서울시 청년 수당과 고용노동부 청년구직활동지원금 비교〉

	고용노동부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서울시 청년수당
지원대상	졸업·중퇴 후 2년 이내 만18~34세 미취업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청년	서울시에 거주하는 졸업후 2년 경 과한 만19~34세 미취업 기준중 위소득 150% 이하 청년
규모(2019)	8만명	6,500명
예산(2019)	1582억원	180억원
모집시기	매월 모집	상·하반기(2회)
신청방식	온라인 신청(온라인청년센터) *youthcenter.go.kr	온라인 신청(서울청년포털) *youth.seoul.go.kr
지원내용	월 50만원×6개월	월 50만원×6개월
지급방식	포인트지급(*클린카드)	체크카드(*클린카드)
전달체계	고용노동부 지방고용관(고용센터)	서울시 청년청 서울시 청년활동지원센터
프로그램 지원	고용센터 및 자치단체의 다양한 취업 지원 프로그램 안내	청년활력프로그램 운영 (마음건강 프로그램, 관계망 지원사업, 진로탐색 프로그램, 일경험 프로그램)

- 다만,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된바와 같이 첫째, 현금 인출
사용 문제와 증빙 불성실 등으로 청년수당의 취지와 목적에 맞게
청년수당이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한 논란이 있었으며,
- 대학생이 청년수당을 수령하는 문제, 최종학력 졸업 후 2년이 경과한
미취업자 선별 미흡 문제, 기초수급 청년의 청년수당 자격미달 등의
문제가 제기된바, 청년수당에 대한 관리 부실로 인한 언론⁹⁾(취준생도 못

9) CBS노컷뉴스(2019.7.22.), 취준생도 못 받는 청년수당 대학생이? 줄줄새는 서울시 복지
<https://www.nocutnews.co.kr/news/5185703>

CBS노컷뉴스(2019.9.20.) 청년수당 영터리 심사해놓고 도로 뺏으라는 서울시
<https://www.nocutnews.co.kr/news/5215052>

프레스리안(2019.11.21.)청년수당, 가난하면 못 받는다고?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가난한 사람 차별하는
복지정책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no=264439>

조선일보(2019.10.28.)취업하라고 준 청년수당 300만원, 물품구매, 식비에 74% 썼다

https://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10/28/2019102801541.html?utm_source=naver&ut

받는 청년수당 대학생이? 줄줄새는 서울시 복지, 청년수당 영터리 심사해놓고 도로 벨 으라는 서울시, 청년수당, 가난하면 못 받는다고?, 취업하라고 준 청년수당 300만원, 물품구매,식비에 74% 썼다)과 서울시민의 비판을 받는 일이 없도록 충실한 사업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둘째, 수당 수령 2개월까지는 활동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않도록 하고 청년수당을 수령한 3개월째부터 활동결과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어 수당 수령 2개월까지 부당 사용 현황이 많을 것으로 보고 있는바, 활동결과보고서를 첫 달부터 작성하도록 개선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 또한, 활동결과보고서를 미제출한 경우 청년수당 지원을 중단하고 있으나, 수당 중단만이 아닌 이미 지급한 수당을 환수하는 등 동 사업을 보다 정교하게 설계하여 청년들에게 보다 유익하고 혈세를 내는 시민들에게도 청년수당 정책의 수용성을 더욱 높일 수 있도록 하는 청년청의 전향적인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음.

〈청년수당 지급중단 사유별 현황〉

연 도	지급자수	지급중지 인원					
		합계	취·창업	이사	자진포기 (중복사업참여)	자기활동기록서 미제출	기타
2016년	2,831명	-	-	-	-	-	-
2017년	4,909명	479	206	5	33	235	-
2018년	7,315명	996	651	54	33	258	-
2019.10월	6,530명	337	200	23	31	73	10
합 계	26,785명	1,812	1,057	82	97	566	10

- 셋째, 서울시의회에서 주최한 “2020년도 서울시·교육청 예산안 분석 토론회(2109.11.20.)”에서 사업의 성과나 효과가 불분명하거나 검증되지 않았음에도 청년수당 예산을 대규모로 확대하는 것에 대한 우려도 있는바, 대규모 예산이 투자되는 동 사업 집행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음.

〈2020년도 서울시·교육청 예산안 분석 토론회〉

3) 획기적 청년지원

○ 청년의 사회출발을 지원하기 위해 4,977억원을 편성하였는데 이 중 서울 청년수당에 904억원을 편성(15,030백만원→90,400백만원, 증75,370백만원). 그런데 청년수당의 경우, 사업취지나 목적을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아니나 그 성과나 효과가 불분명하거나 검증되지 않았음에도 기본소득의 성격을 띤 예산을 대규모로 편성한바 예산편성의 적정성에 대한 점검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서울 청년수당 사업은 2020년부터 만 19~34세의 서울 거주자 중 졸업 후 2년이 지난미취업 청년(소득 요건 : 중위소득 150% 미만)이라는 기본요건이 충족되는 청년에게 1인당 300만원(50만원×6개월)을 생애 1회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0년에는 2019년6,500명에서 3만명으로 지급대상을 확대하여) 2019년 150억원 대비 754억원 증가한 904억원을 편성하였는데, 증가액의 비중이 청년의 삶의 질 획기적 개선 정책사업 증가액 936억 38백만원의 80.5%를 차지할 정도로 예산증가 규모가 큼. 이 사업의 경우, 청년수당 자체에 대한 찬반의견이 있고, 서울시가 기존 청년수당 사업의 성과나 효과를 바탕으로 사업을 확대 추진하였다고는 하나 외부의 객관적인 성과평가 결과는 없으며,

2019년과 달리 대상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청년수당이 기본소득의 성격을 띠게 되었는데 현재 기본소득 정책의 효과나 성과에 대해서 의견이 분분한 만큼 사업을 확대 시행하는 것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보이며, 한편으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만큼 청년수당 사업추진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존의 신청 및 관리절차의 제도보완이 우선적으로 필요할 것으로 보임.

- 넷째, 청년청은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 및 심의 전인 2019년 10월 24일에 보도자료(서울시 3년간 10만명¹⁰⁾에 청년수당.. 필요한 청년 모두

10) 2020년 지급대상 3만명은 만19세~34세 서울시 주민등록 인구에서 취업자, 대학생, 입영자, 기지급자 수를 뺀 잠재적 사업대상자수 중 수당 신청률(70%)을 감안하여 산정한 대상인원을 사업계획 3년으로 나누어 추산한 것임.

에 생애 1회)를 배포함으로써 마치 사업을 기정사실화 하는 등 서울시의회의 예산 심사권을 경시하고 훼손한바, 이러한 행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는 청년청의 주의가 요망된다고 하겠음.

라. 서울시 청년허브 운영

- 동 사업은 청년 커뮤니티 및 프로젝트 등 청년활동지원과 청년활동 생태계 구축을 위해 서울시 청년허브를 운영하려는 것으로, 31억 2천 7백만원(전년예산 대비 4.6% 증액)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음.

<편성 예산>

(단위 : 천원)

구 분	2019년		2020예산(안) (B)	증감 (B-A)	(B-A)*100/A
	본예산	최종예산 (A)			
계	(x-) 2,989,850	(x-) 2,989,850	(x-) 3,127,620	(x-) 137,770	(x-) 4.6
민간위탁금	(x-) 2,989,850	(x-) 2,989,850	(x-) 3,127,620	(x-) 137,770	(x-) 4.6

<세부 산출 기초>

(단위 : 천원)

목 록	2019년	2020년 예산(안)	증감액	증감사유
총예산	2,989,850	3,127,620	137,770	
인건비(25명)	1,348,850	1,386,620	37,770	2.8% 증액
기본급	774,372	796,054	21,682	
제수당 등	374,310	384,790	10,480	
퇴직적립금	90,986	93,533	2,547	
4대 보험료	109,182	112,243	3,061	
운영비	351,000	351,000	0	
일반운영비	248,519	248,519	0	
여비	22,784	22,784	0	
업무추진비	9,600	9,600	0	
시설비	70,097	70,097	0	
사업비	1,290,000	1,390,000	100,000	
지속가능한 서울을 위한	200,000	200,000	0	

목	목	2019년	2020년 예산(안)	증감액	증감사유
총예산		2,989,850	3,127,620	137,770	
청년정책 개발 및 생태계 구축					
	N개의 공론장	100,000	100,000	0	
	정책 및 활동연구	100,000	100,000	0	
실험과 시도를 통한 청년생산활동 투자		740,000	810,000	70,000	
	청년활동지원	660,000	730,000	70,000	
	청년커뮤니티 지원	379,600	390,000	10,400	활동내용 공유를 위한 참여 기록물 발간
	청년직업실험실 지원	240,400	300,000	59,600	신청이 매년 증가함에 따라 선정 지원을 27개팀 → 38 개팀으로 확대하고, 멘토링 등 컨설팅 및 교육프로그램을 37 → 54회 진행 등
	청년프로젝트 지원	40,000	40,000	0	
	청년공간지원	80,000	80,000	0	
세대와 지역을 연결하는 협력을 통한 청년자산마련		350,000	380,000	30,000	
	국내외 협력사업	170,000	200,000	30,0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시아 청년 연구활동가 교류·협력 플랫폼’ 연구활 동 역량강화 프로그램 확 대(10,000) • ‘국내지역협력프로젝트(별의별 아주)’ 4개지역/40명 → 4개지역 /60명 및 컨설팅 지역 현장 프로그램 확대(20,000)
	사회적 자원 연계	100,000	100,000	0	
	홍보 및 아카이빙	80,000	80,000	0	

- 주요 사업을 살펴보면, N개의 공론장(1억원), 정책 및 활동연구(1억원), 청년커뮤니티 지원(3억9천만원), 국내외 협력사업(2억원), 청년활동지원(7억3천만원) 등이며, 현재 학교법인 연세대학교에서 청년허브를 재위탁 받아 수탁(2018.1.1.~2020.12.31.)하고 있음.
- 청년허브의 2020년 예산 증액 사유 중 하나로 국내외 협력사업 중 ‘아시아 청년 연구활동가 교류·협력 플랫폼’의 연구활동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확대하기 위한 것으로 1억원의 민간위탁금을 증액하고 있으나, 청년허브의 “국내외 협력사업”은

특별한 성과는 없고 극소수청년들에게만 특혜로 돌아가는 사업임에도 예산 규모가 크고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었음에도 추가적인 증액이 필요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음.

- 청년허브는 지난 행정사무 감사시 청년허브 퇴사자 과도, 「자산 및 물품취득비」 사용 부적정, 민간위탁기관 자체 자산으로 관리 부적정 등의 문제가 지적된바 있으며, 감사위원회의 청년청 특정감사 결과(2019.5.) 신분상 조치를 포함하여 총 23건의 지적사항¹¹⁾이 적발되었고 기관경고 처분이 있었음.
- 또한, 청년허브의 연도별 해외 출장 내역을 살펴보면, 근거 없이 민간인의 출장 경비를 지원하고 있는바, 민간인 국외출장은 법령에 근거가 없는 경우 기부행위¹²⁾에 해당할 수 있음에도 매년 민간인을 동반한 해외출장을 추진하고 있음.

11)

□ 지적사항 총괄표

(단위 : 건, 천원, 명)

합 계			변상 (금액)	징계 (인원)	시정(금액)				주의 (인원)	개선	권고	통보	고발 (인원)	모범 사례 (인원)
총건수	신분상 조치인원	재정상 조치금액			소계	추징 (회수)	감액	기타						
23	4	0	0 (0)	0 (0)	1 (0)			1 (0)	15 (4)	0	0	7	0 (0)	0 (0)

※ 서울특별시청년허브에 대하여 기관경고 처분

12) 「공직선거법」

제112조(기부행위의 정의 등) ①이 법에서 "기부행위"라 함은 당해 선거구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및 선거구민의 모임이나 행사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대하여 금전·물품 기타 재산상 이익의 제공, 이익제공의 의사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04. 3. 12.>

1. 삭제 <2004. 3. 12.>
2. 삭제 <2004. 3. 12.>
3. 삭제 <2004. 3. 12.>
4. 삭제 <2004. 3. 12.>
5. 삭제 <2004. 3. 12.>
6. 삭제 <2004. 3. 12.>
7. 삭제 <2004. 3. 12.>
8. 삭제 <2004. 3. 12.>
9. 삭제 <2004. 3. 12.>

10. 삭제 <2004. 3. 12.>

11. 삭제 <2004. 3. 12.>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04. 3. 12., 2005. 8. 4., 2008. 2. 29., 2010. 1. 25., 2013. 8. 13., 2017. 3. 9.>

1. 통상적인 정당활동과 관련한 행위

가. 정당이 각급당부에 당해 당부의 운영경비를 지원하거나 유급사무직원에게 보수를 지급하는 행위
나. 정당의 당헌·당규 기타 정당의 내부규약에 의하여 정당의 당원이 당비 기타 부담금을 납부하는 행위

다. 정당이 소속 국회의원, 이 법에 따른 공직선거의 후보자·예비후보자에게 정치자금을 지원하는 행위

라. 제140조제1항에 따른 창당대회 등과 제141조제2항에 따른 당원집회 및 당원교육, 그 밖에 소속 당원만을 대상으로 하는 당원집회에서 참석당원 등에게 정당의 경비로 교재, 그 밖에 정당의 홍보인쇄물, 짠 값의 정당의 배지 또는 상징마스크트나 통상적인 범위에서 차·커피 등 음료(주류는 제외한다)를 제공하는 행위

마. 통상적인 범위안에서 선거사무소·선거연락소 또는 정당의 사무소를 방문하는 자에게 다과·떡·김밥·음료(주류는 제외한다) 등 다과류의 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

바. 중앙당의 대표자가 참석하는 당직자회의(구·시·군단위 이상의 지역책임자급 간부와 시·도수의 10배수에 상당하는 상위직의 간부가 참석하는 회의를 말한다) 또는 시·도당의 대표자가 참석하는 당직자회의(읍·면·동단위 이상의 지역책임자급 간부와 관할 구·시·군의 수에 상당하는 상위직의 간부가 참석하는 회의를 말한다)에 참석한 당직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식사류의 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

사. 정당이 소속 유급사무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교육·연수에 참석한 유급사무직원에게 정당의 경비로 숙식·교통편의 또는 실비의 여비를 제공하는 행위

아. 정당의 대표자가 소속 당원만을 대상으로 개최하는 신년회·송년회에 참석한 사람에게 정당의 경비로 통상적인 범위에서 다과류의 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

자. 정당이 그 명의로 재해구호·장애인돕기·농촌일손돕기 등 대민 자원봉사활동을 하거나 그 자원봉사활동에 참석한 당원에게 정당의 경비로 교통편의(여비는 제외한다)와 통상적인 범위에서 식사류의 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

차. 정당의 대표자가 개최하는 정당의 정책개발을 위한 간담회·토론회에 참석한 직능·사회단체의 대표자, 주제발표자, 토론자 등에게 정당의 경비로 식사류의 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

카. 정당의 대표자가 개최하는 정당의 각종 행사에서 모범·우수당원에게 정당의 경비로 상장과 통상적인 부상을 수여하는 행위

타. 제57조의5제1항 단서에 따른 의례적인 행위

파. 정당의 대표자가 주관하는 당무에 관한 회의에서 참석한 각급 당부의 대표자·책임자 또는 유급당직자에게 정당의 경비로 식사류의 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

하. 정당의 중앙당의 대표자가 당무과약 및 지역여론을 수렴하기 위하여 시·도당을 방문하는 때에 정당의 경비로 방문지역의 기관·단체의 장 또는 사회단체의 간부나 언론인 등 제한된 범위의 인사를

초청하여 간담회를 개최하고 식사류의 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

거. 정당의 중앙당이 당헌에 따라 개최하는 전국 단위의 최고 대의기관 회의에 참석하는 당원에게 정당의 경비로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2. 의례적 행위

가. 민법 제777조(친족의 범위)의 규정에 의한 친족의 관혼상제의식 기타 경조사에 축의·부의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나. 정당의 대표자가 중앙당 또는 시·도당에서 근무하는 해당 유급사무직원(중앙당 대표자의 경우 시·도당의 대표자와 상근 간부를 포함한다)·그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비속이 결혼하거나 사망한 때에 통상적인 범위에서 축의·부의금품(화환 또는 화분을 포함한다)을 제공하거나 해당 유급사무직원(중앙당 대표자의 경우 시·도당 대표자를 포함한다)에게 연말·설·추석·창당기념일 또는 그의 생일에 정당의 경비로 의례적인 선물을 정당의 명의로 제공하는 행위

다. 국가유공자의 위령제, 국경일의 기념식,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 규정된 정부가 주관하는 기념일의 기념식, 공공기관·시설의 개소·이전식, 합동결혼식, 합동분향식, 산하 기관·단체의 준공식, 정당의 창당대회·합당대회·후보자선출대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사에 의례적인 화환·화분·기념품을 제공하는 행위

라. 공익을 목적으로 설립된 재단 또는 기금이 선거일 전 4년 이전부터 그 설립목적에 따라 정기적으로 지급하여 온 금품을 지급하는 행위. 다만, 선거일 전 120일(선거일 전 120일 후에 실시사유가 확정된 보궐선거등에 있어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선거일까지 그 금품의 금액과 지급대상·방법 등을 확대·변경하거나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직접 주거나 후보자 또는 그 소속 정당의 명의를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지급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마. 친목회·향우회·종친회·동창회 등 각종 사교·친목단체 및 사회단체의 구성원으로서 당해 단체의 정관·규약 또는 운영관례상의 의무에 기하여 종전의 범위안에서 회비를 납부하는 행위

바. 종교인이 평소 자신이 다니는 교회·성당·사찰 등에 통상의 예에 따라 헌금(물품의 제공을 포함한다)하는 행위

사. 선거운동을 위하여 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자나 국회의원·후보자·예비후보자가 관할구역안의 지역을 방문하는 때에 함께 다니는 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식사류의 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 이 경우 함께 다니는 자의 범위에 관하여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아. 기관·단체·시설의 대표자가 소속 상근직원(「지방자치법」 제6장제3절과 제4절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속 행정기관 및 하부행정기관과 그 밖에 명칭여하를 불문하고 이에 준하는 기관·단체·시설의 직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이나 소속 또는 차하급기관·단체·시설의 대표자·그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비속이 결혼하거나 사망한 때에 통상적인 범위에서 축의·부의금품(화환 또는 화분을 포함한다)을 제공하는 행위와 소속 상근직원이나 소속 또는 차하급기관·단체·시설의 대표자에게 연말·설·추석·창립기념일 또는 그의 생일에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에 따라 의례적인 선물을 해당 기관·단체·시설의 명의로 제공하는 행위

자. 읍·면·동 이상의 행정구역단위의 정기적인 문화·예술·체육행사, 각급학교의 졸업식 또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사에 의례적인 범위에서 상장(부상은 제외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을 수여하는

행위와 구·시·군단위 이상의 조직 또는 단체(향우회·종친회·동창회, 동호인회, 계모임 등 개인 간의 사적모임은 제외한다)의 정기총회에 의례적인 범위에서 연 1회에 한하여 상장을 수여하는 행위. 다만, 제60조의2(예비후보자등록)제1항의 규정에 따른 예비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부터 선거일까지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가 직접 수여하는 행위를 제외한다.

차. 의정활동보고회, 정책토론회, 출판기념회, 그 밖의 각종 행사에 참석한 사람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차·커피 등 음료(주류는 제외한다)를 제공하는 행위

카. 선거사무소·선거연락소 또는 정당선거사무소의 개소식·간판게시식 또는 현판식에 참석한 정당의 간부·당원들이나 선거사무관계자들에게 해당 사무소 안에서 통상적인 범위의 다과류의 음식물(주류를 제외한다)을 제공하는 행위

타. 제114조제2항에 따른 후보자 또는 그 가족과 관계있는 회사등이 개최하는 정기적인 창립기념식·사원체육대회 또는 사육준공식 등에 참석한 소속 임직원이나 그 가족, 거래선, 한정된 범위의 내빈 등에게 회사등의 경비로 통상적인 범위에서 유공자를 표창(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소속 직원이 아닌 자에 대한 부상의 수여는 제외한다)하거나 식사류의 음식물 또는 짠 값의 기념품을 제공하는 행위

파. 제113조 및 제114조에 따른 기부행위를 할 수 없는 자의 관혼상제에 참석한 하객이나 조객 등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음식물 또는 답례품을 제공하는 행위

3. 구호적·자선적 행위

가. 법령에 의하여 설치된 사회보호시설중 수용보호시설에 의연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나. 「재해구호법」의 규정에 의한 구호기관(전국재해구호협회를 포함한다) 및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의한 대한적십자사에 천재·지변으로 인한 재해의 구호를 위하여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다.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유료복지시설을 제외한다)에 의연금품·구호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인 중증장애인에게 자선·구호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마. 자선사업을 주관·시행하는 국가·지방자치단체·언론기관·사회단체 또는 종교단체 그 밖에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에 의연금품·구호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다만, 광범위한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 제공하는 개별 물품 또는 그 포장지에 직명·성명 또는 그 소속 정당의 명칭을 표시하여 제공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바. 자선·구호사업을 주관·시행하는 국가·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기관·법인을 통하여 소년·소녀가장과 후원인으로 결연을 맺고 정기적으로 제공하여 온 자선·구호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사.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구호·자선단체가 개최하는 소년·소녀가장, 장애인, 국가유공자, 무의탁노인, 결식자, 이재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등을 돕기 위한 후원회 등의 행사에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다만, 개별 물품 또는 그 포장지에 직명·성명 또는 그 소속 정당의 명칭을 표시하여 제공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아. 근로청소년을 대상으로 무료학교(야학을 포함한다)를 운영하거나 그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행위

4. 직무상의 행위

가.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으로 행하는 법령에 의한 금품제공행위(지방자치단체가 표창·포상을 하는 경우 부상의 수여를 제외한다. 이하 나목에서 같다)

나.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으로 대상·방법·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한 금품제공행위

다. 구호사업 또는 자선사업을 행하는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으로 당해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명의를 나타내어 행하는 구호행위·자선행위

라. 선거일전 60일까지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지정된 기관이나 그 밖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의 장이 업무과업을 위한 초도순시 또는 연두순시차 하급기관을 방문하여 업무보고를 받거나 주민여론 등을 청취하면서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에 따라 참석한 소속공무원이나 임·직원, 유관기관·단체의 장과 의례적인 범위안의 주민대표에게 통상적인 범위안에서 식사류(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경우에는 다과류를 말한다)의 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

마.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긴급한 현안을 해결하기 위하여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으로 해당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명의로 금품이나 그 밖에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바. 선거기간이 아닌 때에 국가기관이 효자·효부·모범시민·유공자등에게 포상을 하거나,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할구역 안의 환경미화원·구두미화원·가두신문판매원·우편집배원 등에게 위문품을 제공하는 행위

사. 국회의원 및 지방의회의원이 자신의 직무 또는 업무를 수행하는 상설사무소 또는 상설사무소를 두지 아니하는 구·시·군의 경우 임시사무소 등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장소에서 행하거나, 정당이 해당 당사에서 행하는 무료의 민원상담행위

아. 변호사·의사 등 법률에서 정하는 일정한 자격을 가진 전문직업인이 업무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자신이 개설한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법률·의료 등 자신의 전문분야에 대한 무료상담을 하는 행위

자. 제114조제2항에 따른 후보자 또는 그 가족과 관계있는 회사가 영업활동을 위하여 달력·수첩·탁상일기·메모판 등 홍보물(후보자의 성명이나 직명 또는 사진이 표시된 것은 제외한다)을 그 명의로 종업원이나 제한된 범위의 거래처, 영업활동에 필요한 유관기관·단체·시설에 배부하거나 영업활동에 부가하여 해당 기업의 영업범위에서 무료강좌를 실시하는 행위

차. 물품구매·공사·역무의 제공 등에 대한 대가의 제공 또는 부담금의 납부 등 채무를 이행하는 행위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행위 외에 법령의 규정에 근거하여 금품 등을 찬조·출연 또는 제공하는 행위

6. 그 밖에 위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준하는 행위로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행위

③ 제2항에서 "통상적인 범위에서 제공하는 음식물 또는 음료"라 함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금액범위안에서 일상적인 예를 갖추는데 필요한 정도로 현장에서 소비될 것으로 제공하는 것을 말하며, 기념품 또는 선물로 제공하는 것은 제외한다. <신설 1997. 11. 14., 2010. 1. 25.>

④ 제2항제4호 각 목 중 지방자치단체의 직무상 행위는 법령·조례에 따라 표창·포상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명의로 하여야 하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직명 또는 성명을 밝

〈청년허브 연도별 해외출장 내역〉

연도	추진근거 (방첩서)	출장자	출장지	출장목적	기간	결과보고서
2017	853	송지현	일본, 이탈리아	연수 프로그램 참가	6. 1.~6.12.	8010
	2793	차재근 송지현	유럽 (헬싱키, 뮌헨, 베를린)	현장탐방	6.12.~6.26.	8011
	853 929	김수인 정모음	홍콩	해외교류	7.21.~7.25.	7515
	853 6175	송지현	일본(도쿄, 후쿠시마)	피스모모 여행학교	11. 2.~11.9.	8009 2018-832
	928 7449	최진 차선희 서민중 김희연	일본(요코하마, 도쿄)	N개의 청년학교	11.30.~12. 3.	7997
2018	1533 3397	김평화	홍콩	컨퍼런스 참가	9.27.~9.30.	4466

〈청년허브 해외출장 출장자 현황〉

연도	성명	직급	여비지급내역 (천원)	개인별 출장 결과보고서	동행자 사항 (이름, 소속)	비고
2017	송지현	팀장	942	8010	-	
	차재근 송지현	센터장 팀장	1,516 1,192	8011	-	
	김수인 정모음	탐원 탐원	1,106 1,106	8038	박현준(영화비평가) 전희재(세븐픽처스) 한채연(세븐픽처스) 이태성(콘삭스) 김예은(몸의대화)	

히거나 그가 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는 행위는 기부행위로 본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가 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방법"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신설 2010. 1. 25.>

1. 종전의 대상·방법·범위·시기 등을 법령 또는 조례의 제정 또는 개정 없이 확대 변경하는 경우
2.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업적을 홍보하는 등 그를 선전하는 행위가 부가되는 경우

⑤각급선거관리위원회(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를 제외한다)는 기부행위제한의 주체·내용 및 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광고등의 방법으로 홍보하여야 한다. <개정 1997. 11. 14., 2004. 3. 12., 2005. 8. 4.>

[제목개정 2004. 3. 12.]

연도	성명	직급	여비지급내역 (천원)	개인별 출장 결과보고서	동행자 사항 (이름, 소속)	비고
					성민현(인스텝터스) 문재연(씨네21) 최영지(통번역) 문아영(피스모모) 이한수(아티스트그룹 '홉') 장해희(씨닷컴) 강덕형(비취보석사우나) 노현주(2017 삶의재구성 코드) 김홍구(하이파이브 프로젝트)	
	송지현	팀장	1,008	8009		
	최진	팀장	291			
	차선희	팀원	958	8017	권지현(두름) 서유림(도시공감) 황운호(나인로드)	
	서민중	팀원	958			
	김희연	팀원	958			
2018	김평화	팀원	1,210	4466	박선용, 박영민 (각두기단) 김태경, 정유미 (스투키스튜디오)	

- 특히, 서울시 공유재산에 대해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과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의 규정을 위반하고 자의적으로 무상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으며, (사)청년정책네트워크 실행위원회라는 특정단체에게 청년허브 공간을 임의로 무상제공하는 등의 행태를 보인바, 변상금 부과 등 적절한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서울시 청년허브 운영규정」

제 9 장 대관운영

제 35 조 (대관운영의 목적) 시설 이용자의 욕구충족과 복합적인 문화공간 제공을 위하여 시설대관 운영의 효율증대와 안전관리 체계 마련에 목적이 있다.

제 36 조 (사용규정)

1. 시설 이용 시간인 10:00 - 22:00내에서 관리운영에 지장이 없는 공간에 한해 대관한다.

2. 시설이용은 유상으로 제공되며, 이용료는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에 의한다.

(단,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조례」에 따른 청년정책의 시행에 기여하는 단체 또는 기관, 청년허브와 공동사업 협약을 체결한 단체 또는 기관, 기타 부득이한 상황의

경우 센터장의 승인으로 사용료를 할인 및 징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정치적, 영리적, 종교적 목적의 집회에는 시설 대관을 할 수 없다.
4. 시설사용 도중 기구, 물품 등의 파손이 발생하였을 경우, 사용자가 변상해야 한다.
5. 사용하고 있는 시설내의 기물의 위치는 바꿀 수 있으나 사전에 허락을 받아야 하며 시설사용 후 사용자는 사용하기 전과 같은 상태로 정리정돈을 책임진다.
6. 관내에서는 흡연 및 음주를 금한다.
7. 기타 제반 이용수칙은 공간사용지침에 의한다.

제 37 조 (시설이용료) 서울시 이용료 승인 내역에 의한다. 다만, 센터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단체나 시설의 경우 승인 내역 안에서 이용료를 조정할 수 있다.

제4조(대관료) ① 센터는 수익자 비용부담의 원칙을 적용하여 대관자에게 대관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센터의 공간별 대관료는 <붙임1>에 따른다.

③ 대관자는 센터가 지정한 계좌로 사용승인 이후 7일 이내로 대관료를 일시불로 납부해야 한다.

- 또한,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서울 청년지원?”¹³⁾이라는 언론의 비판 기사를 보면, 청년허브에서 시행한 ‘청년참’ ‘청년활’ ‘청년참참참’ ‘청년활력공간’ 등 청년 지원 사업의 문제점도 지적하고 있는바, 청년허브가 단지 서울시 보조금을 편법적으로 교부하기 위한 민간위탁기관은 아닌지 면밀히 살펴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됨.
-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르면 명시적으로 보조금 관계법령, 보조금 관리조례 등에 따라 집행하여야 할 민간보조사업은 위탁금으로 예산편성 금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3) 문화일보(2019.6.3.)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서울 청년지원?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19060301071427333001>

민간 위탁 청년허브 감사 결과 활동비 2~4년 연속 지원하거나 유사한 활동계획에도 중복지원 직원 채용부실·물품 관리 엉망 4년간 26억 들어간 사업 ‘구멍’

「2020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

05. 민간위탁금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법령 및 조례에 의하여 민간인에게 위탁관리 시키는 사업 중 기금성격의 사업비로서 사업이 종료되거나 위탁이 폐지될 때에는 전액 국고 또는 지방비로 회수가 가능한 사업
 2.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자치법」 제104조 제3항에 의한 위임 또는 위탁, 대행사무에 수반되는 경비로서 위임 또는 위탁, 대행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자본형성적 경비 이외의 부담경비
 - 시가지·도로 청소대행사업비 등
- ※ 보조금 관계법령, 보조금 관리조례 등에 따라 집행하여야 할 민간보조사업 을 위탁금으로 예산편성 금지

- 청년청은 청년허브 ‘민간위탁금’으로 보조사업 예산을 과도하게 편성하고 있으며, 이는 법령위반사항으로 의회와 시민의 감시를 회피할 목적의 자의적인 보조금 사업은 아닌지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음.
- 현재, 서울시에서는 청년자율예산 뿐만 아니라 청년프로젝트 투자사업 등 서울시에서 직접 청년과 청년 단체를 지원하는 사업이 많은바,
- 청년허브에서 수행하는 사업 중 경쟁률이 평균 2:1도 안 되는 ‘소규모 청년 커뮤니티 지원사업’(연간 평균 260개 팀에 100만원~300만원의 활동비 지원)등을 중복적으로 수행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음.

〈청년허브 공모사업현황〉

연도	사업명	예산액(천원)	집행액(천원)	집행잔액(천원)	불용률(%)
2017	소규모 청년 커뮤니티 지원사업 <청년참>	347,150,000	301,772,811	45,377,189	13.1
2017	청년단체사업(프로젝트)지원 사업 <청년활>	322,890,000	283,362,631	39,527,369	12.2
2017	청년활력공간 지원사업	580,000,000	575,488,260	4,511,740	0.8

2018	청년활동(커뮤니티) 지원사업 <청년참>	351,920,000	295,832,160	56,087,840	15.9
2018	청년활동(프로젝트) 지원사업 <청년활>	155,202,000	135,331,899	19,870,101	12.8
2018	청년 직업실험 지원사업 <청년업>	134,868,000	67,234,583	67,633,417	50.1
2018	청년활력공간 지원사업 <청년활@공간>	94,062,000	84,399,200	9,662,800	10.3
2019	청년 커뮤니티 지원사업 <청년참>	383,470,000	342,004,996	41,465,004	10.8
2019	청년 직업실험 지원사업 <청년업>	231,900,000	174,875,626	57,024,374	24.6

〈공모사업별 선정자 현황〉

연도	사업명	신청사수	경쟁률	선정자 주요이력	선정방식	선정사유
2017	소규모 청년 커뮤니티 지원사업 <청년참>	457	1.57	다수	심사에 의한 선정	고득점
2017	청년단체사업(프로젝트) 지원사업 <청년활>	242	9.68	다수	심사에 의한 선정	고득점
2017	청년활력공간 지원사업	7	2.33	다수	심사에 의한 선정	고득점
2018	청년활동(커뮤니티) 지원사업 <청년참>	475	1.63	다수	심사에 의한 선정	고득점
2018	청년활동(프로젝트) 지원사업 <청년활>	237	19.75	다수	심사에 의한 선정	고득점
2018	청년 직업실험 지원사업 <청년업>	69	4.93	다수	심사에 의한 선정	고득점
2018	청년활력공간 지원사업 <청년활@공간>	40	8	다수	심사에 의한 선정	고득점
2019	청년 커뮤니티 지원사업 <청년참>	602	2.01	다수	심사에 의한 선정	고득점
2019	청년 직업실험 지원사업 <청년업>	201	7.44	다수	심사에 의한 선정	고득점

○ 또한, 청년허브에 위탁한 “청년정책 수립을 위한 연구조사”도 대부분 수의계약을 통해 연구용역으로 추진하고 있고,

〈최근 3년간 서울시 청년허브 연구용역 현황〉

연도	용역사업명	계약기간	집행액 (천원)	수의계약 사유	수행단체(개인)	결과 공개여부	공급
2017	서울시 청년공간 조성운영 계획연구 기타	17. 5.22~17.10.27	20,000	·지자체법률	프로젝트 노아	공개	18.1
	2030 청년조기퇴사의 원인과 방안 모색 연구 노동/정치	17. 6. 9~17.10.31.	10,000	·사항명 25조	퇴사학교 주식회사	공개	18.1
	청년정책 결정 및 집행체계에 대한 경험 연구 기타	17. 9.19~17.11.17.	15,000	·항사부 예규 5장 22절	사회혁신공간데어	공개	18.1

연도	용역사업명	계약기간	집행액 (천원)	수의계약 사유	수행단체(개인)	결과 공개여부	공기일
	청년세대 통일의식 조사 연구 공동체/지역	17. 9.29.~17.11.17.	5,000		고강섭	공개	18.1
	청년의 진로탐색과 갭이어에 관한 기초 연구 교육/학습	17. 9. 1.~17.10.27.	11,000		커리어투어	공개	18.1
2018	서울형 갭이어 지원방안 기초연구 교육/학습	18. 9.12.~18.12.21.	22,000		미들클래스소사이어티 사회적협동조합	공개	19.1
	아시아 다음세대 연구자 교류 협력 플랫폼 구축방안 연구 공동체/지역	18.10.2.~18.12.21.	15,000		재단법인 LAB 2050	공개	19.1
	청년의 지방이주 지원정책 추진 실태와 개선방안 연구 공동체/지역	18.10.22.~18.12.14.	15,000		마을학회 일소공도	공개	19.1
	청년허브 지원사업 맥락분석 연구 기타	18.10.19.~18.12.14.	33,000		주식회사 도원교육	비공개	-
	청년허브 데이터 통합 및 지원사업 관리를 위한 DB 구축 기타	18.10.22.~18.12.14.	16,500		코드나무	비공개	-
	청년자치정부' 청년자율예산제 도입 및 운영방안 연구 노동/정치	18.10.19.~18.12.14.	11,000		나라살림연구소	공개	19.1
	청년학교 방향성 정립 및 교안 개발을 위한 기초연구 교육/학습	18.10.19.~18.12.14.	16,500		주식회사 인생도서관	공개	19.1
	청년생산활동 촉진을 위한 산업 생태계 현장 연구 (을지로 지역의 2차 및 4차 산업을 중심으로) 공동체/지역	18.10.22.~18.12.14.	37,800		저스트프로젝트	공개	19.1
2019	서울의 청년 커뮤니티의 작동에 관한 탐색적 연구 공동체	19. 4.30.~19. 9.30.	15,000		듣는연구소	비공개	-
	청년 삶의 경로탐색 프로젝트 '별이별이 주 00' 확대 및 발전방안 공동체/지역	19. 7. 5.~19.11.10.	16,500		마을학회 일소공도	비공개	-
	청년 창의생산활동 공간 가이드라인 연구 공간/지역	19. 8.26.~19.11.28	15,000		재단법인 걷고싶은도시만들기연대	비공개	-
	아시아 액티비스트리서치 펠로우십 프로그램 디자인 기타	19. 9.11.~19.11.10.	27,500		주식회사 씨앗	비공개	-

○ 서울시에서는 1천5백만원 이상의 계약은 수의계약을 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하였으나, 청년허브에서는 2천만원 이상 계약도 대부분 수의계약으로 시행하고, 개인사업자가 아닌 개인¹⁴⁾과의 용역계약도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편법적인 계약 행태 또한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14)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14조에 계약시 참가자격 등에 사업자등록(고유번호 포함) 두고 있어야 하며, 제35조에서 수의계약도 이를 준용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개인과 계약할 경우 세금 탈루 가능성, 특혜성 시비, 과업 수행이후 정산 및 과업 품질에 대한 책임성 확보 곤란 등의 문제 심각

〈청년허브 1천만원 이상 용역 현황〉

연도	연번	용역사업명	계약방법	계약일	예산금액 (천원)	계약금액 (천원)	수행단체 (개인)	방침서
2017	1	서울시 청년공간 조성운영 계획연구	수의	'17. 5.22.	20,000	20,000	프로젝트 노아	2794
	2	2030 청년조기퇴사의 원인과 방안모색 연구	수의	'17. 6. 9.	10,000	10,000	퇴사학교주식회사	3204
	3	청년의 진로탐색과 갭이어에 관한 기초연구	수의	'17. 9. 1.	11,000	11,000	(주)커리어투어	5303
	4	청년정책 기조전환 및 청년기본법 제정을 위한 캠페인 및 이슈포럼 기획, 운영	수의	'17. 9.14.	14,950	14,950	청년유니온	5732
	5	청년정책 결정 및 집행체계에 대한 경험연구	수의	'17. 9.19.	15,000	15,000	사회혁신공간데어	5769
	6	청년활력공간 지속가능성 평가지표 개발	수의	'17. 9.21.	13,000	13,000	리윤익	5892
	7	청년참 반상회 기획 및 운영	수의	'17. 9.26.	11,000	11,000	비따비	6138
	8	2017 청년참 활동비 정산	수의	'17.10.16.	14,750	14,750	류준열 세무회계사무소	6482
2018	9	청년허브 홍보물 및 아카이브 책자 제작	수의	'18. 7.10.	43,400	43,400	포씨씨랩	2813
	10	청년허브 온라인 플랫폼 구축 개발 및 디자인	수의	'18. 8. 3.	15,000	15,000	위너클럽동조합	3191
	11	청년허브 홈페이지 유지보수 및 운영	수의	'18. 8.21.	14,400	14,400	최지원	3373
	12	서울형 갭이어 지원방안 기초연구	수의	'18. 9.12.	22,000	22,000	미들클래스소사이어티	3855
	13	지역기반 청년공유자산 모델프로젝트 <빙그레 커먼즈> 기획 및 운영	수의	'18. 9.19.	16,500	16,500	협동조합 성북신나	3854
	14	[기획연구] 청년허브 지원	수의	'18. 10.12.	33,000	33,000	(주)도원교육	4486

제14조(입찰 참가자격 요건의 증명) ① 영 제13조제1항제3호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소득세법」 제168조, 「법인세법」 제111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에 따라 해당 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거나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에게 제1항에 따른 요건은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를 확인하는 서류의 사본에 의하여 증명하게 하고, 영 제1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요건은 관계 기관(법령에 따라 설립된 관련 협회 등 단체를 포함한다)에서 발행한 문서의 사본에 의하여 증명하게 하여야 한다.

③ 제15조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등록한 자는 등록된 종목 또는 품목에 한정하여 발급받은 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에 따라 제2항에 따른 자격을 증명할 수 있다.

제35조(입찰에 관한 규정의 준용) 수의계약대상자의 자격요건 증명에 관하여는 제14조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연도	연번	용역사업명	계약방법	계약일	예산금액 (천원)	계약금액 (천원)	수행단체 (개인)	방침서
		사업 맥락 분석 연구						
	15	[기획연구] 청년학교 방향성 정립 및 교안 개발을 위한 기초연구	수의	'18. 10.19.	16,500	16,500	주식회사 인생도서관	4481
	16	청년허브 데이터 통합 및 지원사업 관리를 위한 DB 데이터 구축	수의	'18.10.22.	16,500	16,500	코드나무	4411
	17	[기획연구] 청년의 지방이주지원정책 추진 실태와 개선방안 연구	수의	'18.10.22.	15,000	15,000	마을학회 일소공도	4500
	18	[기획연구] 청년 생산활동 촉진을 위한 산업 생태계 현장연구	수의	'18.10.22.	37,800	37,800	저스트프로젝트	4527
	19	N개의 공론장 <온라인공론장>	수의	'18.10.23.	33,000	33,000	일이삼컬렉터	4467
	20	[기획연구] 아시아 다음세대 연구자 교류, 협력 플랫폼 구축방안 연구	수의	'18.10.23.	15,000	15,000	재단법인 랩2050	4536
	21	참여자 분석을 통한 청년허브 지원사업 발전방향 컨설팅	수의	'18.11. 1.	22,000	22,000	포씨씨랩	4584
	22	청년허브 장애인 화장실 편의시설 개선공사	수의	'18.11. 7.	12,760	12,760	신성산업	4628
	23	청년청 공유자산 모델 프로젝트	수의	'18.11. 9.	16,500	16,500	주식회사 테크리포트	4729
	24	청년허브 지원사업 회계정산	수의	'18.11.19.	27,000	27,000	라운세무회계	4872
	25	청년청 콘텐츠 아카이빙 및 홍보물 제작	수의	'18.11.19.	13,425	13,425	쪽프레스	4957
	26	청년허브 에너지 효율을 위한 창호 제작	수의	'18.11.30.	21,560	21,560	미성산업	5334
	27	청년허브 연구 결과물 제작	수의	'18.11.30.	15,300	15,300	주식회사 더디앤씨	5402
	28	가구보수/리폼 및 목구조조작업	수의	'18.11.30.	10,750	10,750	문화로놀이장	5009
2019	29	이슈발굴 및 논의를 위한 N개의 공론장 기획형 [내가 좋아하는 공간에서 시작되는 변화]	수의	'19. 8.26.	16,280	16,280	(주)보틀팩토리	3680
	30	이슈발굴 및 논의를 위한 N개의 공론장 너른형 [왜 아이와 편하게 여행할 수 없을까?]	수의	'19. 9. 2.	20,911	20,911	(사)한국장애인관광협회	4414
	31	청년 직업실험 지원사업 청년업아카이빙 북 제작	수의	'19. 8. 2.	15,000	15,000	삼오위크룸	3314
	32	그룹웨어시스템 신규서버 구입 및 설치	수의	'19. 9. 2.	54,900	54,900	(주)월드소프트	4119
	33	서울의 청년 커뮤니티 작동에	수의	'19. 4.30.	20,684	20,684	듣는연구소	1873

연도	연번	용역사업명	계약방법	계약일	예산금액 (천원)	계약금액 (천원)	수행단체 (개인)	방침서
		관한 탐색적 연구 기초계약						
	34	청년청 공간운영을 위한 공간구성 사인물 제작	수의	'19. 7. 5.	18,040	18,040	이 제	2840
	35	청년허브 정책 및 기관홍보 사업	수의	'19. 6.24.	54,900	54,900	포씨씨랩	2837
	36	[기획연구] 청년 삶의 경로 탐색 프로젝트 '별의별이주 00' 확대 및 발전방안	수의	'19. 7. 5.	16,500	16,500	마을학회 일소공도	4196
	36	[기획연구] 청년 창의생산 활동 공간 가이드라인 연구	수의	'19. 8.26.	15,000	15,000	재단법인 값고싶은도시민들기연대	4149
	37	[기획연구] 아시아 액티비 스트리서치 펠로우십 프로그램 디자인	수의	'19. 9.11.	27,500	27,500	주식회사 씨닷	4067
	38	2019 N개의 공론장 오픈 레이션	수의	'19. 7.10.	10,000	10,000	주식회사 비아이씨피취	2965
	39	2019년도 서울특별시 청년허브 × 사단법인 아시아사랑나눔 공동협력사업 <유스 글로벌리더십 프로그램>	수의	'19. 8.30.	15,000	15,000	사단법인 아시아사랑나눔	3942

- 청년청은 민간위탁 만능 사고에서 벗어나 위탁한 사무들을 서울시가 직접 수행할 필요성은 없는지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마. 청년활력 프로그램 운영

- 동 사업은 청년수당 수혜자의 관리와 미취업청년의 역량강화와 진로 모색, 관계형성을 위한 다양한 청년 활력 프로그램 운영 등을 위하여 40억 1천만원(전년 예산 41억1천1백만원 대비 3.9% 감액)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음.

〈편성 예산〉

(단위 : 천원)

구 분	2019년		2020예산(안) (B)	증감 (B-A)	(B-A)*100/A
	본예산	최종예산 (A)			
계	(x-) 4,111,658	(x-) 4,171,658	(x-) 4,010,000	(x-) △161,658	(x-) △3.9
민간위탁금	(x-) 3,911,658	(x-) 3,971,658	(x-) 4,010,000	(x-) 38,342	(x-) 0
자치단체경상보조금	(x-) 200,000	(x-) 200,000	(x-) 0	(x-) △200,000	(x-) △100

〈세부 산출 기초〉

과목구분	2019년 본예산	2020년 예산(안)
민간위탁금	○ 인건비 = 1,661,000천원	○ 인건비 = 1,758,472천원
	- 기본급 2,398,306원*34명*12 = 978,509천원	- 기본급 2,523,301*34명*12개월 = 1,029,507천원
	- 제수당 등 1,319,464원*34명*12 = 538,342천원	- 제수당 등 1,409,826*34명*12개월 = 575,209천원
	- 보험료 144,149,000원 = 144,149천원	- 보험료 153,756,256 = 153,756천원
	○ 운영비 449,658,000원 = 449,658천원	○ 운영비 349,778,000 = 349,778천원
	○ 사업비 = 1,801,000천원	○ 사업비 = 1,901,750천원
	- 마음건강 지원사업 400,000,000원 = 400,000천원	- 청년수당 관리 및 패키지 프로그램 지원 875,000,000 = 875,000천원
	- 관계망지원사업 647,000,000원 = 647,000천원	- 권역별 청년지원 기반조성 632,000,000 = 632,000천원
	- 활동경험 지원사업 400,000,000원 = 400,000천원	- 정책 연구·홍보 등 394,750,000 = 394,750천원
	- 정책연구 홍보 등 354,000,000원 = 354,000천원	
증감사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년 인건비 인상분 반영 ○ 사업 지원프로그램 개편 및 역할 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권역별 청년지원 기반조성, 청년수당 매니징 기능 강화, 지자체 협업 등 ○ 센터 운영비 감액 ○ 인건비 상승분은 사업비, 운영비 조정하여 반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년 인건비 1,661백만원, 사업비 1,871백만원, 운영비 379백만원 - 20년 인건비 1,758백만원, 사업비 1,902백만원, 운영비 350백만원 		
자치단체경상보조금	○ 고립청년 밀착지원사업 200,000,000 = 200,000천원	
	증감사유	
	○ 청년자율예산으로 별도사업 편성	

- 주된 사업으로는 “권역별 청년지원 기반조성(6억3천2백만원), 청년수당 관리 및 패키지 프로그램 지원(8억7천5백만원), 정책 연구·홍보(3억9천4백만원)” 등이 있음.
- 동 센터의 민간위탁금 제출 자료를 보면, 3가지 사업으로만 구분하고 구체적인 사업계획 없이 민간위탁금 예산을 제출하고 있는바, 의회의 예산 심의권을 제약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신중한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음.
- 동 센터의 2019년 사업집행실적을 살펴보면, 민간위탁금은 회계연도 종료시 반납하여야 하나, 연구용역을 12월에 발주하고 및 사업 지연 등의 사유로 약 6천만원을 사고 이월예정인바, 이는 무계획적이고 불성실한 사업집행 및 불용방지 목적의 예산 집행은 아닌지에 대해서도 살펴볼 여지는 있다고 하겠음.

〈청년활동지원센터 사고이월 현황〉

연번	단위사업	사업명	연장사유	계약일	사업비(원)	이월액(원)	준공일
1	마음건강 지원사업	청년마음친구	해당사업은 청년고민상담 온라인플랫폼 운영으로, 청년들이 실시간으로 접속하는 플랫폼 운영을 중단할 수 없어 '19.1~2월까지지 연장 운영	2018.12.18	12,000,000	12,000,000	2019.02.15
2	활동경험 지원사업	자기탐색지원 사업	'19년 3~4월 대규모 공채시즌에 대비하여 '19년 1~2월 동안 지원프로그램 운영	2018.12.10	15,050,000	6,980,000	2019.02.20
3		사회혁신청년 활동가 양성사업 참여자 후속교육	'18년 12월에 근로기간 만료되어 고용승계되지 않는 참여자 대상으로 '19년 3~4월 대규모 공채시즌 대비한 후속교육 진행	2018.12.07	5,500,000	5,500,000	2019.02.20
4	연구	지역사회기반 청년지원 모델 개발 연구	'18년 사업종료 시점 참여자 면접조사가 포함되는 연구로, '18년 12월말 기준 참여자 조사 후 보고서 작성 가능함.	2018.09.20	16,000,000	4,800,000	2019.01.31
5		2019 청년활동지원 사업 설계와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30대 미취업자 특성 분석	2019년 서울시청년활동지원사업 대상에 30~34세가 신규로 포함됨에 따라, 해당연령 청년의 상태와 프로그램 수요를 파악하기 위한 긴급편성	2018.12.12	14,000,000	4,200,000	2019.02.20

6	2019년 패널연구를 위한 기획 연구	'18년 참여자 분석연구 결과 가 반영되는 연구로, '18년 12월중 참여자 분석연구 결과 도출 후 보고서 작성 가능함.	2018. 12. 12	9,500,000	9,500,000	2019.02.20
7	2018년 연구보고서 통합 출판	'18년 연구보고서 준공이 모 두 완료된 뒤 출판 가능	2018. 12. 11	17,460,000	17,460,000	2019.02.20
합계					60,440,000	

-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 제10조에 따르면 청년활동지원센터는 “청년수당 대상자의 관리와 청년수당 대상자를 위한 청년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민간위탁기관인바, 청년 수당 수혜자를 제외한 일반적인 청년들의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에는 제약이 있는 상황임에도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

제10조(청년의 참여 확대 등) ① 시장은 시정에 대한 청년의 참여를 확대하고, 제도적으로 정례화하며 민주시민으로서의 학습과 경험을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서울시의 각종 위원회와 정책 결정과정에서 청년의 의사를 반영하고 청년의 참여를 보장하며, 시정에 반영된 청년 제안 정책 등의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평가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청년의 능동적인 사회참여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청년활동을 촉진하고 활성화하는 지원·육성 방안을 강구하여야 하며, 예산의 범위내에서 활동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④ 청년활동 지원 방안에는 다음 각호를 포함한다.

1. 청년활동 활성화를 위한 교육·캠페인·프로그램 운영, 활동비 지급 등의 행정적·재정적 지원

2. 청년활동 지원을 위한 활동비 지급 대상 선정 기준·방법·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수립·시행

3. 청년활동 지원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기관 등에 위탁

⑤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청년활동 지원을 위해 '서울특별시 청년활동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9조(청년허브의 설치·운영) ① 시장은 청년정책의 추진을 위해 '서울특별시 청년허브(이하 '청년허브' 라고 한다)'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청년허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청년허브 사업의 계획 수립 및 시행
2. 청년정책 수립을 위한 연구조사 및 자료·정보 집적과 공유
3. 청년의 참여 확대를 위한 청년활동 지원 및 민관협력 활성화
4. 청년의 능력 개발 및 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 실행·지원
5. 청년의 취업·창업 등 일자리 진입 지원을 위한 시의 정책개선 및 혁신사업 실행
6. 청년의 주거안정, 부채경감, 문화활성화 등의 자립 지원을 위한 시의 사업 지원 및 혁신사례 발굴
7. 청년을 위한 국내외 네트워크 구축 및 기반 조성
8. 기타 그 밖에 청년정책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시장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청년허브를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청년허브를 민간 위탁하는 경우에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청년활동지원센터의 사무를 살펴보면, 청년수당 수혜자가 아닐 뿐만 아니라 일반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사무까지 사무를 확대하여 시행하고 있는 실정임.

- 이는 「서울시 민간위탁 관리 지침」 15)에 위반된 행위라고 할 것이며,

15) <서울시 민간위탁 관리지침>

○ 기존 위탁사무의 내용 등 변경시 신규 민간위탁으로의 처리 기준

- 관련 절차를 통해 민간위탁으로 이미 추진 중인 사무는 그 사무 수행을 중단하지 않는 한 당초 위탁사무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것으로 보아 사무를 관리
- 다만, 다음의 경우가 발생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기존 위탁사무는 종료된 것으로 보고 신규 민간위탁 추진절차에 따라 업무를 처리해야 함
 - 위탁유형을 변경하는 경우
 - 예산지원형 ↔ 수익창출형, 시설형 ↔ 사무형
 - ※ 다만, 당초 신규 민간위탁 추진 시, 시설형·사무형의 위탁유형을 착오 분류한 경우에는 재위탁·재계약 추진 시 위탁 유형을 정정할 수 있음.
 - 기존 위탁사무의 내용과 전혀 다른 사무를 추가하거나 기존 위탁사무의 내용이 전면적으로 변경되는 경우

이로 인해 청년 활동지원센터와 청년허브의 사무가 중복되고 있는 것인
아닌지 여부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음.

- 동 센터는 위탁시부터 청년허브 사업과의 중복성 등 예산 낭비 등에
대한 우려가 많았으며, 이러한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 특히,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바와 같이 청년청은 올해부터 청년
수당과 관련하여 대상자 선정까지 위탁기관에 맡기는 등 주객이 전도된
사무 행태의 위험성 등에 대한 지적이 있었으며,

〈청년수당 대상자 선정 업무 분담 현황〉

구분	서울시 청년청	서울시 청년활동지원센터
사업계획	수립·승인	수립
모집공고	공고·홍보	홍보
청년포털 (온라인 모집)	관리	관리, 협의조정
선정	최종지급 참여자 선정	모집 및 정량·정성평가 통한 참여자 1차 선정
	(서울시) 모집 및 자격요건 검토 ⇒ (센터) 정량·정성평가 통한 1차 선정(서울시로 명단 전달) ⇒ (서울시) 자격요건 최종 검토 후 선정 및 결과발표 *자격요건 : 서울시 거주, 소득요건, 중복사업 여부 등	
관리 (매월)	(전산 확인 관련) 자격요건 검토 후 월별 최종 지급대상자 확정	(자진신고 확인 관련) 자기활동기록서 등 신고서류 기준 자격상실 확인
	(센터) 참여자의 자진신고 서류 확인 후 1차 지급대상자 확인(서울시로 명단 통보) ⇒ (서울시) 자격요건 검토 후 최종 지급대상자 확정	
수당지급	지급	-
현금사용점검	확인	-

- 다수의 위탁사무를 통합하는 경우
- 위탁하는 공유재산을 추가하는 경우 등
- 기존 위탁사무를 두 개 이상의 위탁사무로 분리하는 경우
- 시설/시설, 사무/사무, 시설/사무로 분리시 각각 신규 추진
- ※ 소관부서가 분리되더라도 위탁사무 자체가 분리되는 경우가 아닌 경우 적용되지 않음
(다만, 분리된 부서 중 주관부서를 정하여야 함)
- 기존 위탁사무의 수행을 1년 이상 중단하였다가 다시 위탁하는 경우
- 국가기관 또는 타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수행하던 사무를 이관받아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등

서류발급	발급(참여기간 확인 등)	-
반납	반납	-
청년활력 프로그램 운영	관리·감독	청년활력프로그램 온/오프라인 운영

- 청년활동지원센터의 수탁 법인¹⁶⁾의 전문성에 대한 문제¹⁷⁾, 센터 명의 근로계약 체결 및 취득 물품의 서울시 자산관리대장에 등재 전무¹⁸⁾, 자체 자산으로 관리 부적정 등의 문제가 제기된바 있음.
- 청년활동지원센터의 연구용역 추진 상황을 살펴보면, 청년허브를 수탁 하고 있는 ‘학교법인 연세대학교’에 2017년에 이어 2018년에도 수의 계약으로 연구용역을 계약하는가 하면 위탁기관간 용역 계약이 불가함에도 청년활동지원센터는 무중력지대 양천과 수의계약으로 “2018년 양천구 청년지원모델 시범운영”을 계약한바 있음.

16) 사단법인 마을과 사단법인 일촌공동체 컨소시엄

법인명	설립일	법인대표	직원현황	소재지
주요사무	자산규모	부채규모	수탁일	타 사무 수탁여부
사단법인 마을	2012.4.4.	송문식	1명	서울시 은평구 통일로 680
마을공동체, 지역공동체 운영	27,233,607원	2,791,000원	2017.8.1.	서울시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 영등포마을자치센터 에너지공동체모집사업
사단법인 일촌공동체	2007.4.16.	이래경	2명	서울시 성동구 고산자로 12길 7-1
법인 및 지역센터 운영, 산하기관관련업무	300,000,000 원	-	2017.8.1.	방아골종합사회복지관, 도봉지역자활센터, 마포영유아종합지원센터, 차오름주간보호센터

17) 헤럴드 경제(2019.11.13.)와 서울시 모든 수탁사업은 사단법인 ‘마을’로?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191113000509>

“서울시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를 중심으로 한 새로운 관치다” “중간지원조직이 대기업 같이 문어발식 확장을 하고 있다”

마을공동체·청년 지원센터 이어 영등포마을자치센터 사업도 수주
100억 규모 사업 맡은 기관 불구 설립자본금 5000만원에 직원 1명
시의회 행자위 행감서 문제 제기 시민단체 나눠먹기식 인사 의혹도

18) 「서울시 민간위탁 관리지침」

※ 민간위탁 재산관리 관련 사항

- ▶ 수탁기관 물품관리대장 작성과 별도로 주관부서 물품관리대장 작성 관리
- ▶ 민간위탁 재산에 대한 정기 재물조사 실시(정기 지도·점검과 연계 실시)

- 또한, 개인과의 계약 건도 있는 것으로 보이며, 개인사업자가 아닌 개인과의 계약은 법령¹⁹⁾에 위배된다고 하겠으며, 세금 탈루 가능성, 특혜성 시비, 과업 수행이후 정산 및 과업 품질에 대한 책임성 확보 곤란 등의 심각한 문제가 유발될 가능성이 있는바, 동 센터는 사무 추진에 있어 법령의 준수가 요망된다고 하겠음.

〈청년활동지원센터의 개인과 용역 현황〉

연도	사업명	세부내용	계약업체	계약금액(천원)	비고
2018	활동경험 지원사업	자기탐색 지원사업	(주)컬러미퍼폼 / 강지연	19,980	
	연구	사회혁신청년활동가 양성사업 참여자 후속교육	강지연 기획스쿨 / 아이로그	5,500	
		지역사회기반 청년지원 모델 개발 연구	연세대학교 산학협력단	16,000	
		2019 청년활동 지원사업 설계와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황은미 / 천주희 /	14,000	

19)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14조에 계약시 참가자격 등에 사업자등록(고유번호 포함) 두고 있어야 하며, 제35조에서 수의계약도 이를 준용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개인과 계약할 경우 세금 탈루 가능성, 특혜성 시비, 과업 수행이후 정산 및 과업 품질에 대한 책임성 확보 곤란 등의 문제 심각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제14조(입찰 참가자격 요건의 증명) ① 영 제13조제1항제3호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소득세법」 제168조, 「법인세법」 제111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에 따라 해당 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거나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p> <p>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에게 제1항에 따른 요건은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를 확인하는 서류의 사본에 의하여 증명하게 하고, 영 제1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요건은 관계 기관(법령에 따라 설립된 관련 협회 등 단체를 포함한다)에서 발행한 문서의 사본에 의하여 증명하게 하여야 한다.</p> <p>③ 제15조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등록한 자는 등록된 종목 또는 품목에 한정하여 발급받은 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에 따라 제2항에 따른 자격을 증명할 수 있다.</p> <p>제35조(입찰에 관한 규정의 준용) 수의계약대상자의 자격요건 증명에 관하여는 제14조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p>

		30대 미취업자 특성 분석	박범기	
		2019년 패널연구를 위한 기획 연구	서복경 / 이지호	9,500

- 더 나아가, 연구용역 종료일 이후 1년이 지난 시점에서 연구용역 결과물을 공개하는 등 연구용역에 대한 관리가 부실한 것은 아닌지 철저한 관리 감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청년청은 동 센터가 수탁하는 사무를 충실히 집행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청년활동지원센터 연구용역 현황〉

연도	연구용역 사업명	예산액 (천원)	선정방법	선정자 (단체)	선정사유	계약기간	보고서 제출일	공개여부	공개일
2017	고졸청년근로빈곤층을 통한 청년취업지원사업	14,250	수의계약	연세대학교 산학협력단	· 청년노동과 고용복지제도에 대한 이해가 높음 · 연구수행을 위한 전문적인 기관으로 판단 · 센터와의 유기적인 관계를 통하여 한정된 예산에서 최적의 결과물 도출 가능성 높음	2017. 6.12. ~ 2017. 10.10	2017. 10.20	○	2018. 7.9
	이행기청년의 금융지원 모형개발연구	13,977	수의계약	청춘희년 네트워크	· 연구 용역의 대상자에 대한 전문 교육기관 · 주어진 예산 안에서 과업 수행이 가능함	2017. 7.10. ~ 2017. 10.20	2017. 10.30	○	2018. 7.9
	청년활동지원사업성과평가	40,320	경쟁입찰	서강대학교 산학협력단	· 제한경쟁입찰 2회 중 2회 응찰한 업체로 제안서 검토 결과 적격 업체로 판단	2017. 8.17. ~ 2018. 2.16	2018. 2.1	○	2018. 7.9
	청년수당결과보고서 분석 연구	14,550	수의계약	(주)트리움 연구소	· 의미망 분석 기법이라는 독점 기술 보유 · 주어진 예산 안에서 센터와 유기적인 협업 가능	2017. 11.28. ~ 2017. 12.20	2017. 12.20	○	2018. 7.9
	서울시 청년활동지원사업추진 및 성과 분석	40,000	수의계약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국책연구기관 · 체계적인 연구 분석이 가능함	2017. 12.27. ~ 2018. 2.28	2018. 1.31	○	2018. 7.9

연도	연구용역 사업명	예산액 (천원)	선정 방법	선정자 (단체)	선정사유	계약기 간	보고서 제출일	공개 여부	공개일
	구 용역								
20 18	청년활동지 원사업효과 성검증을위 한참여자 적조사연구	56,587	경쟁 입찰	서강대학교 산학협력단	· 제한경쟁입찰 2회 중 2회 응찰한 업체 로 제안서 검토 결과 적격 업체로 판단	2018. 6.29. ~ 2018. 12.21	2018. 12.21	○	2018. 5.17
	지역사회기 반청년지 원모형개 발 연구	16,000	수의 계약	연세 대학교 산학 협력단	· 연구수행을 위한 전문적인 기관으로 판단 · 타업체에 비해 저렴한 단가로 납 품이 가능	2018. 9.20. ~ 2018. 1.31	2019. 1.30	○	2018. 5.17
	청년활동지 원사업효과 성검증을위 한2017년 참여자가 적조사	7,050	수의 계약	(주)케이티 엠엠	· 여론조사 전문업 체로써 완성도 높은 과업수행 가능. · 타업체에 비해 저 렴한 단가로 납품이 가능	2018. 8.24. ~ 2018. 9.30	2019. 9.17	○	2018. 5.17
20 19	2019 참 여자분 및2018 추 참여자가 적조사	94,500	경쟁 입찰	서강대학교 산학협력단	· 제한경쟁입찰 2회 중 2회 응찰한 업체 로 제안서 검토 결과 적격 업체로 판단	2019. 5.14. ~ 2019. 12.20	-	-	-
	자치구 단 위청년지 원사업직 업운영자 역량 및도출 연구	34,700	경쟁 입찰	듣는 연구소	· 제한경쟁입찰 2회 중 1회 응찰한 업체 로 제안서 검토 결과 적격 업체로 판단	2019. 7.25. ~ 2020. 1.20	-	-	-
	활력프로 그램참 여자 사업전 후양상 변화 연구 진로 자 정 진 단 중 심 으로	16,000	수의 계약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 자가진단 도구를 활용한 설문조사 및 분석을 진행한 적이 있으며 사업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 과업 수행이 원활함 · 타업체에 비해 저 렴한 단가로 납품이 가능함	2019. 7.25. ~ 2019. 12.20	-	-	-
	30대 장 기 미 취 업 청 년 의 삶 의 경 험 연구	11,500	수의 계약	(주)제도와 사람	· 타업체에 비해 저 렴한 단가로 납품 가능함. · 연구수행을 위한 전문적인 기관으로 판단되며 센터와의 유기적인 협업 가능함.	2019. 8.29. ~ 2019. 12.20	-	-	-
	청년수당 참 여 자 의 정 책 요 구 파 악 을 위 한 FGI 연구	16,000	수의 계약	서강대학교 산학협력단	· 타업체에 비해 저 렴한 단가로 납품 가능함. · 연구수행을 위한 전문적인 기관으로 판단되며 사업이 해도가 우수하여 과업수행이 원활함	2019. 10.1. ~ 2019. 12.20	-	-	-

바. 권역별 서울청년센터 운영(신규) 및 서울시 청년공간 무중력지대 설치 운영

- “권역별 서울청년센터 운영” 사업은 청년들의 생활권을 기반으로 정책전달체계(Y.C)를 확충하여 청년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려는 것으로, 64억 2백만원의 예산을 신규로 편성하고 있으며,
- “서울시 청년공간 무중력지대 설치 운영” 사업은 청년들의 커뮤니티 확대, 역량강화, 일자리 지원, 문화 창의 활동 등을 위한 청년 종합활동공간을 지원하려는 것으로 62억 7백만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음.

〈권역별 서울청년센터 운영 편성 예산〉

(단위 : 천원)

구 분	2019년		2020예산(안) (B)	증감 (B-A)	(B-A)*100/A
	본예산	최종예산 (A)			
계	(x-) 0	(x-) 0	(x-) 6,402,070	(x-) 6,402,070	(x-) 0
기간제근로자등 보수	(x-) 0	(x-) 0	(x-) 244,800	(x-) 244,800	(x-) 0
사무관리비	(x-) 0	(x-) 0	(x-) 435,610	(x-) 435,610	(x-) 0
공공운영비	(x-) 0	(x-) 0	(x-) 84,000	(x-) 84,000	(x-) 0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x-) 0	(x-) 0	(x-) 2,498,440	(x-) 2,498,440	(x-) 0
시설비	(x-) 0	(x-) 0	(x-) 1,487,555	(x-) 1,487,555	(x-) 0
감리비	(x-) 0	(x-) 0	(x-) 15,000	(x-) 15,000	(x-) 0
자치단체 자본보조	(x-) 0	(x-) 0	(x-) 1,446,665	(x-) 1,446,665	(x-) 0
자산 및 물품취득비	(x-) 0	(x-) 0	(x-) 190,000	(x-) 190,000	(x-) 0

〈서울시 청년공간 무중력지대 설치 운영 편성 예산〉

(단위 : 천원)

구 분	2019년		2020예산(안) (B)	증감 (B-A)	(B-A)*100/A
	본예산	최종예산 (A)			
계	(x500,000) 7,878,700	(x500,000) 8,352,700	(x-) 6,207,508	(xΔ500,000) Δ2,145,192	(xΔ100) Δ25
사무관리비	(x-) 180,000	(x-) 180,000	(x-) 206,000	(x-) 26,000	(x-) 14
공공운영비	(x-) 30,900	(x-) 30,900	(x-) 55,000	(x-) 24,100	(x-) 77
민간위탁금	(x-) 2,990,000	(x-) 2,990,000	(x-) 4,380,508	(x-) 1,390,508	(x-) 46
자치단체경상보조금	(x-) 600,000	(x-) 600,000	(x-) 600,000	(x-) 0	(x-) 0
시설비	(x500,000) 3,614,000	(x500,000) 4,081,000	(x-) 906,000	(xΔ500,000) Δ3,175,000	(xΔ100) Δ77
감리비	(x-) 63,800	(x-) 70,800	(x-) 0	(x-) Δ70,800	(x-) Δ100
자산 및 물품취득비	(x-) 400,000	(x-) 400,000	(x-) 60,000	(x-) Δ340,000	(x-) Δ85

○ 현재 서울시에 조성되어 있는 청년공간 등은 다음과 같으며,

〈청년공간 조성 및 운영 현황〉

구 분	명 칭	조성 기관	'19년예산 (백만원)	위치 및 규모	비 고
서울시	청년청	서울시	130 (시비)	- 소재지 : 서울시 은평구 통일로 684 - 규모 : 건물(지하1층, 지상 4개층), 4,295.7㎡ - 개관일자 : 2015. 12월 - 사업내용 : 청년입주단체 공간으로 운영 중	
	청년허브	서울시	3,749 (시비)	- 소재지 : 은평구 통일로 684 서울혁신파크 - 규모 : 1,881㎡ - 개관일자 : 2013. 4월 - 사업내용 : 청년정책 연구 및 문제 해결, 청년 역량강화 지원	
	무중력지대 G밸리	서울시	490 (시비)	- 소재지 : 금천구 가산디지털로1로168 - 규모 : 건물(지상 1개층), 293㎡ - 개관일자 : 2015. 1월 - 사업내용 : 무중력지대 공간으로 운영 중	
	무중력지대 대방동	서울시	490 (시비)	- 소재지 : 동작구 등용로 79-1 - 규모 : 건물(지하1층 지상4층), 446.02㎡ - 개관일자 : 2014. 12월 - 사업내용 : 무중력지대 공간으로 운영 중	

구분	명칭	조성기관	'19년예산 (백만원)	위치 및 규모	비고
	무중력지대 성북	서울시	380 (시비)	- 소재지 : 성북구 아리랑로50 - 규모 : 건물(지상 1개층), 224.49㎡ - 개관일자 : 2018. 6월 - 사업내용 : 무중력지대 공간으로 운영 중	-조성예산 재배정 (시→자치구)
	무중력지대 도봉	서울시	380 (시비)	- 소재지 : 서울시 도봉구 창동 3 - 규모 : 건물(지상 2개층), 440.97㎡ - 개관일자 : 2018. 5월 - 사업내용 : 무중력지대 공간으로 운영 중	
	무중력지대 서대문	서울시	490 (시비)	- 소재지 : (홍제)서대문구 통일로 484 (무악재)서대문구 통일로 358-1 - 규모 : (홍제)건물 지상1개층, 201㎡ (무악재)건물 지상4개층, 133.49㎡ - 사업내용 : 건물 리모델링 후 무중력지대공간으로 운영중	-조성예산 재배정 (시→자치구)
	무중력지대 양천	서울시	380 (시비)	- 소재지 : 양천구 목동404-1 - 규모 : 건물(지상 1개층), 214.9㎡ - 개관일자 : 2018. 3월 - 사업내용 : 무중력지대 공간으로 운영 중	-조성예산 재배정 (시→자치구)
	무중력지대 강남	서울시	380 (시비)	- 소재지 : 강남구 개포로 41 - 규모 : 지상1층, 280㎡ - 개관일자 : 2019. 8. - 사업내용 : 무중력지대 공간으로 운영 중	
	청년교류공간	서울시	498 (시비)	- 소재지 : 마포구 방울내로5길 42 - 규모 : 지상 1~4층(연면적 313.91㎡) - 개관일자 : 2018. 3월 - 사업내용 : 서울 지방, 해외 청소년들 간 교류공간으로 운영중	
자치구	무중력지대 광진구 청년센터	광진구	300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 소재지 : 광진구 능동로 245 - 규모 : 385㎡(2층, 3층 각 192.52㎡) - 개관일자 : 2018. 4월 - 사업내용 : 무중력지대 공간으로 운영 중	- 서울시특별교 부금 10억원 (조성 및 운영비)
	무중력지대 영등포	영등포	300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 소재지 : 당산동6가 305-4 - 규모 : 467.33㎡(1층 254.18㎡, 2층 192.52㎡) - 개관일자 : 2018. 10. - 사업내용 : 무중력지대 공간으로 운영 중	
	은평청년 새싹공간	은평구	345 (구비)	- 소재지 : 은평구 통일로 67길 9(A동 2층), 은평구 불광로1길 2~4(B동 1~4층) - 규모 : 545.18㎡ - 개관일자 : 2017. 12월 - 사업내용 : 은평구 청년 전용공간으로 운영중	
	청춘벨딩	금천구	287	- 소재지 : 서울 금천구 시흥대로138길	-'18년 리모델링

구분	명칭	조성기관	'19년예산 (백만원)	위치 및 규모	비고
			(구비)	10-11(독산동) - 규모 : 건물(지상 3개층), 354.96㎡ - 개관일자 : 2016. 11월 - 사업내용 : 건물 리모델링 후 청춘빨딩 공간으로 운영중	공사비 : 220백만원(시비)지원

○ 2020년 권역별 청년센터의 경우 신규로 도심권 직영센터 1곳(종로나 중구 예정), 권역별 자치구 연계형 센터 5곳(관악, 영등포, 강동, 마포, 은평), 권역별 청년센터 1곳(성북)을 조성할 예정이며,

- 서울시에서 '자치단체경상보조금'과 '자치단체자본보조'로 대부분의 재원을 부담할 예정입니다.

※ 관악구만 사업비 매칭, 나머지 자치구는 서울시에서 사업비 전액 부담.

□ 사업개요

○ 센터 명칭(잠정): 서울청년센터

- 추후 청년 의견수렴 통해 확정 (명칭후보군 : 서울청년센터, 서울2030센터 등)

* (표기) 서울청년센터 종로

○ 사업기간: 2020. 1. ~ 12. (12개월)

○ 대 상: 신규 6개소 운영 (개소당 약 330㎡)

- 직영센터 운영 : 1곳 (청년청 직접 운영)

- 자치구연계 센터 운영 : 5곳 (자치구 연계, 자치단체보조금으로 집행)

※ 관악, 영등포, 강동, 마포, 은평

- 설치·조성 : 1곳 (성북, '20년 조성 시작, '21년 준공 및 운영개시 예정)

* 개소예정 권역 : 도심권, 동북권, 서북권, 동남권, 서남권 등 5개 권역으로 구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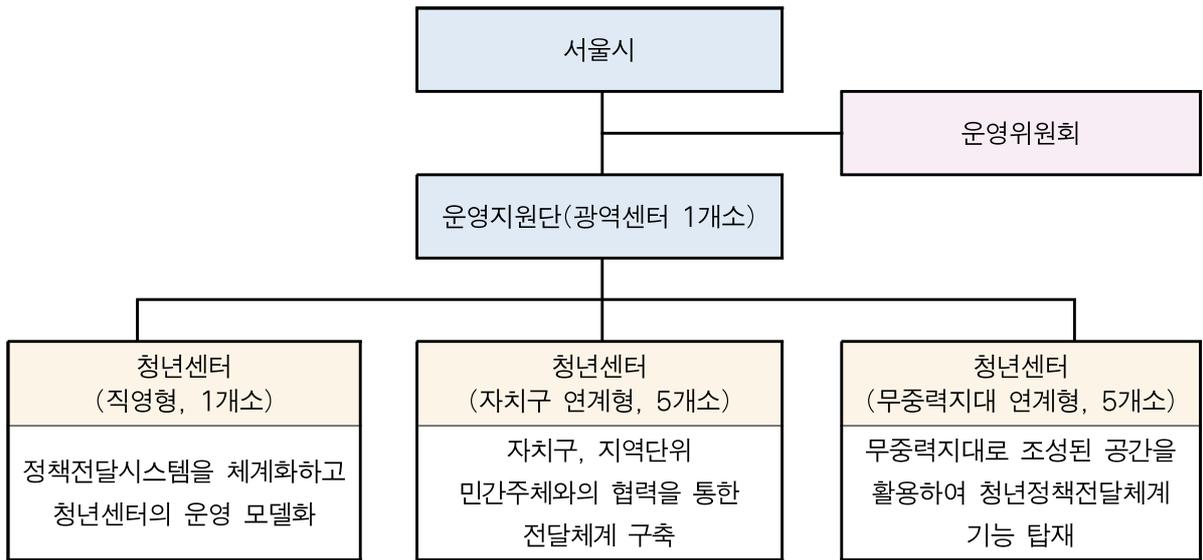
* 재위탁 1곳 포함 '20년 신규운영 예정인 무중력지대 5곳과의 연계성 강화(서울청년센터 운영원리 적용 등)

○ 1개소 센터별 운영규모

구분	내용
인건비	· 인력 3~6인 (상담, 정책전달, 프로그램 운영, 공간운영, 운영지원 등)
사업비·운영비	· 필수사업(상담, 정책서비스 전달, 사업수행) 및 지역특화사업 운영 (전체 지원예산 중 사업비 45% 이상 편성)

- 운영체제도를 살펴보면, 청년활동지원센터에 광역센터의 역할을 부여할 예정이며, 주요 기능은 청년 수요에 맞는 '종합 상담' 지원체계 구축, 정부·지자체 '청년지원사업 정보 집적' 및 대민 안내·홍보, 지역·권역별 청년 '특화사업', 지원인력 전문성 강화를 위한 '청년 매니저 양성' 과정 운영 등을 운영할 예정임.

○ 전체적 운영체계도



○ 기관별 업무 체계

서울시	운영지원단(광역센터)	청년센터(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 총괄 ▪ 운영위원회 운영 ▪ 운영인력·사업비 지원 ▪ 지도·감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년센터 운영지침 마련 ▪ 균질한 청년정책 서비스 관리 ▪ 전문인력 양성, 교육매니징 ▪ 센터간 사례관리 및 연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종합상담·정책서비스 운영 ▪ 청년정책 홍보 및 전달 ▪ 지역 특화사업 운영 ▪ 정산 및 운영결과 보고

○ 주요 추진사업

- ① 청년 수요에 맞는 '종합 상담' 지원체계 구축(정책 게이트웨이 구축)
 - 마음건강상담, 생활상담(주거, 노동, 부채, 지역커뮤니티 등) 지원
 - 문턱 낮은 청년특화 고민상담 체계 마련
 - 사업수행 주체와 이용주체 간 면대면(face to face) 상호작용 확대

* 향후 청년들에게 필요한 지원사업 설문조사: 1위. 어학시험지원, 2위. 마음건강 자기진단과 상담지원, 3위. 주거, 노동, 금융 등 청년생활 상담 지원. (서울시 청년활동지원사업 참여자 분석 연구, 2019.02.)

분야	사업 예시
마음건강	사회적·심리적 고립감 완화를 위한 마음건강 상담 및 커뮤니티 모임운영 *심리상담 비용지원, 커뮤니티 지원사업 등의 정책사업과 연계
금융(부채)	청년들의 건강한 금융생활 지원을 위한 상담 및 교육
주거	청년주거문제에 대해 특화된 상담과 정보 제공 *임대차분쟁, 임대차계약지원, 청년주거정책정보제공 등
노동·일자리	노동하는 청년 당사자의 권리보장과 문제해결을 위한 상담 및 교육
지역 커뮤니티	지역 내 커뮤니티 및 인적·물적 자원 활용을 위한 안내 및 상담

② 정부·지자체 **‘청년지원사업 정보 집적’** 및 대민 안내·홍보

- 청년의 수요와 욕구에 따라, 최선의 공공정책 서비스에 연결되고 접근할 수 있도록 종합안내 및 정보 집적(서울청년포털 연계, 정보 수집)
- 정책사업간 연계 및 통합적 정보 제공을 위한 기관별 협력체계 마련
- 지원체계에 새로 유입된 청년들의 상태와 욕구를 분석하는 시스템 구축(사례관리)
* 청년정책관련 정보 DB 및 참여자 사례관리 시스템 구축 동반

③ 청년 삶에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 및 서비스’** 제공

- 청년수당 참여자(비진학·장기미취업 청년) 지원 및 매니징 프로그램 제공
- 금융·부채경감 지원사업 참여자 대상 교육·상담·컨설팅 지원
- 청년지원 관련 일상관계망 지원, 자기탐색, 일경험, 교육·강연 사업 등 수행
- 생활청년 수요에 맞는 프로그램 기획 및 발굴

④ 지역·권역별 청년 **‘특화사업’**

- 장소, 정보접근성 높은 생활밀착형 관계지원
- 지역사회 중심의 섬세한 대상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 기획 및 실행
- 현장 대민형 지원을 통해 사각지대에 놓인 청년들 발굴

⑤ 지원인력 전문성 강화를 위한 **‘청년 매니저 양성’** 과정 운영

- 분야별 청년지원 전문인력인 청년매니저(상담 및 교육인력) 양성
- ‘청년매니저’, 새로운 직업군이자 전문자격(상담과 정책연계)으로 발전
- 청년사업 관련 전문인력 교육·매니징 시스템 체계화

* 청년매니저: 청년세대의 특성에 대해 공감하며 청년 지원 특화 전문인력

(예시: 청년비즈니스강사, 청년사회복지사, 청년주거상담사, 청년생활경제상담사, 청년노동상담사)

⑥ 지역 기성자원-청년단체 등 '민간 자원연계' 체계 구축

- 청년대상 프로그램 개발·관리·지원을 위한 민간영역의 네트워크 및 협력 파트너 구축 지원
- 청년 지원 활성화 및 성과 확대를 위해, 지역별 기성 단체(복지관, 민간기관)와 청년단체 간 자원 연계
- 자치구-찾아가는동주민센터-청년센터 간 정책연계 및 협업 체계 구축

- 권역별 청년센터의 조성은 다음의 사항을 고려한 심도있는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음.
- 첫째, 청년청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서도 “무중력지대 양천의 증축 조성”을 위해 동 사업 예산을 증액한바 있으나, 2%의 예산(950만원)만 집행하고, 나머지 98%(4억6천6백만원)의 예산을 명시이월 처리하고 있음.

〈추가경정예산 집행 실적〉

(단위 : 천원)

구 분	추경편성액	집행액	집행률
청년공간 무중력지대	467,000	9,504	2.0%
- 서울 청년센터(Y.C) 설치 운영	7,000	-	0%

- 당초 2019년에 편성한 예산의 집행률은 48.7%로, 추경예산 4억 6천6백만원을 포함하여 40억 2천 9백만원을 명시이월처리 하고 있음.

〈청년공간 무중력지대 - 서울 청년센터(Y.C) 설치 운영 집행 실적〉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현액	집행액(집행률)
청년공간 무중력지대	9,054,914	4,412,024 (48.7%)
- 서울 청년센터(Y.C) 설치 운영		

〈명시이월 조서〉

이월내용	예산과목	예산액(천원)	이월액(천원)	이월사유
무중력지대 조성 공사비, 감리비, 집기물품 구매비로 공사지연	시설비	4,081,000	4,029,060	부지사용 협의 및 부지 변경, 설문조사 시행, 공사비 부족 등으로 인한 착공지연
	감리비	70,800	70,800	
	자산및물품취득비	400,000	360,000	

- 또한 동 사업은 매년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이 반복적으로 지속되는 사업으로 청년청은 당해연도에 집행할 수 있는 준비 등이 미흡하면서도 예산 확보에만 주력하고 예산의 효율적 사용을 저해하는 등 부서이기 주의적 예산 편성 행태를 보이고 있는 것은 아닌지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음.

〈2017년, 2018년 예산의 변경사용〉

(단위: 천원)

연도	예산과목		예산액	예산의 변경사용			예산 현액	지출액	불용액 (불용률)	비고
	세부 사업	통계 목		감액	증액	승인일				
2018년	창년공간 무중력 지대 설치 운영	자산및 물품 취득비	99,650	△52,000		2018-04-09	47,650	0	0 (0.0%)	명사이월 47,650 (100.0%)
		시설비	1,010,000		52,000		1,062,000	331,371	58,343 (5.5%)	사고이월 672,286 (63.3%)
2017년	창년공간 무중력 지대 설치 운영	자산및 물품 취득비	370,000	△80,000		2017-11-02	290,000	0	20,000 (6.9%)	명사이월 270,000 (93.1%)
		시설비	1,318,000		80,000		1,398,000	250,319	130,012 (9.3%)	사고이월 1,017,668 (88.7%)
	창년공간 무중력 지대 설치 및 운영 (동북권-주민참여)	시설비	300,000	△6,000		2017-04-04	294,000	64,110	102 (0%)	사고이월 229,786 (99.9%)
		감리비			6,000		6,000	0	6,000 (100.0%)	
	서울시 청년 교류공간 설치운영	공공 운영비	200,000	△150,000		2017-04-04	50,000	1,704	48,295 (96.6%)	
사무 관리비		50,000		150,000		200,000	167,463	32,536 (16.3%)		

연도	예산과목		예산액	예산의 변경사유			예산 현액	지출액	불용액 (불용률)	비고
	세부 사업	통계 목		감액	증액	승인일				
		자산및 물품 취득비	150,000	△8,000		2017- 04-04	142,000	0	75,858 (53.4%)	사고이월 66,141 (46.6%)
		감라비			8,000		8,000	0	8,000 (100%)	

- 둘째, 청년청은 동 사업의 ‘자치단체경상보조금’과 ‘자치단체자본보조’의 편성 근거로 「서울시 청년 기본 조례」 제20조를 제시하고 있으나, 동 조항은 청년 시설의 설치·운영 및 지원의 근거이지 자치구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근거라고 볼 수 없다는 점,

「서울시 청년 기본 조례」

제20조(청년시설의 설치·운영) ① 시장은 청년 시설을 설치·운영 및 지원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시설운영 및 그 활동 등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청년시설을 설치·운영 및 지원하는 과정에서 청년의 참여와 자유로운 활동이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이 조례에 따라 청년들의 다양한 활동 보장과 권익증진 등을 위하여 시장이 설치·운영하는 청년시설의 사용료의 요율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0 이상으로 한다. <신설 2015. 10. 8.>

④ 청년시설의 입주 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5. 10. 8.>

1. 서울에서 활동하는 만19세~39세까지의 개인 및 단체(대표자)
2. 그 밖에 청년들의 권익증진과 발전 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셋째, 청년센터의 구성과 관련하여 은평과 마포는 이미 청년허브, 청년 활동지원센터 등이 있고, 마포에는 청년교류공간 등이 있는바, 두 지역에 추가적인 조성 및 지원이 바람직한 것인지 여부,
- 넷째, 영등포와 강동은 공간도 확정되지 않았다는 점,
- 다섯째, 관악구를 제외한 4개의 자치구는 서울시에서 ‘사업비’와 ‘자산취득비’, ‘인테리어비’ 전액을 지원하고 있으며, 동 사업비에는 여전히 인건비가 포함되어 있다는 점,

- 여섯째, 지속적으로 서울시에서 임대공간으로 조성한 자치구 연계형 청년 센터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지 여부와 동 지원이 바람직한지 여부,
- 일곱째, 청년활동지원센터를 광역센터로 자치구의 청년센터를 관할하게 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와 추가적인 의회의 동의를 필요한 점,
- 여덟째, 청년센터는 서울시 청년들을 위한 통합적인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려는 것인바, 이미 설치되어 있는 무중력지대, 청년일자리지원 센터 등 청년관련 유사 공간 및 지원센터와의 중복 투자 여부 및 통합 가능성,

〈서울시 일자리카페 등 유사시설 현황〉

- **조성방법** : 민간·대학·공공시설 유휴공간을 무상 공유하여 일자리카페 설치
- **시설설치** : 일자리 무인종합정보안내시스템 설치, 스터디룸 구비, 시설 개선
- **운영 프로그램** : 취업지원서비스(취업상담, 멘토링, 특강 등), 구직 스터디룸 대관
- **사업근거** : 서울특별시 일자리정책 기본조례 제7조(보조금 지원사업)
- **조성현황** : 85개소(민간 39, 대학 18개소, 공공 28개소) ※ 누적 100개소 조성
- **사업예산** : 1,220백만원
- **최근 3년간 조성현황**(’16.5월~’18.12월)

구 분	’16년	’17년	’18년
일자리카페 조성 (누계)	41개소(41개소)	39개소(80개소)	20개소(100개소)

○ 서울시 일자리카페 운영 현황(’19.6월 기준)

구 분	민간(39)	대학교(18)	공공시설(28)
계	85개		
종로구(6)	파고다어학원 종로(’16) 더빅스터디(’16) 피앤티스퀘어(’18)	성균관대(’16) 상명대(’16)	중로여성인력개발센터(’18)
중 구(2)			중구구립도서관(’17) 청년일자리센터(’16)
용산구(3)		숙명여대(’16)	용산꿈나무도서관(’18) 용산전자 상상가(’18)
성동구(4)	수제화갤러리 카페수다(’16) 언더스탠드파워에비뉴(’17)		성동구립도서관(’17) 장안평자동차산업종합정보센터(’18)
광진구(4)	랭스터디카페(’17)	건국대(’18)	동부여성발전센터(’16) 무중력지대 광진구청년센터(’18)

동대문(3)		한국외대('16)	동대문도서관('17) 동대문구 답십리도서관('17)
중랑구(3)		서일대('16)	중랑여성인력개발센터('17) 중랑구립정보도서관('17)
성북구(10)	카페 머그('16), 더스터디('17) 베이스캠프스터디카페('17) 스터디룸MOIM 성신여대점('18)	국민대('16), 동덕여대('16) 성신여대('16), 한성대('16) 서경대('17), 덕성여대('17)	
강북구(1)			강북문화정보도서관('16)
도봉구(2)			도봉문화정보도서관('16) 무중력지대 도봉('17)
노원구(4)	스터디북킹('17) 커피랑도서관 강북본점('17)	서울과학기술대('16) 인덕대('18)	
은평구(1)			서울혁신센터('16)
서대문(5)	꿈꾸는반지하('16) 미플('17) 슈퍼스타트 이대점('16)	명지대('16) 명지전문대('16)	
마포구(6)	슈퍼스타트 흥대점('16) 한겨레교육 신촌센터('16) 루아호코워킹스페이스('16) 퍼블릭포인트('18)		청년교류공간('18)
양천구(3)	피치스터디카페('16)		창업디딤누리('17) 무중력지대 양천('18)
강서구(3)	커피랑도서관 강서본점('17)		영풍문고 김포공항점('16) 곰달래문화복지센터('17)
구로구(2)		성공회대('16)	천왕역마을활력소('17)
금천구(2)			무중력지대G밸리('16) 금천구립청춘빨당('17)
영등포구(3)	잡카페피플플랫폼('17) 한국메이커스협동조합('18)		
동작구(5)	사랑발청년센터('16) 손스터디카페('17) 나귀와플라타너스('17)	숭실대('16)	무중력지대 대방('18)
관악구(2)	(주)비즈액티브 신림('16) 청년공간이음('17)		
서초구(2)	해커스어학원('17) 모임플러스('18)		
강남구(6)	더 워크코리아('16) 마이크임팩트 역삼점('16) 꿈틀라운지('18) 슈퍼스타트 강남점('18)		LH강남권마이홈센터('17)
송파구(5)	커피랑도서관 가락1호점('17) 커피랑도서관 가락센터점('17) 커피랑도서관 마천사거리점('17)		글마루도서관('17)
강동구(2)	스터디카페 위드유('17) 커피랑도서관 암사점('17)		

※ 총 85개: 서울시(시직영(굵은색) 24개, 대학운영 18개), 자치구 운영 43개

- 아홉째, 청년의 문제는 비단 서울시만의 문제가 아니고 국가적인 책임도 크다고 할 것이며, 향후 국가의 사무도 일부 수행하려고 하는바, 국비 확보 노력 필요성 등에 대한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음.

- 또한, 서울시에서 청년공간을 지속적으로 조성하는 것에 대해서는 언론²⁰⁾ (혁신 앞세운 서울시 ‘청년공간·마을공동체’... 실제 가보니 텅 비어) 및 민간 위탁운영평가위원회의 비판의 목소리²¹⁾가 많이 있는바, 동 사업 추진이

20) 한국일보(2019.3.20.), 혁신 앞세운 서울시 ‘청년공간·마을공동체’... 실제 가보니 텅 비어
<https://www.hankyung.com/society/article/2019031918791>

(중략) 서울시가 ‘혁신’을 내걸고 추진하는 청년공간, 마을공동체 사업 등이 참여 저조로 일부는 ‘유령 공간’으로 방치되고 있다. 그러나 서울시는 오히려 관련 예산을 늘리고 있어 포퓰리즘 사업에 몰두한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이들 사업을 총괄하는 서울시 서울혁신기획관실은 1000여억원에 달하는 예산 대부분을 청년수당, 민간업체 인건비 등 회수가 불가능한 선심성 사업에 집행하고 있다.

21) 2019년 제6차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회의록

〈000 위원〉

- 그리고 지자체에다가 이것을 위탁하건 본인들이 하건 어떻게 하던 간에 중요한 것은 무중력지대의 특성을 살려서 뭔가 뚜렷한 프로그램이라든가 중장기적으로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그러면 그에 따라서 예산도 차별화성을 오히려 줘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4억 9,000이라는 것을 똑같이, 그냥 돈 쓰기 위한 일이 되는 것이죠.

그런 식으로 하지 말고 같이 경쟁도 좀 부쳐서, 통합적으로 정보 공유도 하면서 새로운 것을 해서 뭔가 실효성이 있는 것을 나타낼 수 있도록 하는 이런 경쟁도 좀 부쳐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런데 그런 중장기적인 로드맵 같은 것도 전혀 나타나지 않고 나뉘 주기식이 되는 것 같아서, 이게 상당히 우려스러워서 앞으로 이런 것을 배격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000 위원〉

- 실제로 주요 추진사업들을 보면, 000 위원님 말씀에 좀 없어서 마음건강, 주거, 노동, 일자리, 지역 커뮤니티, 다른 센터에서도, 창업센터나 이런 데에서도 다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 눈에는 이런 것이 ‘청년’이라는 이름만 달려 있을 뿐이지 너무 중복적인 것들이 부서별로 무분별하게 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사실은 이것을 해야 되는 것인가라는 그런 생각까지 들 정도로 좀 그렇습니다.

〈담당 공무원1 (청년청)〉

청년공간의 양적 확대가 아닌 청년들의 필요를 채우는데 필요한 사업이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서울시 청년공간 무중력지대 설치 운영” 사업 중 현재 운영 중인 무중력지대는 구체적인 사업계획 없이 민간위탁금 예산을 편성하고 있음.
 - 사업명을 살펴보면, “무중력지대 G밸리”의 경우 무중력실험실(8백만원), 무중력보습학원(6천만원), “무중력지대 대방동”은 왓에버 프로젝트(1억2천1백만원), 과시적 클래스(2천5백만원), “무중력 서대문”의 경우 도담도담클래스(8백만원), 아트커먼즈(1천8백만원) 등 사업명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업내용을 알 수가 없는바, 의회의 예산 심의권을 제약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신중한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음.
 - 또한, “무중력지대 양천”의 경우 3개의 사업예산을 제출하고 있으나, 3개 사업비의 대부분이 ‘PM(프로젝트매니저)인건비’이며, 홍보 사업비의 경우 4천5백만원을 편성하고 있으나, ‘PM(프로젝트매니저)인건비’는 3천5백만원이고, 순수사업비는 1천만원으로 정상적인 사업추진 방식인지

○ 네, 맞는 말씀이십니다. 그러나 저희는 이번에 하는 것도 권역별로 범주를 한 군데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종합적인 기능들을, 예를 들면 기성 민간시설들, 복지관이라든지, 그다음에 각종 민간자원들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동 주민센터라든지, 이런 곳들과 같이 연계를 해서 서로 전달체계를 저희가 확립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들이 주요 내용으로, 기능으로 담겨져 있습니다.

<담당 공무원1 (청년청)>

○ 그래서 서두에 제목을 가치으로 한 이유도 저희가 모델 확정을 하고, 그 다음에 확정이 되면 세부적인 계획들을 만들 겁니다.

<000 위원>

○ 그러면 청년센터도 생길 수 있나요?

<중략>

검토가 요망될 뿐만 아니라 당초 무중력지대 담당인력이 충실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것인지 논란의 소지가 있다고 하겠음.

- 이러한 'PM(프로젝트매니저)인건비' 위주의 사업비는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청년청은 무중력지대의 인력과 사업 등에 대한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무중력지대의 목적과 정체성에 부합하는 인력 및 사업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무중력지대 양천 사업비 구성 내역〉

양천 청년역량강화 프로젝트	65백만원	- 역량강화 사업 담당 PM인건비(35백만원) - 청년이 지원하는 양천 청년학교(20백만원) - 미술심리상담 프로그램(7백만원) - 양천 청년 디렉터(3백만원)
양천 청년 활력프로젝트	81백만원	- 청년활력 사업 담당 PM인건비(32.7백만원) - 커뮤니티지원사업(20백만원) - 플리마켓(8.3백만원) - 공방연계 여가활동 지원(10백만원) - 무중력영화제(10백만원)
청년 문화공간 운영 및 홍보	45백만원	- 홍보사업 담당 PM인건비(35백만원) - 양천 프렌즈(6.5백만원) - 양천 홍보(3.5백만원)

○ 무중력지대 G밸리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산(안)	산출기초(안)
총 계	594	
민간위탁금	594	
인건비	203	- 무중력지대 G밸리 인원(정규직) 총 5명
운영비	147	: 센터장 1, 정규직 4
사업비(소계)	244	
청년커뮤니티 촉진 및 청년활동지원	29	- G밸리 지역 청년 커뮤니티 활동 지원(19백만원) - 지역 청년 활동기반 조성사업(5백만원) - 청년문제 발굴 및 해결(4.8백만원)
청년역량 강화	106	- 무중력실협실(8백만원) - 무중력보습학원(60백만원) - 청년관계망 확장(24.6백만원) - G밸리 멘토넷 프로그램(13백만원)
청년센터 기능 수행	46	- 종합 상담 지원 체계 구축, 매니저 양성 등(46백만원)
청년문화 공간운영	63	- 잘사는 친구들(53.4백만원) - 공간 참여 프로그램(6.2백만원) - 무중력지대 브랜드구축 및 홍보(3.6백만원)

○ 무중력지대 대방동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산(안)	산출기초(안)	
총 계	494		
민간위탁금	494		
인건비	163	- 무중력지대 대방동 인원(정규직) 총 4명	
운영비	151	: 센터장 1, 정규직 3	
사업비(소계)	180		
지원사업	53.5	1-0. 프로젝트매니저	29백만원
		1-1. 청년활짝이카데미	3.6백만원
		1-2. 청춘활력소	2백만원
		1-3. 과시적 클래스	2.5백만원
		1-4. <u>왓에버 프로젝트</u>	12.1백만원
1-5. 진취적 취준학교	4.2백만원		
특화사업	42.5	2-0. 프로젝트매니저	32.4백만원
		2-1. 무중력 살롱	2.5백만원
		2-2. 무중력 캠프	2.5백만원
		2-3. 무중력 탐사대	3.6백만원
		2-4. 동작청년네트워크	1.3백만원
네트워크사업	17	3-1. 무중력 문화극장	2.4백만원
		3-2. 무중력 혼밥대회	2.4백만원
		3-3. 무중력 연구소	2.4백만원
		3-4. 무중력 경제학교	2.4백만원
		3-5. 무중력 코워킹 프로젝트	2.4백만원
홍보사업	67	4-0. 프로젝트매니저	33.8백만원
		4-1. 일반홍보	27.5백만원
		4-2. 무중력지대 대방동 브랜딩	3백만원
		4-3. 무중력 기자단	2.9백만원

○ 무중력지대 양천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산(안)	산출기초(안)	
총 계	384		
민간위탁금	384		
인건비	133	- 무중력지대 양천 인원(정규직) 총 3명	
운영비	67	: 센터장 1, 정규직 2	
사업비(소계)	184		
양천 청년역량강화 프로젝트	65	- <u>역량강화 사업 담당 PM인건비(35백만원)</u>	
		- 청년이 지원하는 양천 청년학교(20백만원) - 미술심리상담 프로그램(7백만원) - 양천 청년 디렉터(3백만원)	
양천 청년 활력프로젝트	81	- <u>청년활력 사업 담당 PM인건비(32.7백만원)</u>	

구 분	예산(안)	산출기초(안)
		- 커뮤니티지원사업(20백만원) - 플리마켓(8.3백만원) - 공방연계 여가활동 지원(10백만원) - 무중력영화제(10백만원)
청년 문화공간 운영 및 홍보	45	- <u>홍보사업 담당 PM인건비(35백만원)</u> - 양천 프렌즈(6.5백만원) - 양천 홍보(3.5백만원)

○ 무중력지대 도봉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산(안)	산출기초(안)
총 계	384	
민간위탁금	384	
인건비	131	- 무중력지대 도봉 인원(정규직) 총 3명 : 센터장 1, 정규직 2
운영비	103	
사업비(소계)	151	
청년 역량 강화	37	- 청년간담회(15백만원) - 교육, 멘토링 사업(22백만원)
청년 생태계 구축	53	- <u>청년 지원사업(33백만원)</u> - 지역자원과 연계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20백만원)
공간 활성화 및 사업 매니저 운영	61	- 공간활성화 사업(19백만원) - 홍보 매니저(21백만원), 운영매니저(21백만원)

○ 무중력지대 성북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산(안)	산출기초(안)
총 계	384	
민간위탁금	384	
인건비	103	- 무중력지대 성북 인원(정규직) 총 3명 : 센터장 1, 정규직 2
운영비	69	
사업비(소계)	212	
청년 시민 지원사업	160	- <u>시민 지원 사업 PM 인건비 (38백만원)</u> - 커뮤니티 학교(40백만원) - 커뮤니티 프로젝트 지원 (59백만원) - 역량 강화 및 생태계 조성 (23백만원)
공유지 확산 사업	52	- <u>PM 인건비 (42백만원)</u> - 공간 활성화 사업 등 (10백만원)

○ 무중력지대 서대문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산(안)	산출기초(안)
총 계	494	
민간위탁금	494	

구 분		예산(안)	산출기초(안)
인건비		216	- 무중력지대 서대문 인원(정규직) 총 5명
운영비		100	: 센터장 1, 정규직 4
사업비(소계)		178	
1. 서대문 청년 활동지원		56	- 청년활동활성화 지원(42백만원) - 청년 공유 비즈니스 프로젝트(11백만원) - 무중력지대 네트워킹(2.7백만원)
2. 공유청년지대 (무중력지대 흥제)		54	- 흥제 공간운영(36백만원) - 도담도담클래스(8백만원) - 멤버십(10백만원)
3. 창의예술지대 (무중력지대 무악재)		68	- 아트커먼즈(18백만원) - 공동기획프로그램(6백만원) - 무악재 공간운영(44백만원)

○ 무중력지대 강남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산(안)	산출기초(안)	
총 계		384		
민간위탁금		384		
인건비		130	- 무중력지대 강남 인원(정규직) 총 3명	
운영비		66	: 센터장 1, 정규직 2	
사업비(소계)		188		
1. 강남 청년활동 지원 사업	40	• 강남 청년 공간공유 프로젝트		13백만원
		• <강남 혁신청년 네트워크> 운영		24백만원
		• 강남 청년정책 거버넌스		3백만원
2. 청년어반디지털프로젝트	41	• 청년 어반디지털 포럼		4백만원
		• 지역 콘텐츠 크리에이터 인큐베이팅		28백만원
		• 청년 공유 비즈니스 프로젝트		9백만원
3. 공유청년지대	105	• 공유공간 조성 및 운영		64백만원
		• 청년 도담도담 클래스		29백만원
		• 소소한 밥상		6백만원
		• 개포 스토리텔링 아카이브		5백만원

○ 또한, 민간위탁금 신규 편성내역을 살펴보면, 민간위탁동의안이 의결되기도 전에 미리 민간위탁금을 편성하여 제출한 것은 사전절차를 미준수하고 의회의 예산 심의권을 무력화시키고 있는 것은 아닌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 무중력지대 강북과 노원 2곳은 무중력지대 조성 관련 민원 등으로 당초 입지에 조성할 수 없게 되었으나, 대체부지 조차 선정하지 못한 실정임에도 민간위탁금 예산을 편성하여 제출하고 있는바, 불성실한 예산 편성으로 예산의 효율적 사용을 저해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청년청의 주의가 요망된다고 하겠음.
-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무중력지대 관리 부실 등의 문제가 지적된바 있고, 최근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시행한 무중력지대에 대한 여론 조사²²⁾결과, ‘청년공간에 대해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비율은 조사대상 전체의 11.3%에 불과하였고, 무중력지대별 프로그램 인지율 및 참여경험이 낮았으며(한번이라도 프로그램 참여경험 있는 비율: 17.0%), 공간분리, 운영시간, 타인의 시끄러움, 커뮤니티 활동 부족 등 운영 측면에 대해 상대적으로 낮은 만족도를 나타낸 바 있음.
- 또한, 동 사업이 예산낭비, 실효성 없는 포퓰리즘 정책이라는 부정적 의견이 많았으며, 청년공간이 서울시 청년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22) <2019년 청년공간 인지도 및 만족도에 대한 여론 조사 실시>

- 기 간 : 2019.8.~9.
- 주 관 : 서울시의회
- 조사기관 : 서던포스트
- 조사규모 : 1,500명(서울시 거주 일반시민 및 청년(15세~34세))
- 조사방법 : 전화 + 면접조사
- 조사내용

구분	조사항목
서울시 거주 청년 (온라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지도, 인지경로 - 방문 목적(이용 경험자) 인식 - 서울시 청년문제 해결 도움 여부에 대한 인식 - 청년공간에 대한 부정인식 - 청년층에게 도움이 될 청년공간 프로그램 - 서울시 청년정책별 인지도 및 효과 인식 - 이용경험, 이용빈도 - 필요성에 대한 - 서울시 전역 확대설치 필요성 - 서울시정 관심도 - 서울시 청년정책 관심도
서울시 청년공간 이용자 (현장 면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문 동행자 - 이용목적 - 공간제공, 운영 만족도 및 각 시설별 프로그램 만족도 - 전반적 만족도, 재방문 의향, 타인추천 의향 - 개선 및 건의사항 - 인지경로 - 재방문 여부, 시설 이용기간, 방문빈도

않는다는 부정적인 의견도 많이 나타난바,

- 청년 공간 무중력지대 사업이 실질적으로 청년들에게 유익한 사업이 되도록 정교한 사업 설계가 필요하며, 소수의 청년이 독점하는 시설이 아닌 서울시 전체 청년들을 위한 공간이 되도록 적극적인 사업 홍보도 요망된다고 하겠음.
- 또한, 언론보도²³⁾에 따르면, 청년공간 무중력지대 등에서 근무하는 “뉴딜일자리” 청년들의 경우 공고와는 다른 일을 하는 경우가 있다는 지적도 있으며, 단순 아르바이트이거나 뉴딜일자리 경력이 실제 취업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비판이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민간위탁기관에서 모자라는 일손을 채우는 허드렛일을 위한 뉴딜일자리 마련이 아니라 청년 및 경력단절자의 취업에 실질적으로 유익한 뉴딜일자리 발굴과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사. 청년 지역교류 지원 사업

- 동 사업은 서울과 지역, 청년과 선배세대가 함께 청년문제 해결을 위한 새로운 공공의 장 개척을 위한 청년지역교류 프로젝트를 지원하려는 것으로, 7억 7천만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으며,
- 2019년에 청년 정책 추진을 위한 민관협력 시범사업(4개 광역 지원)으로 실시하였으나, 내년에는 10개 내외의 광역으로 지원을 확대하려는 것임.

〈편성 예산〉

(단위 : 천원)

구 분	2019년		2020예산(안) (B)	증감 (B-A)	(B-A)*100/A
	본예산	최종예산 (A)			
계	(x-) 0	(x-) 0	(x-) 770,000	(x-) 770,000	(x-) 0

23) 조선일보(2019.8.27.) '뉴딜 일자리' 가보니... 기저귀 갈고 설거지 등 허드렛일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8/27/2019082700181.html

사무관리비	(x-) 0	(x-) 0	(x-) 70,000	(x-) 70,000	(x-) 0
민간경상사업보조	(x-) 0	(x-) 0	(x-) 700,000	(x-) 700,000	(x-) 0

〈세부 산출 기초〉

과목구분	2019년 본예산	2020년 예산(안)
사무관리비		○ 청년교류사업 자문, 심사, 간담회 기획, 홍보비 등 = 70,000천원
	증감사유	
	○ 청년교류사업 자문, 심사, 홍보를 위한 예산증액	
민간경상사업보조		○ 청년교류사업 단체 보조금 70,000천원*10개팀 = 700,000천원
	증감사유	
	○ '19년 청년 정책 추진을 위한 민관협력 사업으로 추진된 청년교류사업을 본 사업으로 편성함 ○ '19년 시범사업(4개 광역 지원) → '20년 본사업 (10개 내외 광역 지원) 확대에 따른 증액	

- 동 사업은 서울과 지역의 청년단체 2개 이상의 컨소시엄을 맺은 단체를 지원하는 보조금 사업으로 2019년 선정단체와 실시 사업은 다음과 같음.

<p>□ 사업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기간 : 2020. 01. ~ 12. ○ 지원대상 : 서울과 지역이 교류하여 청년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프로젝트 모델을 발굴하고 실행하고자 하는 단체(서울과 지역의 청년단체 2개 이상의 컨소시엄) ○ 사업의 주요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년문제해결을 위한 청년지역교류 프로젝트 모델 발굴 및 추진 ○ 청년지역교류 프로젝트 지원사업 - 연결의 가능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과 지역의 정보 공유 및 단체, 프로젝트 연결 지원(선정 전/후)
--

- 모델 발굴 및 프로젝트 실행을 위한 보조금 지원
-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컨설팅, 워크숍 진행
- 효과적인 사업추진을 위한 민-관 협력거버넌스 지원

〈2019년 청년 지역교류 프로젝트 지원사업〉

(단위 : 천원)

연번	프로젝트명	대표단체	컨소시엄단체	사업지역	내용	보조금(자부담)
1	판타지촌라이프를 위한 청년마을 '팜프라촌'	코부기 (팜프라)	우프코리아 사만키로미터	경상남도 남해군 서면	도시를 벗어나 판타지촌 라이프를 살고자 하는 청년들을 위해 청년마을을 만들어 주거/토지/기술/인적(네트워크) 기반을 제공하고자 함. 또한 프로젝트 전 과정을 사만키로미터가 기록 및 자료집으로 제작하여 실질적인 귀농귀촌 정책을 위한 데이터를 만들어갈 계획임.	80,000
2	팬찮아마을, 쉬면서 일하는 마을이 되다	(주) 공장공장	(주)블랭크 건축사 사무소	전라남도 목포시	기 조성된 「팬찮아마을」에 「팬찮아호텔」이라는 쉬면서 일하는 로컬 커뮤니티 호텔을 만들 예정. 다른 지역, 특히 서울에서 내려온 청년들이 장기간 머물거나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팬찮아 학교」라는 교육공동체를 만들어 경제공동체를 조직함. 또한 빈집 큐레이션 플랫폼을 만들 예정.	80,000
3	로컬베이스 캠프 강화	협동조합 청풍	(사)새로운 사회를 여는연구원	인천광역시 강화군	청년들이 강화지역 안에서 지속적인 삶을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정착의 과정을 관심, 탐색, 실험, 정착, 지속, 연결의 단계로 나누고 서울과 강화의 교류와 네트워크가 형성될 수 있는 단계별 적응 프로그램 실행. 풍부한 강화 지역자원과 서울의 역량 있는 청년이 결합하여 새로운 상품을 개발 할 수 있는 플랫폼 조성 등	70,000 (7,280)
4	자립과 상생의 가능성 <히든 페스타 : 서울×원주 >	동네형들	문화협동조합 피올라	강원도 원주	서울지역의 청년기획자들과 원주를 포함한 강원 지역의 청년기획자들이 함께하는 간담회 및 워크숍 진행 간담회 및 워크숍에서 기획한 프로젝트를 원주 원도심 곳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실행	70,000

- 동 사업은 청년단체를 지원하는 여러 가지 사업(청년 프로젝트 투자사업, 리빙랩 등) 중 하나로 유사 사업들과 차별성이 있는지 여부와 서울시민의 혈세를 서울시민이 아닌 전국단위의 청년들과의 교류하는 사업(청년정책 교류회)에 투자하는 것이 시민의 눈높이에 부합하는지 여부 등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음.
- 사업 집행 실적을 살펴보면, 8천만원 상당의 보조금을 교부하였으나, 한 단체를 제외하고는 자비부담이 전혀 없었으며, 예산 투자 대비 그 성과를 무엇으로 측정할 수 있는지 여부와 성과가 구체적으로 확정되지 않은 가운데 내년에는 10개 지역으로 확대할 예정임.
-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 10대 원칙」에 따르면 “당해 지방자치단체 사무와 관련 없는 경비지출의 금지”를 명시하면서 “법령에 근거 없이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및 교육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경비를 지출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동 사업을 서울시에서 시행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가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음.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제75호, 2019. 5. 28. 시행)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 10대 원칙

① 국가정책에 반하는 재정지출의 금지(지방재정법 제3조)

-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정책에 반하거나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 단체의 재정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재정지출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이 경우, 국가정책이라 함은 정부가 법령·지침 또는 예산으로 추진하는 사업일체를 말한다.

② 당해 지방자치단체 사무와 관련 없는 경비지출의 금지(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2조)

- 법령에 근거 없이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및 교육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경비를 지출할 수 없다.

③ 세출예산의 목적외 사용 금지(지방재정법 제47조)

- 세출예산에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경비를 사용하거나 세출예산에서 정한 각 정책사업 간에 서로 이용*할 수 없다. 다만, 예산 집행에 필요하며 미리 예산으로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었을 때에는 이용할 수 있다.

* 예산의 이용 : 정책사업간에 예산을 상호 융통하여 사용하는 것

④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지방재정법 제7조, 지방회계법 제6조)

- 세출예산은 회계연도 개시전은 물론 당해 회계연도를 경과한 후에는 집행할 수 없으며 전년도에 발생한 업무와 관련하여 현년도 예산에서 집행할 수 없다.

* 예외 : 예산의 이월, 지난회계연도 지출, 회계연도 개시 전 예산지출 등

⑤ 수입의 직접사용 금지(지방회계법 제25조)

- 지방자치단체 모든 수입은 지정된 수납기관에 납부하여야 하며, 법률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직접 사용할 수 없다.

* 예외 : 수입대체경비(지방회계법 제26조)

⑥ 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지방재정법 제17조)

-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공기관에 지출하는 경우에만 개인 또는 법인·단체에 기부·보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에 따른 지출은 해당 사업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1. 법률에 규정하고 있는 경우

2. 국고 보조 재원(財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4.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1. 그 목적과 설립이 법령 또는 법령의 근거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정하여진 기관

2. 지방자치단체를 회원으로 하는 공익법인

⑦ 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지방재정법 제18조)

-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
-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지방재정법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
-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⑧ 법령에 근거한 공무원 관련경비 집행(지방공무원법 제44조)

- 공무원에 대한 보수는 법령에 의하지 아니하고 어떠한 금전 또는 유가물도 지급할 수 없다.
 - 봉급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수당은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대여 학자금은 「공무원연금법」에 의하여 집행한다.
 - 직책급업무수행경비 등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예산편성운영기준에서 제시하는 기준에 따라 집행한다.
 - ※ 법령의 위임 없이 공무원 관련경비 조례 제정 금지

⑨ 정당한 채권자 이외의 예산집행 금지(지방회계법 제33조)

- 세출예산을 집행하는 경우 법령·조례·규칙 또는 계약·기타 정당한 사유로 당해 자치단체에 대하여 채권(정당한 청구권)을 가진 자 외에는 예산을 집행할 수 없다.
 - ※ 예외 : 일상경비 출납원에 대한 자금의 교부, 신용카드의 사용을 통한 예산집행

⑩ 예산 집행절차 준수

- 예산을 집행하는 경우 관련법령·조례·규칙·예규 등으로 기준과 절차를 정한 경우에는 그 절차와 기준을 반드시 준수하여 예산을 집행하여야 한다.
- 행사관련 시설비, 민간위탁사업비, 민간위탁금, 임차료 등 해당 사업비의 통계목에 상관없이 실질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지출 원인이 되는 계약으로서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한다)제2조 및 제4조에 따라 재무관(분임재무관)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 특히, 청년청의 사업 중 총 10억원이 넘는 전국적인 연합 및 행사성 사업 예산이 다음과 같이 편성되어 있는바, 이러한 사무는 서울시의 사무라기 보다는 행정안전부에서 수행해야 할 사무는 아닌지 여부와 서울시 사업 중 전국단위 사무의 비중을 높여가는 것이 서울시민을 위한 예산 사용을 저해하는 것은 아닌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지방자치단체 연합 등 전국 사업〉

부서	사업명	2020년 예산액 (천원)	사업내용	비고
청년청	서울청년 시민회의 및 청년거버넌스 운영 지원	210,000	-청년정책 생활권화 및 전국화를 위한 추진체계 연구	
	서울청년 시민회의 및 청년거버넌스 운영 지원	170,000	-서울청년주간 운영전국 교류회	
	서울-지역 협력강화 및 청년 교류기반 구축	100,000 200,000 120,000	-지방정부 청년정책 협력포럼 및 공무원연수 -청년정책교류회(의제/ 분야/지역 교류회) 추진 -찾아가는 청년정책학교 추진, 전국 수요조사 후 사업 집행	
	서울시 청년교류공간 운영	323,730	-서울과 지역 및 국내외 청년들이 자유롭게 드나들며 다양한 활동과 경험을 교류하고 학습 하는 청년교류 공간 운영	

아. 청년금융 및 부채경감 지원

- 동 사업은 청년들의 미래설계를 위해 청년에 대한 금융지원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청년의 생활안정 등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서울시 및 관계기관 간 업무협약을 통해 금융대출 및 이자 지원을 하기 위해서 ‘이차보전금’ 등 22억원의 예산을 편성하려는 것이며, 2019년 신규로 집행한 “청년 미래투자기금 지원” 사업에서 사업명을 변경한 것임.

〈편성 예산〉

(단위 : 천원)

구 분	2019년		2020예산(안) (B)	증감 (B-A)	(B-A)*100/A
	본예산	최종예산 (A)			
계	(x-) 1,731,600	(x-) 1,731,600	(x-) 2,201,000	(x-) 469,400	(x-) 27
사무관리비	(x-) 2,600	(x-) 2,600	(x-) 82,000	(x-) 79,400	(x-) 3,053
시책추진업무추진비	(x-) 4,800	(x-) 4,800	(x-) 0	(x-) △4,800	(x-) △100
이차보전금	(x-) 1,724,200	(x-) 1,724,200	(x-) 2,119,000	(x-) 394,800	(x-) 22

- 동 사업의 내용을 살펴보면, 서울시 및 관계기관 간 업무협약을 통한 금융대출 지원 및 이차보전을 하려는 것이며, 2020년에는 “청년 프리랜서(개인사업자) 미래투자 금융지원” 사업도 추진하려는 것으로 보임.

〈세부 산출기초〉

과목구분	2019년 본예산	2020년 예산(안)
사무관리비	○ 학자금 심의위원회 운영 2,600,000원 = 2,600천원	○ 건강한 금융생활 지원을 위한 상담, 컨설팅, 교육 20,000,000원 = 20,000천원 ○ 홍보비 5,000,000원*3회 = 15,000천원 ○ 위원회 운영 = 7,000천원

과목구분	2019년 본예산	2020년 예산(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자금 위원회 운영 100,000원*15명*4회 = 6,000천원 - 다과비 1,000,000원 = 1,000천원 ○ 사업성과 실태분석조사 10,000,000원 = 10,000천원 ○ 청년 미래투자기금 조성을 위한 실태조사 30,000,000 = 30,000천원
		증감사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년 4개 사업(학자금대출 이차지원, 청년 긴급생활안정자금 및 신용회복 지원, 건강한 금융생활 지원을 위한 민관협력 활성화, <u>청년 미래투자 금융지원</u>) 통합 운영 	
시책추진업무추진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출이자 관련 업무추진 4,800,000원 = 4,800천원 	증감사유
		○ 시책추진업무추진비 감액
이차보전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자금대출 이차지원 1,724,200,000원 = 1,724,200천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자금대출 이차지원 90,000원*16,000명 = 1,440,000천원 ○ 학자금대출 신용회복 지원 700,000원*250명 = 175,000천원 ○ 긴급생활안정자금 이차지원 12,000,000원*12개월 = 144,000천원 ○ <u>청년 프리랜서(개인사업자) 미래투자 금융지원</u> 10,000,000원*6%*600명 = 360,000천원
		증감사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년 4개 사업(학자금대출 이차지원, 청년 긴급생활안정자금 및 신용회복 지원, 건강한 금융생활 지원을 위한 민관협력 활성화, <u>청년 미래투자 금융지원</u>) 통합 운영 ○ '19년 기준 4개 사업 예산(2,801,600천원)에 비해 600,600천원 감액 	

- 동 사업은 업무협약 시 공정한 사업자 선정이 전제되어야 할 것이며, 「지방자치법」 제39조에 따르면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의 경우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하고 있으므로 협약 체결시 사전 절차를 준수하고, 의회의 의결없이 자의적인 행정집행으로 의회의 의결권이 훼손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이나,

□ 사업내용

- 사업기간 : 2020.1.1 ~ 2020.12.31
- 지원대상 : 서울시 거주 만19~34세 개인사업자대출을 받은 자/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학자금을 대출받은 자로서 대학 재학(휴학 포함)중 또는 졸업한 지 5년 이내의 서울시 거주자/서울시 거주 또는 서울소재 대학 졸업 만19~34세 이하, 학자금 대출로 인한 신용유의자/서울시 거주 중인 만40세 미만인 신용회복지원자
- 수행주체 : 서울특별시
- 사업목적 : 청년의 부채경감 해소 및 생활안정과 장기적 관점의 직업선택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금융지원, 건강한 금융생활 지원을 위한 상담, 컨설팅, 교육 진행 등

「지방자치법」

제39조(지방의회의 의결사항) ① 지방의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조례의 제정·개정 및 폐지
2. 예산의 심의·확정
3. 결산의 승인
4.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사용료·수수료·분담금·지방세 또는 가입금의 부과와 징수
5. 기금의 설치·운용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재산의 취득·처분
7.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의 설치·처분
- 8.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
9. 청원의 수리와 처리

10.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법령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사항 외에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의회에서 의결되어야 할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 청년청은 지난 8월에 이미 “카카오뱅크”와 대출 사업 지원을 위해 사업기간은 2020년 12월까지로 정하여 의회의 보고와 동의없이 협약을 체결(2019년 8월 12일부터 2020년 12월 31일)한 것으로 보임.

청년 개인사업자 지원을 위한 청년 미래투자 금융지원 협약서

서울특별시(이하 “서울시”라 한다)와 한국카카오은행 주식회사(이하 “카카오뱅크”라 한다)는 서울시에 거주 중인 청년의 삶의 가능성을 지원하기 위해 적극 협력하기로 하고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본 협약은 서울시 청년에 대해 청년 미래투자 금융지원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서울시와 카카오뱅크 간의 권리·의무 관계를 명확히 하여 동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본 협약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대출금”은 카카오뱅크가 카카오뱅크의 “개인사업자 대출” 거래를 하는 사람에게 대출하는 금전을 말한다.
2. “대출사업”은 서울시와 카카오뱅크가 요건을 갖춘 서울시 거주 청년에게 카카오뱅크의 “개인사업자 대출”과 관련하여 일정한 지원을 해주는 사업을 말한다.
3. “대출고객”은 카카오뱅크의 “개인사업자 대출”을 통하여 금전을 대출 받은 청년을 말한다.
4. “정산월”은 서울시와 카카오뱅크가 대출사업 지원을 위해 명단을 확정하고 이자액을 지급하는 등의 업무를 진행하는 월을 말한다. (매월 진행)

제3조(사업의 기간) 본 협약에 따른 대출사업은 2019년 8월 12일 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운영하기로 한다. 서울시와 카카오뱅크는 2020년 12월 31일 이전에 차년도 사업 추진 여부를 협의해 결정한다.

제4조(수혜자) 본 협약에 따른 대출사업의 수혜자는 대출고객으로서, 주민등록 등·초본 상 서울시에 거주하는 만 19~34세 이하 청년 중 사업 대상자로 최종 선정된 자이다.

제5조(이자율 및 이자지원) ① 수혜자에게 적용되는 연 이자율 및 대출금액 등은 카카오뱅크가 카카오뱅크의 대출규정에 의거하여 수혜자의 조건에 따라 개별 적용한다.
② 수혜자로 선정된 경우, 서울시가 수혜자가 받은 대출 연 이자율에서 0.5%p를 제외한 나머지 이자액을 부담하고, 수혜자 본인은 수혜자의 대출 연 이자율에서 0.5%p에 해당하는 이자액을 자기 부담하기로 한다.

카카오뱅크

③ 서울시는 수혜자에 대해, 수혜자로 선정된 때부터 해당 연도 12월까지 위 제2항에 따라 이자액을 지원한다.

제6조(지원절차 등) ① 카카오뱅크는 본 협약에 따른 대출사업에 관하여 대출고객에 대한 홍보 및 신청 안내를 진행한다.

② 서울시는 대출고객으로부터 대출사업에 대한 신청을 받는 경우, 카카오뱅크로부터 기 제공받은 제3자 정보제공동의서 양식을 활용하여 이를 대출고객으로부터 징구 받는다.

③ 서울시는 대출사업을 신청한 자의 거주지 및 연령 등을 확인하여 수혜자인지 여부를 확정하고 정산월 전월 말일까지 1차 대상자 명단을 카카오뱅크에 전달한다.

④ 카카오뱅크는 서울시가 보낸 수혜자 명단을 확인한 후 아래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표시하고 대출금액, 연 이자율 및 서울시 부담 이자액 등에 관한 자료를 정산월 15일까지 서울시로 송부한다. 자료의 구체적인 범위, 항목은 카카오뱅크와 서울시가 상호 협의 하여 정한다.

1. 정산월의 전월말 기준으로 원리금 전액을 상환 완료한 경우

2. 정산월의 전월말 기준으로 대출금 중 한 건 이상이 1개월 이상 연체에 해당하는 경우

3. 명단 확인 시점 입금 가능한 예금 계좌 미보유 상태인 경우

⑤ 카카오뱅크는 서울시 부담 이자액 계산 시 정산월의 전월 기준으로 산출된 이자 금액 중 실제 납부된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되, 정산월 이후 이자가 선납된 금액과 고객에게 실제 환출된 이자 금액은 대상에서 제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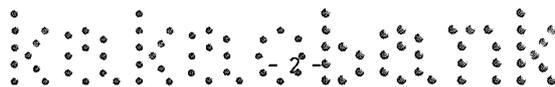
⑥ 서울시는 카카오뱅크가 제4항에 따라 보낸 자료를 확인한 후 모든 수혜자에 대한 대출 이자 지원액 총액을 정산월 25일까지 카카오뱅크에 지급한다.

제7조(이자 청구 및 지급) ① 카카오뱅크는 서울시로부터 지급받은 자금으로 수혜자에게 개별적으로 이자 지원금을 지급한다.

② 카카오뱅크는 수혜자가 대출금 이자액 지급 시점 기준 회원탈퇴 등의 사유로 지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서울시로 해당 내용을 통보하고 서울시로 해당 자금을 반환한다.

제8조(협약의 해지) 서울시와 카카오뱅크는 협약의 유지가 불가능한 중대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양 기관 간 협의 하에 협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할 수 있다.

제9조(협약준수 의무) 서울시와 카카오뱅크는 본 협약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서울시와 카카오뱅크는 서울시 거주 청년의 미래투자를 위한 금융지원을 위하여 합의하며, 본 협약서에 다음과 같이 기명날인 후 각 1부씩 보관하기로 한다.



제10조(기타사항) 본 협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상호 협의한 바에 따른다.

2019년 8월 12일

서울특별시장

박원순

한국카카오은행(주) 공동대표이사
공동대표이사

이용우
윤호영



- 또한, 2019년 예산안 심사시 의회에 보고하지 않은 청년 프리랜서(개인사업자) 이자지원 사업을 추진한바 있으며, 2020년도에는 청년프리랜서에 대한 금융지원에 대해 규모(600명)와 예산을 확대(3억6천만원)하려는 것이나,

〈청년 프리랜서 (개인 사업자) 이자 지원 실적〉

○ 지원실적

- 10월 29일 첫지급: 10명(건), 832,052원 이자지원
- 11월 25일 지급: 12명(건), 262,870원 이자지원

○ 지원대상

- 서울 거주* 만 19~34세로서 카카오뱅크 개인사업자대출을 받은 자 (개인사업자 또는 청년 프리랜서)
 - * 매월 신청기간 내에 발급받은 주민등록 등·초본 상 주소지가 서울특별시인 자
- 〈'19.6월말 현재, 카카오뱅크 개인사업자대출자 중 '서울거주 만19~34세' 현황〉

5월~6월 총 대출인원	총 대출금액	월평균 대출인원	1인 평균 대출금액	평균 연금리
140여명	11억여원	70여명	770만원	6.7%

* 카카오뱅크 개인사업자대출 상품(중금리 대출) '19.5월 최초 출시

○ 지원내용 : 대출에 따라 발생한 이자금액 지원

- 계획인원 및 예산범위 내에서, 대출자의 대출 연 이자율에서 0.5%p를 제외한 나머지 이자액을 매달 지원(0.5%p에 해당하는 이자액은 청년당사자 부담)

○ 동 사업에 대해서는 다음의 사항을 고려한 신중한 예산 편성이 요망된다고 하겠음.

- 첫째, 동 사업 중 “청년 미래투자기금 조성을 위한 실태조사”(사무관리비 3천만원)는 구체적인 계획이 전혀 없는 상태로, 청년청에 실태조사 예산*이 과도한 것은 아닌지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으며,

〈청년청 소관 및 청년자율예산 중 실태조사 사업 내역〉

부서	사업명	실태조사명	예산액	비고
청년청	서울청년실태조사	서울청년실태조사	9억5천만원	청년자율 예산
	청년 정책 추진을 위한 민관협력	정책 실태조사 및 홍보	1억9천3백만원	
	자치구 청년정책 거버넌스 활성화 지원	자치구 청년활동 실태조사	5천만원	
	청년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운영	청년 생활교육 실태조사 및 교육과정 개발	3천만원	청년자율 예산
	청년수당	모집신청 홍보 및 실태조사 등	5천만원	
	청년 마음 신체 건강 지원 사업	평가 실태조사 등	3천5백만원	청년자율 예산
	서울-지역 협력강화 및 청년 교류기반 구축 사업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실태조사	5천만원	
노동 민생 정책관	프리랜서 종합지원 대책마련	프리랜서 종합지원 실태조사	2억원	청년 자율 예산
	서울시 직장내괴롭힘 방지확산	실태조사 등	2억1천5백만원	
	문화예술분야 프리랜서 공정거래문화 정착	문화예술 분야 프리랜서 보수실태조사	1억원	
인권 담당관	서울시민 인권실태조사	청년혐오표현인식 실태조사	7천5백만원	
주택 건축 본부	2030 역세권 청년주택 정책진단 및 발전방향 수립용역	역세권 청년주택 실태조사	2억원	
평생 교육국	청년 시민교육 활성화 사업	시민교육실태조사	3천만원	
시민 건강국	채식하기 편한 환경조성	채식 메뉴 제공 식당 실태조사	1억4천5백만원	

- 둘째, 청년 프리랜서의 대출이자 지원 사업은 「사회보장기본법」 24)상 사전 협의 대상사업으로 보이는바, 보건복지부의 협의가 필요한 것은 아닌지 면밀한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음.
- 셋째, 사전에 의회의 동의 없이 협약서를 체결한바, 절차적 하자를 치유하기 위해 의회의 동의가 필요한 것은 아닌지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음.
- 또한, 대출이자지원 사업은 청년 프리랜서만의 문제는 아니라 할것인바, 그 범위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하겠음.
- 더 나아가 청년 프리랜서에 대한 건강보험료 지급 등 청년프리랜서를 지원하는 사업 중 청년자율예산으로 편성되어 있는 사업이 상당한바,

24)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보장"이란 출산, 양육, 실업, 노령, 장애, 질병, 빈곤 및 사망 등의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하고 국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필요한 소득·서비스를 보장하는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를 말한다.
2. "사회보험"이란 국민에게 발생하는 사회적 위험을 보험의 방식으로 대처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를 말한다.
3. "공공부조"(公共扶助)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하에 생활 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를 말한다.
4. "사회서비스"란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의 도움이 필요한 모든 국민에게 복지, 보건의료, 교육, 고용, 주거, 문화, 환경 등의 분야에서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고 상담, 재활, 돌봄, 정보의 제공, 관련 시설의 이용, 역량 개발, 사회참여 지원 등을 통하여 국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지원하는 제도를 말한다.
5. "평생사회안전망"이란 생애주기에 걸쳐 보편적으로 충족되어야 하는 기본욕구와 특정한 사회 위험에 의하여 발생하는 특수욕구를 동시에 고려하여 소득·서비스를 보장하는 맞춤형 사회보장제도를 말한다.

제26조(협의 및 조정)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경우 기존 제도와의 관계, 사회보장 전달체계와 재정 등에 미치는 영향 등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고 상호협력하여 사회보장급여가 중복 또는 누락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경우 신설 또는 변경의 타당성, 기존 제도와의 관계, 사회보장 전달체계에 미치는 영향 및 운영방안 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경우 위원회가 이를 조정한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보장급여 관련 업무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기준을 마련할 수 있다.

청년 프리랜서만을 위한 사업 예산이 과도한 것은 아닌지 여부와 중복적인 투자는 아닌지 면밀히 살펴볼 필요는 있을 것으로 사료됨.

〈청년자율예산 중 프리랜서 지원 관련 사업〉

실국명	세부사업명	예산액(천원)
청년청	청년 프리랜서 고용보험료 지원	300,000
노동민생 정책관	프리랜서 종합지원 대책마련	200,000
	서울시 직장내 괴롭힘 방지확산	215,000
	문화예술분야 프리랜서 공정거래 문화 정착	100,000

자. 2020년도 청년청 홍보비 현황

- 2020년 청년청 ‘홍보비’ 예산은 2억5백만원으로 전년(6천만원)대비 243% 증액 편성하고 있음.
- 동 홍보비 예산은 ‘홍보비’라고 명시된 예산으로, “청년정책 홍보자료 제작 등(2천만원)”, “SNS 운영 및 온라인 홍보(5천만원)”, “청년명예 음브즈만 위원 모집 및 홍보비(8천만원)” 등 구체적인 홍보 내용이 명시되어 있는 예산은 제외하고 단순하게 ‘홍보비’ 로 명시된 예산임.
- 동 ‘홍보비’ 예산은 구체적인 계획 없이 예산서에 모두 “1식”으로 표기 되어 있어 의회가 홍보비 예산의 적정성을 심의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실정임.

〈2019년, 2020년 청년청 홍보비 내역 비교〉

(단위 : 천원)

구분	2019년	2020년
합계	60,000	205,800
청년 정책 추진을 위한 민관협력	-	7,000(1식)

청년활동공간 청년청 운영	10,000	30,000(1식)
청년금융 및 부채경감 지원	-	15,000(1식)
서울청년 시민회의 및 청년거버넌스 운영 지원	50,000	50,000(1식)
서울-지역 협력강화 및 청년 교류기반 구축(신규)	-	30,000(1식)
청년 지역교류 지원 사업(신규)	-	20,000(1식)
민주시민 역량강화를 위한 사회현안 토론 프로그램(신규)	-	50,000(1식)
서울시 청년명예옴부즈만 시범 운영(신규)	-	3,800(1식)

- 청년 및 시민들에게 서울시 청년정책을 제대로 알리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불필요한 홍보예산은 예산낭비로 이어질 수 있는바, 당해 사업들이 불요불급한 홍보예산은 아닌지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으며, 내년 선거를 겨냥하여 홍보비를 과다하게 편성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신중한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음.
- 청년청 사업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때, 민관협력, 거버넌스, 거버넌스 활성화 등 비슷한 용어로 표현되는 사업이 많고 사업내용 및 방식도 유사할 뿐만 아니라, 청년 정책 추진을 위한 민관협력 사업에는 “서울 청년학회 상설화(이슈 포럼)”, “청년독서단” 등 사업 명칭만으로는 사업내용이 모호한 사업도 있으며,

〈청년청 민관협력, 거버넌스 사업〉

사업명	세부사업 내역	예산액
청년 정책 추진을 위한 민관협력	-서울청년학회 상설화(이슈 포럼) -청년독서단 운영 -서울시-자치구 청년정책네트워크 교류활동 -청년청-청년단체 및 기관 대외협력	10억4천3백만원
청년거버넌스 운영 지원	-서울청년시민회의 운영 -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 구성 및 운영	7억2백만원

	-지역네트워크 교류	
자치구 청년정책 거버넌스 활성화 지원	-자치구 청년활동 실태조사 -자치구 청년정책 공동포럼	76억4백만원

- 서울미래인재 국제교류 추진(2천만원) 등 국제 및 전국단위의 청년교류사업, 토론, 포럼, 공론장 등 행사성 사업, 청년단체 보조금 지원 사업, 단기간 불량한 일자리 지원 사업 및 무분별한 청년자율예산 편성 등으로

〈전국단위 등 교류 사업〉

사업명	세부사업 내역	예산액
청년 지역교류 지원 사업	-청년교류사업 단체 보조금 등	7억7천만원
서울-지역 협력강화 및 청년 교류기반 구축	-지방정부 청년정책 협력포럼 및 공무원연수 -찾아가는 청년정책 학교 추진	5억원
서울시 청년교류공간 운영	-청년교류 활성화를 위한 컨퍼런스 -민간위탁금 등	6억6천2백만원
서울청년 시민회의 및 청년거버넌스 운영 지원	-지역네트워크 교류	2천만원
서울미래인재 육성 및 활동 지원	-서울미래인재 국제교류 추진	2천만원

- 서울시 청년들을 대변해야 하는 청년청이 목소리 큰 소수(vocal minority)의 의견만을 반영하고 침묵하는 다수(silent majority)인 평범한 서울시 청년들을 위한 정책에는 소홀한 측면은 없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되는바, 청년청 사업이 오히려 소수의 청년들만을 위한 사업으로 변질된 것은 아닌지 여부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음.
- 또한, 청년들을 위한 예산의 절대적인 규모는 늘어났으나, 무엇을 해야할지에 대한 검토와 준비는 부족한 것은 아닌지 신중한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음.

전문위원	김태한
입법조사관	신정희